

2020년 전라북도의회 용역 연구 과제

2020년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협치 성과 고도화를 위한 개선
방안 연구 용역 보고서**

2020년 11월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제 출 문

전라북도의회의장 귀하

본 보고서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협치 성과 고도화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용역 보고서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기간: 2020. 8 ~ 2020. 11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이 보고서는 연구기관의 용역연구 결과물로서
전라북도의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 차

제1장 연구 설계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1. 연구배경	3
2. 연구목적	3
3. 연구의 방법	3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4
제2장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5
제1절 이론	7
1. 협치의 이론적 논의	7
2. 협치의 개념과 형성 원칙	11
제2절 선행연구 개요	18
1. 지표개발을 통한 위원회 협치 제고 방안 선행연구	18
2. 사례분석을 통한 위원회 협치의 법·제도적 운영 활성화 선행연구	22
3. 위원회 특성을 분석하여 위원회의 협치의 방향 모색 선행연구	28
4. 의회와 집행기관 협치	29
제3절 선행연구의 시사점	31
1. 주요 연구의 시사점	31
2. 선행 연구의 활용 방안	34
제3장 사례연구	37
제1절 서울시 협치 사례	39
1. 시민참여예산	39
2. 청년자율예산	40
3. 지역사회혁신계획	41
4. 서울특별시 시의회/시/시교육청 3개 기관간 소통과 협치	42
5. 시사점	43
제2절 경기도 협치 사례	44
1. 고양시 시정주민참여위원회	44
2. 수원시 좋은 시정위원회와 수원 시민의 정부	44
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협의회	45
제3절 충청도 협치 사례	46
1. 기초단체 수준	46
제4절 협치 성과 평가	47
1. 서울특별시의 협치 성과 평가 제안	47
2. 협치 역량 평가 체계 구성과 주요 특징	47

3. 협치 사례 시사점	49
--------------------	----

제4장 자치단체위원회 현황 51

제1절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5개년 현황	53
1. 2015년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현황	53
2. 2016년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현황	54
3. 2017년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현황	55
4. 2018년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현황	56
5. 2019년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현황	57
제2절 지방의회와 위원회 관계	59
1.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보는 의회와 집행기관 위원회	59
2. 집행기관 위원회 구성/대상: 의원 추천 인사 혹은 의원 사례	63
3. 직무와 관련 위원회 활동의 제한: 대통령령	71
4. 직무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에 따른 협치 제약	74
5. 의원의 집행기관 위원회 활동 사례의 시사점	80
제3절 지방자치단체 별 위원회 특성 분석	82
1. 지방자치단체별 위원회 수 대비 개최횟수 평균	82
2. 지방자치단체별 위원회 수 대비 운영경비 평균	83
3. 지방자치단체별 위원회 수 대비 설치근거 강행규범 평균	84
4. 지방자치단체별 위원회 수 대비 설치근거 임의규범 평균	85
5. 지방자치단체별 위원회 수 대비 설치근거 조례 평균	86
6. 지방자치단체별 위원회 수 대비 설치근거 규칙 평균	87
7. 지방자치단체별 위원회 수 대비 설치근거 기타 평균	88

제5장 전라북도 위원회 89

제1절 2019년도 전라북도 위원회 운영평가	91
1. 추진 근거 :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91
2. 위원회 현황(2019년 말 기준)	91
3. 위원회 운영 현황	91
4. 운영실태 분석	92
제2절 전라북도 위원회 협치 관련 FGI	118
1. 조사 개요	118
2. 조사내용	119
3. 조사결과	120
제3절 전라북도 의회의 위원회 협치 관련 보완 사항	129

제6장 결론 131

제1절 요약	133
제2절 전북도 위원회의 의회와의 협치 현황	135
제3절 전라북도 위원회 협치의 성과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137

부록	141
제1절 2019년도 전라북도 위원회 현황표	143
제2절 47개 협치 조례	152

【 참고문헌 】	163
----------------	-----

표 목차

<표1> 실국별 도의회 연계 위원회의 위원 구성 1	101
<표2> 실국별 도의회 연계 위원회의 위원 구성 2	103
<표3> 실국별 도의회 연계 위원회의 위원 구성 3	104
<표4> 실국별 도의회 연계 위원회의 도의원 참여 현황	105
<표5> 실국별 위원회의 도의원 참여 현황	106
<표6> 실국별 의회 연계 위원회의 도의원 참여 현황	108
<표7> 실국 부서별 도의원 소속 위원회 현황	111
<표8> 실국/부서별 위원장 소속(2020년 기준)	115
<표9> 실국별 위원장 내/외부 비율(2020년 기준)	117

제1장 연구 설계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3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4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 최근 학계를 중심으로 민관거버넌스 및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일환으로 위원회 제도운영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코로나바이러스의 대유행에 따른 위기 상황 대응 과정에서 민관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상황임
- 전라북도의 각종 위원회는 지난해 기준 140 여개로 민관협력을 토대로 도정 추진 성과를 제고하는 방식의 사례를 많이 발굴해야 하는 상황임
- 공무원 혹은 전문가 주도 하의 자문·심의기능 중심의 전통적인 위원회 운영 방식에서 탈피하여 재난 상황에 부응, 도민 참여 확대를 통한 자체 의제 발굴과 현장 소통 중심 위원회 운영으로 협치 성과 고도화가 요구됨
- 위원회 운영의 협치 성과 고도화를 위한 ①위원회 혁신, ②도민 참여 확대, ③위원회의 정책 의제 발굴 및 공론화 역량 강화, ④위원회 협치 운영 방식의 성과관리 및 평가 체계 구축 연구가 요구됨

2. 연구목적

- 위원회 운영의 협치 성과 고도화를 통한 위원회 제도 운영 개선
-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운영의 성과 분석을 통한 전북형 민·관협력 위원회 운영 모델 제시

3. 연구의 방법

- 협치에 대한 이론적 검토
- 자치단체 위원회의 협치 사례 검토

- 위원회에 참여하는 당사자에 대한 조사¹⁾
- 주요 위원회 정책 영역별 당사자 표적집단조사(Focus Group Interview)
- 위원회 협치 성과 평가 방법론 개발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운영의 성과 분석: 현황 중심
- 전북형 위원회 협치 운영 모델 제시: 의회와의 협력 중심
- 위원회 운영의 기본 연구
 - 위원회 운영과 제도화
 - 위원회 운영의 성과 고도화
 - 위원회 운영과 협치 요구
 - 위원회 운영에 따른 협치: 서울시, 경기도, 충청도 사례
- 전라북도 위원회 협치 성과 진단
 - 위원회 설치 현황/ 운영 현황/ 성과 현황
 - 위원회 협치 성과에 대한 진단
 - 위원회 협치 진단의 요약 및 정책 시사점
- 전라북도 위원회 협치 성과 고도화 방향
 - 위원회 협치 현안에 대한 논의
 - 위원회 협치 성과 고도화를 위한 설계
 - 위원회 협치 성과 고도화와 도의회의 지원 방향
 - 협치 조례 제정을 통한 위원회 연계
 - 협치 성과 고도화를 위한 지원

1) 위원회 위촉 및 운영 과정에서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여론 수렴용 개인정보(전화번호 등) 활용 동의 확보가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제2장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제1절 이론7
제2절 선행연구18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활용방안31

제1절 이론

1. 협치의 이론적 논의

1) 협치의 개념

협치(거버넌스, governance)는 통치 행위나 방식, 통치 기구나 기능을 말하며, 그리스어의 어원 kubernan(조종, pilot, steer)에서 유래하는데 오늘날에는 과거의 일방적인 정부 주도적 경향에서 벗어나 정부, 기업, 비정부기구 등 다양한 행위자가 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연결망을 구축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통치 방식을 의미함(<https://ko.wikipedia.org/wiki/거버넌스>)

1929년 세계경제 대공황으로 인해 정부의 시장실패에 대한 개입의 정당성을 확보하였으나, 1970년 이후 복지국가의 확산으로 인해 무분별한 정부의 재정팽창은 오히려 정부실패를 초래하여, 각 국가들은 새로운 민관협치 시스템의 확대를 통해 시장과 정부기능을 절충시킬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1990년 이후에는 세계화로 인한 국가간 상호의존성이 확대로 정부중심의 통치에서 벗어나 새로운 통치와 관련한 패러다임이 요구됨

시민사회 역할 증대, 정보화의 발달로 인한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직접·수평적인 연계가 발생하면서 정부 및 기업중심의 국가 운영이 아닌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집단이 참여하는 민관협치 운영이 대두되었고,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정부,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가 상호의존하고 협력하는 통치 방식이 대두됨

UN ESCAP은 다음과 같이 협치를 소개하고 있음: 협치(governance)의 개념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인류 문명만큼이나 오래되었다고 하면서 의사 결정 과정 및 의사 결정이 구현되는 과정(혹은 구현)으로 기업, 국제, 국가, 지역 등 여러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으며, 의사 결정의 과정이자 의사 결정이 구현되는 과정으로 인식(UN ESCAP, 2009)

협치 개념의 이론적 성장과정을 살펴보면, 1970년대 관리중심이론의 민관

협치, 1980년대 시장중심이론의 민관협치, 1990년대 시민사회중심이론의 민관협치, 2000년대 네트워크이론의 민관협치로 발전함(조성호, 2018, 10).

1970년대 협치는 정부와 같은 의미로 국가적 수준의 관리를 강조하였지만 1980년대에는 국가차원의 사회통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관 공조를 강조하는 시장 중심 민관협치가, 1990년대에는 시민사회를 포함한 참여, 합의 형성 등 협력과 민주주의 특성을 강조하게 됨; 2000년대에는 신자유주의 확산 속에 국가, 기업, 시민사회간의 관계 재정립을 통해 협력적 협치 연결망이 강조되기도 함

2) 협치의 필요성

협치는 관료제로 대표되는 공공 행정체제가 가지고 있던 비효율성, 비민주성이 현대의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등장(송하진, 2017); 관료적 의사결정 체계는 분업의 원리를 지향한다거나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기에는 너무 협소하고 현장성이 취약할 수 있음(장수찬, 2015)

협치는 다양한 행위주체들의 다양한 정책결정 참여, 지역주민(수요자)의 자발적인 정치참여 그리고 주민의 행정수요 욕구 충족, 기존 행정시스템의 혁신적 변화 등 관주도의 행정체제보다 우수하다고 분석하였고, 이는 첫째, 민관협치는 행위주체(민간, 공공 등)들 간의 대등한 입장으로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민주적 프로세스를 강화(송하진, 2017)로 공공기관 중심이 아닌 정책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여 정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임. 즉, 공급자 중심 시스템에서 수요자 중심의 시스템으로 변화를 의미함. 둘째, 지역주민은 주민생활관련 문제에 대하여, 관 일방적으로 행하지 않도록 견제하고 지역사회에 걸맞은 책임정책이 구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임. 의회 중심 대의민주주의를 시민 중심 협력으로 대의 민주주의의 구조적 결함을 보완하고, 민의를 더욱 잘 반영하는 의회로 발전시켜 주민 요구를 능동적으로 반영하는 장치 마련은 수요자 중심 행정수요 반영과 관계가 있음. 셋째, 협치를 통해 공무원과 주민 간의 상호이해 및 협력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공공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으로 즉, 다원화되고 복잡해지는 현대사회에서 기존 공무원 중심의 정책결정보다는 민관협치 중심의 사회 문제 해결방식이 바람직함.

협치가 좋은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UN ESCAP은 좋은 거버넌스는 8가지 주요 특징을 ①참여적이고 ②합의 지향적이며 ③책임감 있고 ④투명하고 ⑤대응적이며 ⑥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⑦공평하고 포용적이며 ⑧법의 지배를 따르는 것으로 정리함. 좋은 협치는 부패를 최소화하고 소수자의 견해를 고려하며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의사 결정에 반영되도록 하면서 사회의 현재와 미래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임(UN ESCAP, 2009)



좋은 협치의 특성(출처 UN ESCAP, 2009)

3) 협치와 위원회제도

거버넌스의 핵심 요소인 행위자 간의 연결망을 어떻게 구조화하느냐에 따라 행위자들 간의 상호의존성, 관계, 행위를 조정 및 유도하여 올바른 의사 결정과 정책 결과를 도출 할 수 있는데 상호협력, 참여성, 개방성이라는 특징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정부는 능동적인 주민참여 시스템 운영, 실질적 연결망 구성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주요 행위 주체들과 공론의 장을 만드는

전략적 모형으로 협치 등에 대한 위원회 형태의 구조화 시도가 일반적임 (정수찬, 2015). 지방 수준 혹은 지역사회, 지방정부 수준에서 협치 실현을 위하여 시도하는 구조화되고 전략적인 방식이 위원회 제도임

위원회 제도는 협치 제도화의 대표적 형태로 중앙정부, 지방정부 등의 집행기관에서 국회 및 지방의회 등의 심의·의결 기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위에서 기존 의사결정 체계 보완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위원회 제도의 순기능은 민간 등의 참여 기제로 작동하여 대외적으로는 정책결정과정에서 민간이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민간 부문과 공무원 간의 상호 의사전달을 증진시키는 기능을 제공할 수 있음. 위원회 제도는 집행기관 이외의 외부 전문성에 대한 보완을 통해 합리적인 정책결정으로 정책적 능률성을 제고할 뿐만 외부의 통제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기여할 수 있음

정부위원회 운영에 대한 외부통제 필요성 증가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 위원회 검토에서도 제시된 사항임(조세현, 2014). 전문성과 대표성을 갖춘 위원이 위원회에 참여하고, 의사결정과정의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부 위원회에 대한 외부통제를 활성화하고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위원회 운영 공개 및 국회보고 등)시행령 제4조 ③항 2호는 운영원칙으로 위원회 현황과 활동 내역을 인터넷 등에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음(조세현, 2014). 뿐만 아니라 위원회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위원회에 참여 위원의 책임성 제고와 함께 위원회에 대한 외부 통제를 강화하고자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수준은 국회가 속기록을 공개하는 것을 참고하도록 하면 될 것임(조세현, 2014)

이와 같이 협치는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 등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 다양한 행위자들의 참여를 가능토록 함으로써 과거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던 직접민주주의를 보다 가깝게 현실화하여 모든 이해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춰 나가고 있으며, 위원회 제도를 통해 지역사회 협치가 가능하게 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2. 협치의 개념과 형성 원칙

1) 협치의 의미

고전적 협치와 새로운 협치로 구분해보면 고전적 협치는 국가가 사회의 방향을 제시하고 민간 부문을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 하는 것으로 전통적 국가중심의 통치를 의미하는 반면, 새로운 협치는 정부와 민간의 상호작용, 공식, 비공식 부문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연결망과 동반자 정신을 강조하는 사회 중심의 통치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다(강재규, 2011). 새로운 협치(신거버넌스)는 연결망을 강조한 특수 형태의 사회적인 조정 방법으로 위계질서적인 권위나 시장의 논리보다 대화와 협상, 조정을 통한 타협과 동의를 도출하는 것을 더 강조함(이명석, 2002). 협치의 개념을 정부 주도의 위계 질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인식하여, 협치를 연결망, 상호의존성, 동반자 정신, 합의된 규칙과 신뢰, 자율성과 독립성 등을 핵심 요소로 이해할 수도 있음

2) 협치의 대두 배경

(1) 대의제 원리의 결함

구조적인 측면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주민)이 분명한 사고력과 판단력을 통해 정치 및 행정 문제에 대해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구조가 필요하지만 개인의 자기 결정 능력 및 판단력에는 불완전한 요소가 많아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함. 전통적으로는 국민(주민)의 직접적인 정책결정참여(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소환제도 등)보다, 국민이 대표자를 통해 정책결정에 간접적으로 참여가 이루어지는 대의제도가 기본적인 구성·원리임

그러나 현대의 대의제는 기존의 의회 중심의 민주주의가 정당중심의 민주주의로 변하고 대의제를 대표하는 선거제도가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는 대표자를 뽑는 행위에서 정당의 리더 혹은 정당 정책을 보고 투표하는 행위로 성격이 변하면서 의원의 정당 혹은 교섭단체 귀속성 강화로 의원 개인의 의사결정에 대한 독립성이 제한됨. 여기에 관료제의 계층제적 중심의

성격이 초래하는 여러 문제들로 인해 국가나 정부의 실패가 신자유주의의 극단적 행태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에 따른 시장 실패 이후,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치 및 행정에 대한 민간 참여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참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민주적이며 효율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해당하는 협치가 등장한 것임

3) 협치의 형성 원칙

협치에 관한 일반적인 견해로는 협력적인 관계(일반적으로 ‘연결망’ 인식)를 통한 행정 기능의 효율적인 운용 확대와 민주성 확보를 목적으로 두고 있음. 따라서 정부는 전통적인 계층제에서 벗어나 시장을 비롯한 각종 민간 부문과 협업한 형태로 행정운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이러한 측면에서 거버넌스의 역할은 공통의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부문과 공공부문, 공공부문과 사적 부문, 사적 부분과 사적 부문 간 대화와 협력 등 의사소통의 구조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 또한, 수단의 마련을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들 간 협력전 관계의 정형화가 선제적으로 해결되어야 함(정명운, 2009)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계층의 주체 간 상호 협력적 관계를 위한 행정기능의 효율화와 관련하여 아직 정형화되지 않은 연결망식 국정관리 및 운영이 존재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원칙이 요구됨. 이러한 원칙으로 여러 주체들 간 조화와 주체 간 상호 협력적 관계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책임성의 원칙, 정보공유의 원칙, 협동의 원칙, 설명 책임의 원칙 등을 크게 4가지 원칙을 통해 정형화가 가능함

① 책임성의 원칙

다양한 주체가 개입되는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호 조화와 협력적 관계를 형성과 현안 문제에 대한 다양한 주체들의 책임의식이 강화되어야 함. 우리 사회는 전통적인 면에서 공적과제 관리와 운영에 있어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의식을 요구하였음. 그러나 오늘날, 공적인 영역에 사인이 직접 참여하는 시대로 변모함에 따라, 사인과 행정주체가 함께

공익을 도모할 책무를 가지며, 이에 시민과 행정주체는 대립관계가 아닌, 행정주체와 공동으로 책임을 분담하는 동반자 관계를 형성함. 즉 입안과 수립, 집행 등의 공적과제 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각 주체들의 강한 책임의식 등의 사적과제 또한 요구됨. 여기에 참여주체의 책임의식이 결여될 경우, 주체 간 조화 및 협력과 이를 통한 효율성 및 민주성 증대는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사회구성원 간 상호 조화와 협력적 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책임성의 원칙’이 확보되어야 함(강재규, 2011)

② 협동의 원칙

참여주체 간 조화 혹은 협력 관계 형성을 위해 상호 협동은 불가피함. 협동이란 “당해 정책 내지는 목표를 달성하려는 주체와 이와 관련이 있는 자(단체 혹은 조직)가 공동으로 행정활동에 임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함. 협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는 첫째, 해당 행정 활동에 대한 참여가 가능한 여건이 조성되어야 함. 둘째, 행정활동에 대해 자주적이며 자발적이어야 사회전체의 이익(공익), 즉 사회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반하지 않도록 조건이 요구됨(정명운, 2009)

③ 정보공유의 원칙

공통문제에 대한 각 주체의 걱정하며 신속한 대응은 정책을 실시하는 주체가 가진 정보를 각 참여자에게 상호 공유해야 함.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치 행정에 대해 각 주체가 적극적이며 능동적으로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정보공유는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임. 먼저, 행정주체가 보유한 정보에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전자메일 등을 통한 여러 접근 방안이 고안, 활용되어야 할 것이고, 정보제공이나 공개를 위한 청구에 대해 창구를 확대하여 접근의 편의성이 고려되어야 함.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한 시대에 맞추어, 그에 걸맞은 정보공개에 대한 적절한 방안도 요구되어야 할 것임. 이러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방안으로는 전자메일 혹은 메일매거진을 통한 정보의 제공, 또한 전자회의나 화상을 활용한 시민회의나 워크숍 개최 등이 시민참여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될 것임(강재규, 2006)

정보공유에 대한 중요성으로 참여하는 각 주체 간 공통되는 문제의식 함양

을 도모하는 측면과 또한, 현안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는 불특정 다수자에 대해 정책 혹은 정책과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음. 게다가 정보 공유를 통해 주체 간 상호 협력하는 파트너라는 인식을 심을 수 있을 것임. 이에 정보공유는 행정활동 주체 간 조화 및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 주요 원칙으로 작용할 것임

④ 설명책임의 원칙

설명책임의 원칙은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를 보충이라는 목적성을 지닌 원리임. 법률에 의거한 행정 원리는 행정활동은 법률이 규정한 바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법원칙을 의미함. 이는 행정활동을 의회 제정의 입법 원리에 입각하여 행할 것을 염두에 두었음. 하지만, 오늘날의 행정주체에 있어 당연한 정책의 방향성 설정에 있어 행정의 원리에 대한 설명책임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이같은 요구는 행정주체의 결정사항에 대해 관리 및 감독 측면에 있으며, 또한 해당 정책에 이해관계자가 표출한 의견과 제안이 어떠한 방식으로 정책에 반영되며 이러한 반영의 이해를 돕는 측면이 있음. 즉 설명책임의 원칙은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체 간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여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정책의 검토 경과와 결과를 공개적 표명하고 설명해야 함

4) 협치의 기능

행정주체에 해당하는 사회의 여러 주체들이 상호 간 협력적 관계 형성 혹은 다층적인 관계 형성을 위한 노력들은 국·내외를 벗어나 많이 제기되어 왔음(강재규, 2011) 여러 주체들이 행정활동에 참여하고 다른 행정주체와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정책추진을 수행한다는 측면에 큰 의의를 갖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주민참여에 관한 조례, (가칭)협치위원회조례, 자치기본조례(강재규, 2010)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규범화는 앞으로 법령 차원에서 협치 제도화에 도움이 될 것임

국가 및 자치단체에서 널리 추진되는 협치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첫째, 국가나 지자체의 정치, 행정에 다양한 주체가 참여

하고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을 통해, 행정면에서의 민주화와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음; 둘째, 다양한 주체가 참여 및 협력 과정에서 주체들의 의견 청취와 이해관계인 간 상이한 의견을 미리 조정하여, 행정의 직면한 과제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획득하고 적절한 행정결정에 이바지 할 수 있음; 셋째, 이러한 과정은 행정의 능률화에 기여하며, 사회 각 주체들의 이익을 증진시키고 보호하는데 기여함; 위에서 제시한 협치의 기능(강재규, 2011)을 민주화 기능, 권리보호기능, 과학화 합리화 기능, 행정 감시 기능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정명운, 2009)

5) 대안으로서의 협치

협치를 사회 전계층이 인식하는 공통문제를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하기 위한 통로로 이해하며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행정활동 주체 간 조화 및 협력이 요구되지만, 이 같은 논의는 처음 제기된 것은 아니다. 이전에도 행정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법으로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사안에 대한 다양한 계층의 참여, 지역주민 혹은 국민들의 수요 및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 또한 주민의 의견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의회를 통한 의견제출 등 여러 참여방법이 등장했으며, 또 행정활동 주체 간 혹은 이해당사자 간 협의라는 방법도 제기되어 왔음.

이와 같은 논의는 행정 활동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시작되었음. 즉 시스템을 개발을 통해 필요한 조치들을 적용하여 운영되지만, 입안 및 실시 주체와 참여 주체 간 연계와 조정, 균형에 있어 시스템적 통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체계 마련이 부족했던 것임. 이에 행정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그간 노력들이 기대했던 효과를 달성하지 못하였음. 이는 그동안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 해결과 정책 추진이 각 전문적인 부문별·분야별로 추진되어 왔으며, 사회기능의 전문화, 다원화로 인해 기존 중앙정부의 역할이 지방으로 이양되는 분권화과정에 있어 사회문제의 전반적인 해결은 힘들어졌다는 사실에서 비롯되었음.

이처럼 경제와 사회적 여건에 부문별 나누어 구성되어있는 조직이 당면하는 사안을 통합적으로 해결 가능한 방안으로 협치가 제기되어 왔으며, 이

를 적용하기 위한 제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임. 이러한 협치의 제도화과정은 어떠한 수단으로써 제도화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수단을 적용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 이를테면 행정활동 주체 사이의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당면한 행정 활동, 다시 말해 정책과 당면한 과제에 대한 참여 및 협동이 해결과정에서 필수적임. 따라서 협치의 제도화는 행정활동 주체 간 참여 및 협동을 통한 관계 구축을 의미하는 것임(정명운, 2009)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목적을 효율적인 방법으로 달성하기 위해 공공 정책과 이해관계를 형성한 각 주체들이 자발적이며 능동적인 자세로 참여하여 이루어진 의사결정 구조인 거버넌스를 구축시키고 이를 활용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과 정책의 추진, 집행에 있어 유용한 시스템으로 작용할 것임

6) 지역사회 협치 이론

지역사회 협치(local governance)는 영국의 지방정부의 존재 목적과 역할이 변화되는 시점에 발생한 다양한 현상의 설명을 위하여 스토키(G. Stoker)가 이 용어를 사용하면서 널리 쓰이기 시작이었으며, 스토키는 지방정부의 복지서비스 공급과 관련해 이 용어를 설명함

지방정부는 민주성 부족으로 인한 정당성의 위기에 처할 수 있기에 지역사회 협치 개념은 지방정부의 서비스 전달 기능보다는 지방정부의 정치적 역할에 초점을 두어야 함(Stoker, 1997) 지방정부의 비효율성은 지방정부의 비민주성에 기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주도하여 결정하고 집행하던 비민주적이며 비효율적인 역할을 축소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연결망을 형성하면서 이를 조정하는 정치적 역할의 담당자로 변화해야 함을 의미함(엄태석, 2005)

지역사회 협치를 구체화하면 기존의 지방행정시스템, 즉 지방정부(local government)와 지역사회 협치(local governance)는 구분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음, John(2001)은 지역사회 협치 필요성으로 경제의 세계화, 정책과정에 민간부문의 참여요구 증가, 공공정책의 지역화, 새로운 정책과제의 도전, 정치참여에 있어서의 변혁, 그리고 탈관료국가 지향 등 5가지를 제시면서,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는 이상형의 협치는 지방정부 시스템의 일부 수정이

나 조절이 아닌 완전한 지역사회 협치 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주재복 외, 2011)

지역사회 협치의 실질적 활용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다양하게 존재하는 전통적 지방기관들이 그들의 행동양식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음. 이러한 지방행정 체계의 변화, 즉 전통적 지방정부와 지역사회 협치의 차이는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었음(John, 2001)

구분	지방 정부 (Local Government)	지역사회 협치 (Local Governance)
관련 기관의 수	소수	다수
(행정)조직구조	계층적, 통합적	탈 중심적, 분절적
수평적 네트워크	폐쇄적	포괄적
민주적 연계성	대의	대의 + 새로운 실험
정책	일상화됨	혁신적 학습
중앙정부	직접 통제	분권화 + 적은 개입
리더십	합의적, 고객지향	시장적, 카리스마

자료 : John, Peter(2001). 재구성

민관 등의 참여에 기초한 지역사회 협치는 공공선을 성취하기 위해 정보 및 자원을 공유하고 의사결정 및 집행의 일상적 과정에서 협동을 증진하기 위한 지방정부 및 비영리단체 및 기관들이 연결된 연결망을 의미함(송원찬, 2011). 공공영역에서도 민관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행정기관만으로는 서비스 체감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으며 민간의 협력과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높아지는 것과 관계가 있음.

참여, 연결 등을 기반으로 하는 협치를 통하여 지역주민이 원하는 지역정책을 결정·집행하려면 지역사회 주체들이 참여와 상호협력의 토대위에서 연결하고 동반자 정신을 활성화하는 지역사회 협치 구축이 필요함(정세욱, 2010) 즉, 지역내 여러 주체들이 상호 동반자,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한 협력관계를 형성해야 함. 이 점에서 현행 위원회제도는 공공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시민단체, 전문가, 기업 등의 집단 이해를 반영할 수 있는 체계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제2절 선행연구 개요

1. 지표개발을 통한 위원회 협치 제고 방안 선행연구

1) 정병순, 협치시정의 견인차, 서울시 위원회제 혁신전략,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265

한국의 행정기관은 각 기관의 장이 행정관청이 되며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독립제를 채택하고 있음. 이러한 독립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등장한 것이 합의제 기구에 해당하는 위원회임. 이러한 위원회 제도는 사회전반에 걸쳐 부족한 행정역량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수행해왔어도 숙의민주주의가 심화되는 현시대에 다양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어 개선 및 발전방향 제시가 시급함. 즉, 위원회제는 다양한 정책 영역에 숙의민주주의 실현과 개방형 플랫폼 행정을 실현하는 역할 등 위원회 위상의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임.

□ 위원회 제도의 개선 방안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진단

- ‘다가치기반 통합적 접근’ 3대 영역에서의 10가지 지표와 세부 분석 지표로 구성된 체크리스트를 적극 활용, 위원회제 체계적 진단
- 법·제도적 차원의 충분성 지표, 관리주의 차원의 전문성 외 3개 지표, 정치적 차원의 대표성을 포함한 4개 지표 등으로 구성
- 이러한 위원회 진단지표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위원회제 활성화 및 운영 실효성 확보를 기대

□ 적극적 제도개선 모색이 요구되는 4대 현안 도출

- 위원회(제)의 인식 재정립 필요, 정책의 공동생산 주체이자 정책의 파트너라는 위원회 인식이 필요.
- 민간주도의 운영 활력 제고 및 부족한 실효성 개선
-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다양화 필요
- 위원회 관리 및 운영 측면에서의 개선

□ 시민민주주의 시대에 걸맞은 협치친화적 위원회제 정립

- 현행 법정·비법정 위원회 제도의 재정비
- 혁신형 위원회 모델의 도입 및 확대

- 위원회 운영지원체계 구축

○ 위원회 제도는 사회전반에 부족한 행정역량을 채우는 역할을 수행

- 권위주의적인 성향을 띠는 정부의 경우, 정부 정책에 옹호하는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행정부의 통치 당위성을 증대
- 20세기 후반, 신자유주의에서의 위원회는 민간의 전문성을 수용하여 관료제의 비효율성을 보완하는 기제로 역할 변화

○ 기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점이 분명하게 드러남, 참여 및 숙의민주주의가 성숙되어가는 과정에서 등장한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난 위원회제의 역할 제고 및 위상 재정립이 시급

- 형식적인 민주주의에서 벗어나 풀뿌리 단위에서 다양한 사회적 의제에 대해 숙의와 공론화를 통한 시민사회와 행정이 협업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을 공동 생산해야 한다는 요구 증대
- 이러한 요구에 대해 행정의 ‘개방형 플랫폼 정부’로의 점진적 전환이 필수적임

○ 이러한 급변하는 여건에 대해 위원회제는 정책 형성에 있어 숙의민주주의 실현과 개방형 플랫폼 행정을 실현하는 역할 제고와 위상의 재정립 필요

□ 서울시정 위원회의 경우 이미 민선 5·6기 시기에 다양한 유형의 위원회 설치를 통해 양적·질적인 성장을 경험

서울시 위원회 기본 현황

(단위: 개, %)

구분	전체	행정	의결	심의	자문
2011	103(100.0)	-	-	-	-
2013	136(100.0)	-	14(10.3)	97(71.3)	25(18.4)
2015	153(100.0)	1(0.7)	14(9.2)	114(74.5)	24(15.7)
2016	187(100.0)	2(1.1)	11(5.9)	144(77.0)	30(16.0)

□ 위원회제 진단과 개선방안의 도출

3대 영역 내 10가지 지표, 세부 분석지표로 구성된 체크리스트를 활용

위원회제 진단분석을 위한 기본틀²⁾

구분	진단지표	체크리스트
법적·제도적 영역	① 충분성	- 현행 법률이 위원회의 권한·책임·활동범위 적절한 설정 여부 -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체계 정도
관리주의적 영역	② 전문성	- 전문성을 지닌 위원 확보 노력 여부 - 직무 분야의 전문가가 중심이 되는 위원회 구성 여부 - 현행 사안의 문제해결능력 여부
	③ 효율성	- 위원회 중복성 통제 메커니즘 존재 - 기능적 중복성 위원회 설치 여부 - 위원회 관련 예산 집행의 효율성
	④ 실효성	- 논의결과 시정보고체계 여부 및 방식 - 논의결과 정책화·제도화 노력 및 실현화 정도
	⑤ 운영 활력	- 원활한 위원회 운영 정도 - 위원 간 교류 및 협력활동 수준
정치적 영역	⑥ 대표성	- 위원 구성 간 계층별 대표성 반영 - 다양한 계층에 속한 주체들의 참여 - 정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의 대표성 반영
	⑦ 개방성	- 개방적 채널을 통한 위원의 추천 및 발굴 - 위원회가 비전문가 주체들에게 개방 정도
	⑧ 책임성	- 책임성 있는 위원회 운영 여부 - 회의에 위원들의 참여 수준
	⑨ 투명성	- 회의과정 및 결과의 투명한 공개 수준 - 위원들에게 공유한 정보의 수준
	⑩ 운영 자율성	- 위원을 뒷받침하는 지원체계 여부 - 위원회 간 상호 연계·융합 노력 여부 및 정도

□ 진단결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4대 현안 도출

- 무엇보다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가능한 위원회(제) 재정립 긴급
- 민간주도의 운영 활력 제고와 실효성 부족 개선도 주요 과제
- 행정환경 변화에 상응하는 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다양화 노력 필요
- 위원회 관리·운영 측면에도 다양한 개선과제 존재

2) 정병순. (2018). 협치시정의 견인차, 서울시 위원회제 혁신전략. 정책리포트, (265), P.7. 재구성

□ 협치친화적 위원회제 발전전략

주요과제와 세부 추진전략

구분	전체
현행 위원회 제도의 체계적 재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개방성과 대표성 강화 - 민간주도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위원회 운영체계 구축 - 위원회 운영에 따른 후속 이행체계 (환류체계) 재정립 - 관련 조례의 재정비
혁신형 위원회 모델 도입·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참여기반위원회의 설치·운영 - 실행기반 중심의 위원회 확대 및 활성화 - 위원회 간 교류 및 연계 활성화
위원회운영지원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위원회의 종합적인 운영지원체계의 재정비 - 위원회 활성화 제고를 위한 운영 및 지원절차 마련

□ 현행 위원회 제도의 체계적 재정비

- 민간주도성 강화 및 자율성 확보를 위한 위원회 운영체계의 재구축
- 위원회 위원 구성 과정에서의 개방성 강화 및 대표성 증대 필요
- 위원회 운영에 따른 후속 이행체계 재정립

□ 혁신형 위원회 모델 도입·확대

- 시민주도형 혹은 시민참여기반 위원회 설치·운영
- 실행기반(내지 현장지향)혁신형 위원회도 확대 및 활성화

□ 위원회 운영지원체계 구축

- 시정위원회의 종합운영지원체계 재정비
- 위원회 활력 제고를 위한 운영절차(운영활성화 프로그램) 필요

2. 사례분석을 통한 위원회 협치의 법·제도적 운영 활성화 선행연구

1) 조성호, 경기도 내 민관협치기구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2018.12

정책건의

- 기본적으로 민관협치 기구인 민관 소통채널을 통한 위원회의 활성화와 위원회 참여, 설치 및 구성, 운영, 법제도 등 민·관 정책협의 채널을 통한 협치 효과의 극대화 필요성이 요구됨

- 첫째, 위원회 참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장치 필요
 - 실 사례로 국내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경우, 임기 2년 제한으로 100인 위원을 임명하여 기후에너지, 환경보건, 자원순환 및 생태 분야에 대한 통합적인 운영을 통해 시민 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 경기도 각 위원회의 중복 활동 또한 중복되는 영역이 적용되는 경우 지속적인 참여를 보장하며 사업단계별 임기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하여 참여위원 확보에 이바지하도록 해야 함
 - 실 사례로 서울시 에너지정책 시민위원회의 경우, 참여 위원의 소속집단 비율을 적절히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
 - 위원 구성에 있어 행정부서의 추천보다는 민간부문 혹은 일반시민들의 추천을 통한 선입이 필요, 수원시의 “좋은 시정위원회”의 경우, 시민 공모를 통한 위원 위촉을 통해 위원 구성의 보완장치가 다양화됨

- 둘째, 위원회 설치와 구성 과정에 대한 운영수준과 다양성 증대가 가능한 제도의 적용이 필요
 - 위원회의 비율 중 도시·환경(35.7%), 주민참여(25.6%) 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수와 운영이 확대가 필요하다는 반면에, 사회적경제(35.7%), 경제·일자리(31.3%), 복지·여성(21.4%) 위원회의 경우 위원회의 수와 운영이 과다하다는 의견이 있어 축소가 요구됨
 - 위원회 구성 다양화를 위해서는 정책 사안에 대한 시급성을 강조하며 위원회 참여에 대한 적극성을 강화시켜, 위원들의 소속그룹에 대한 분포의 균형을 추구하며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는 위원 선정기준을 보다 완화시켜 위원에 다양한 차원의 소통채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해 법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해 법적 근거와 제도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48.6%이며, 특히 복지·여성 위원회의 경우 법적 근거 및 제도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임
 - 해외사례의 경우, 영국의 코벤트리 민관협치위원회처럼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서의 관심 분야를 명확히 하여 위원회 구성에 있어 질적 수준 유지에 활용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위원회 구성에 달성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여 법제도가 적절하게 적용되도록 해야 함
- 셋째,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위원회 제도의 순기능 강조와 함께 경기도 내 정책자문 위원회의 민·관협치적 성격 강화를 위한 체계 개편이 필수적임
- 위원회의 기능 중 자문기능뿐만 아니라 심의 및 의결 기능을 고려하여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지속적인 발전 가능한 도정 운영을 위한 보전/개발/조정에 관한 평가와 자문 역할을 담당하여 향후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 제시가 필요함
 - 위원회 운영 만족도 증대를 위해 논의 결과에 대한 적절한 정책반영과 제도화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우선시되며, 경제·일자리 위원회의 경우 운영 중 위원들의 요구사항 및 정보 제공에 있어 부족함이 없어야 함
 - 해외 사례에서 미국 뉴욕시의 도시계획민관협치위원회처럼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개발행위 허가 등에 대해 심의하고 자문하며 조사 연구를 통해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처럼 상정안의 검토과정 및 결정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명백하게 공개하는 방안이 요구됨
 -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
 -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투명성 확보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운영
 - 위원회 구성에 대표성 확보와 개방성 제고
 - 정기적인 회의 개최 확보
 - 위원회 운영에 충분한 정보제공으로 정책 결정에 이바지
 - 위원회 운영 및 구성에 전문성 확보
 - 민간부문 참여 및 구성에 자율성 확보와 주도적인 환경 조성
 - 위원회 운영 중 논의된 결과에 대한 적절한 정책반영 및 제도화
 - 위원회 운영에 따른 책임성 강화
- 넷째, 위원회의 법·제도적 기반 구축이 필요하며, 특히 참여 위원 구성의 범위 및 선정기준을 명확히 해야 함
- 위원회 운영 차원 중 논의결과에 대한 정책반영 노력 부족하다는 의견이 24.3%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며, 경제·일자리 위원회는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며 도시·환경 위원회는 운영과정에 충분한 정보제공 확

보가 요구됨

- 위원회 역할과 권한에 관한 세부사항 보완이 요구되며, 위원회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투명성 제고와 대표성 확보가 요구됨. 경제·일자리 위원회의 경우 참여하는 위원과 회의결과의 공개가 필요함
- 해외사례에서 일본 이치카와시 방범마을만들기 민관협치위원회 등 직 무권한에 대한 항목을 규정하고 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성을 동시에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이 필요함
- 위원회 운영 지원을 위한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실무적 기능을 포괄하는 위원회 강화를 통해 위원회의 효율성 제고가 요구됨
- 법·제도적 종합적인 개선방안
 - 위원의 전문성과 대표성의 다양화 및 참여 확대 제고
 - 위원회 운영과정의 충분한 정보제공과 피드백을 위한 지원
 -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
 - 위원회의 전문적인 연구 및 조사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 위원회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운영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의 확대와 활성화 제고
 - 위원회의 행정적인 지원체계 정비를 위한 행정부서 내 전담인력 배치
 - 위원회의 운영지원체계 정비를 위한 사무국 및 간사 확보
 - 위원회 논의 결과의 정책반영 체계 강화
 - 경기도 실정에 적용 가능한 위원회 모델 개발의 다양화 및 적용 필요
- 경기도 위원회의 민관협치 활성화 제고를 위한 기본 조례의 개정 요구
 -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차원의 시민들을 참여와 사회적 소수 계층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별, 세대별 분포를 조례에 명시 하도록 해야 함
 - 민관협치 조례는 여론조사,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반영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함
 - 또한 민관협치 조례는 원활한 민관 협치 행정을 위해 경기도 31개 시·군 연계와 융합이 가능한 조항을 명시하도록 해야 함
 - 민관협치 조례는 도지사의 협력 및 지원의 다양화를 위한 조항을 명시 하여 협치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함

2) 김용현, 충남 각종 위원회 운영 실태조사 및 개선과제, 충남연구원 현안과제연구, 2017

- 본 연구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운영의 현황조사로서, 각 위원회의 구체적인 실태조사로는 한계가 있으나 그 동안 위원회에 지적된 다양한 문제제기가 충청남도내 각종 위원회도 예외가 아님을 알 수 있음
 - 1년에 한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도 존재함을 검토
 - 도정과의 연계 미흡, 위원회가 단순한 거수기능으로 전락하는 등 형식적 운영, 위원들의 미온적 참여 및 도민의 참여 미약 등이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나타남
- 도 정책과 연계된 정책자문과 심의의결기관으로써의 위상을 분명히 하고 회의개최를 정례화 해야하며, 참여위원 간 소통의 기회를 늘려야 함
 - 법령이나 조례개정을 통하여 정기적인 위원회의 개최가 이루어져야 함
 - 위원회의 정기적 개최가 선행된 이후, 당연직 위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위원 간 실질적 토론을 통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이루어야 함
 - 도정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역할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학습이 요구됨
 - 전문성 제고가 요구되는 위원회는 DB구축을 통한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인력풀(Pool)을 마련해야 함
 - 조례개정을 통한 위원회 구성에서 도민 참여비율을 20% 이상으로 하는 의무조항 신설
- 후속연구로서 각 위원회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및 실태점검이 수행되어야 하고 이를 통하여 유명무실한 위원회나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통·폐합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함

3) 신기현, 새만금사업과 지역사회 거버넌스, 한국정치정보학회 정치정보 연구, 2006.12, 329-363.

- 전북도내 새만금사업에 대한 반대, 중단, 재집행, 재반대, 재심의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나타난 정책적 실패에 대해 지역사회 사회자본(social capital)에 관한 공감대의 수준 측정과 협치(거버넌스, governance) 구축에 대한 현실 분석을 시도함
- 본 연구에서는 새만금사업-거버넌스-환경갈등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새만금 거버넌스, 지역사회 거버넌스, 새만금사업에 관한 찬성, 반대를 나타내는 여건 등에 대한 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만금사업에 대해 발생하는 NGO의 참여와 법적 다툼 등을 검토하였음
- 연구의 대상은 새만금사업을 중심으로 NGO의 활성화와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조에 초점을 두고 새만금사업이 진행되는 시기인 1991년부터 2006년 8월을 기준으로 하여 새만금사업이나 지역현안에 대한 논의구조가 어떻게 분석되며 관련 요인별로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분석함
- OMS 분석을 통해 환경의제에 대한 전국적인 확산으로 청와대 자유게시판에서는 새만금 사업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이 도출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전북도 게시판의 경우, 찬성과 반대에 대한 의견이 동시에 도출되었으며, 서해안에 근접하는 시군의 경우, 새만금 사업에 대한 관심 증대로 전북도내 협치 구축에 있어 한계가 나타남
- 전화면접을 통한 조사 결과, 지역 내 현안 혹은 새만금 사업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역사회 논의 구조가 다양한 통로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인식과 함께 의견 수렴 과정에서도 미흡했다는 점이 나타나고 있음. 이를 통해 지역내 균형발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은 각종 거버넌스 부재로 인해 사회자본 형성에 관한 갈등 문제 해결에 장기적으로 계류된 이유를 파악할 수 있었음
- 새만금 발전을 위해 합의 도출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과제로 제시함. 이

러한 합의에는 정부-지방정부 간 친환경 개발에 관한 기준을 합의를 의미하는 것에서 지역주민-지방정부 간 새만금 토지 이용 방안에 얼마나 타당한지, 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개입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요구된다고 보았음

- 이러한 합의 도출을 위해서는 새만금 사업의 협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간주함; 새만금 협치 구축을 위해서 정부와 지방정부 간 토론과 협상을 통해 발전시키는 전략인 프랑스의 계획계약 방식과 장관과 지자체장들의 의견을 상호 교환하여 전략을 이끌어내는 영국의 동반자 회의 방식을 제시함
- 기타 전북도의 당시 위원회 운영이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는 민간 부분을 충분히 포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음을 지적할 수 있음

3. 위원회 특성을 분석하여 위원회의 협치의 방향 모색 선행연구

1) 조성호, 경기도 위원회 제도의 평가와 개편방향, 경기연구원 정책브리핑, 2019.10

- 협치의 중요성에 대한 운영공무원의 인식 정도가 부족하여 경기도 협치과는 인재개발원에 ‘민관협치 과목 신설과 교육훈련’을 통한 협치의 중요성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정도 제고가 필요함
- 정책기획, 집행, 평가, 환류 등 일련의 정책과정에 민·관협치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위원회 관리부서에 해당하는 경기도의 자치행정과가 정책과정에 민간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공개해야 함
- 위원회 책임성 강화를 위한, 위원 선정의 투명성 및 대표성 제고(시민참여를 위한 일정 부분 공모), 위원회의 개방성 강화를 위한, 참여 위원 및 회의결과의 공개가 요구 됨
- 위원회제도의 행정적인 지원체계의 정비를 위한 개선방안은,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도 협치 매뉴얼 작성과 관리’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함
-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제13조(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① 협치위원회는 정책과정에서의 주민의견 반영 및 참여확대를 위하여, 4년마다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함. ②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제4호는 도 협치 매뉴얼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임.
- 경기도 민관협치과는 위원회의 성격을 기준으로, 공공주도 협치형, 민간주도 협치형, 협의기구중심 민관협치형 모델을 도입 및 적용하며 이에 따른 민관협치의 효과성을 제고함

4. 의회와 집행기관 협치

1) 최준규, 2014.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협력 체계 구축 방안」. 경기 개발연구원. 2014-72, 1-123.

- 평소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은 자치입법이나 감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기회는 상대적으로 부족함. 기존의 경기도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정책 협의는 상호 교류를 공식화한 사례로 파악하고 있음
- 2014년 8월의 연정 협의체는 집행기관과 지방의회 양측 모두에 역점 사업을 추진하는 동력 확보와 함께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기회를 제공함 (최준규, 2014, 101)
- 이 경우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이 약화되고, 집행기관은 정책 집행에 따른 책무성이 약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행정 환경의 복잡한 여건에서는 협력 체계의 구축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음
- 상설 공식적인 형태의 정책 협의체가 기관 구성의 원칙상 부작용을 초래할 경우 낮은 수준의 정책 협의가 가능한데 이는 집행기관이 정책 입안이나 추진 과정에서 공청회 등의 의견 수렴은 집행기관의 일방적인 추진을 보완하는 성격으로 이미 제도화된 상태임
- 의회와 집행기관의 정책 협의는 상호 인식 개선과 지방의회에 대한 권한과 지원 확대를 가능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의회와 집행기관 사이의 협력 체계 구축을 가능하게 할 것임
- 나아가 집행기관이 주요 정책을 입안하는 경우 의회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 혹은 상임위원회와의 사전 협의를 제도화하여 의회와 집행기관의 사전 협의 체계 구축도 검토해볼만한 가치가 있음

2) 조성호. 2018. 「민선7기 의회와 집행부의 협치 시스템 구축 방안」. GRI정책 Brief, 2018-07.

- 1당 독점 지방정치체제는 견제와 균형이 없이 집행기관 중심의 정치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독하는 방안으로 집행기관과 의회간의 협치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1당 중심의 의회 구성에 따라 단체장의 과도한 지방정부 지배로 의회의 기능을 위축시켜 지방정부의 민주성과 형평성 훼손과 함께 정책이 검증되지 않은 채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정책결정의 질을 제고하려면 의회와 집행기관의 정책 협력과 같은 협치 강화가 필요함
- 중앙정부의 국회와 행정부간의 협치체계를 벤치마킹하여 집행기관이 정책결정 단계에서부터 의회와 집행부간의 협치 회의를 신설하거나 이러한 성격의 회의를 운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중앙정부는 국무총리훈령 제703호로 당정협의업무 운영 규정을 두고 행정부가 정당과의 정책협의업무(이하 “당정협의업무“라 한다)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당정협의업무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고 있음
 - 당정협의업무는 법률안, 대통령령안, 국민생활 또는 국가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관련된 총리령안·부령안, 예산안 또는 국정과제 이행방안 등 국민생활 또는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안³⁾

3) 이를 위해 고위당정협의회(훈령 7조), 정당정책협의회의(훈령 7조의 2), 부처별 당정협의회의(훈령 8조), 정당에 대한 정책설명회(훈령 9조) 등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제3절 선행연구의 시사점

1. 주요 연구의 시사점

정병순의 협치시정의 견인차, 서울시 위원회제 혁신전략

- 서울시 위원회에 대한 혁신전략으로 3대 영역에서의 10가지 지표와 세부 분석 지표로 구성된 체크리스트를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체크리스트를 통해 현행 전라북도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는 데 유용할 수 있음
- 체크리스트를 통해 도출된 협치 친화적 위원회제 발전전략으로 첫째, 위원회 제도의 체계적 재정비, 둘째, 혁신형 위원회 모델 도입 및 확대, 셋째, 위원회 운영지원체계 구축을 주요 과제로 제시함
- 전라북도 위원회제에서 활용이 가능한 사항은 이들 모두 해당하며, 현행 위원회 제도의 체계적 재정비에서는 민간주도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운영체계 구축으로 위원 구성에서 개방성과 대표성을 확보하고, 위원회 운영에 따른 환류체계를 재정립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음; 다만 문제는 서울시 위원회제 혁신 전략이 시민단체 출신의 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전북도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⁴⁾

조성호의 경기도 내 민관협치기구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 경기도 위원회에 사례 중심으로 위원회 참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중복 활동 방지와 함께 소속집단을 배분이 필요하며, 위원회의 분야별 분포도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제시함

4) 서울에서의 좋은 사례가 전북도에 그대로 적용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는 각종 위원들에 대한 개인정보부터 접근하기가 어려운 환경과도 무관하지 않음

- 위원회 관련 조례의 개정을 통해 위원회의 협치 활성화를 위한 지역, 세대 등의 분포가 다양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어 전북도의 경우에도 위원회 분포 현황 등을 정리하는 경우 이러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간주됨

김용현의 충청남도의 각종 위원회 운영 실태조사 사례

- 이 연구는 충청남도 위원회에 대한 실태조사 분석을 통한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는데 정기적인 위원회의 개최, 실질적인 토론을 통한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추구, 전문성이 요구되는 위원회에 대한 다양한 집단의 전문가로 구성된 인력풀(Pool) 마련 등을 제시한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음
- 특히 법령이나 조례개정을 통해 개선과제들을 의무화시키는 방안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음

신기현의 지역사회 거버넌스/지역사회 협치 사례

- 이 연구는 당시 전북도 현안에 대한 문제 해결이 실패한 요인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협치를 제시하였음; 새만금 사업과 같은 대규모 지역개발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통한 합의점 도출로 기준점을 선정해야 하는데 합의 도출 이전에 협치 구축을 제안하고 있음
- 이러한 협치 구축은 위원회 제도의 운영에 있어 현안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사 결정을 용이하게 하고, 다각적인 시각에서 문제점을 파악하며 해결 방안을 도출시키는 방안이 될 것을 제안하고 있음

조성호의 경기도 위원회 제도의 평가

- 이 연구는 현행 경기도 위원회의 특성을 분석하여 위원회 제도의 평가와 개편 방향을 제시하였는데 협치의 중요성에 대한 운영 공무원의 인식 부족을 지적하면서 인재개발원 수준에서 관협치 과목을 신설, 교육 훈련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함
- 협치의 중요성에 대한 운영 공무원의 인식 제고에 대한 방안을 현행 전북도의 경우에 적용하는 경우 운영 공무원들이 단순히 위원회에 연결되어 업무의 원활화를 위한 역할에만 치중하거나 형식적인 의견 전달 역할에만 머물기 보다는 협치의 중요성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제고로 위원회 운영에 대해 실질적이고 행정적인 지원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최준규와 조성호의 지방의회-집행기관 협치 연구

- 경기도의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정책 협의나 이를 통한 연정 협의체가 집행기관과 지방의회 양측 모두에 역점 사업을 추진하는 동력 확보와 함께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점에 유의하여 낮은 수준의 정책 협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집행기관이 주요 정책을 입안하는 경우 의회의 사전 협의 제도화를 검토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낮은 수준의 협의 제도화는 평소 집행기관에 참여하는 의회 관계자의 역할을 통해서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남
- 1당 중심의 의회 구성과 함께 자치단체장까지도 같은 정당 소속인 경우 단체장의 과도한 지방정부 지배로 의회의 기능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커서 평소 정책결정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협치 강화가 필요한데 중앙정부의 국회와 행정부간의 협치체계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협치와 관련하여 큰 틀에서는 현행 경기도 및 서울시 등에서 나

타난 정책협이나 협치의 제도화 형태를 검토할 수 있지만 낮은 수준에서는 위원회 등의 의원 참여의 제도화를 통한 협치 성과 가시화도 가능할 것임

2. 선행 연구의 활용 방안

-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에 따르면 위원회 협치 제고를 위해 가장 많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개방성 강화와 위원 선정의 투명성과 대표성 확보가 있음
- 이러한 요구들은 해당 지역 위원회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간주됨
- 위원회의 역할을 볼 때, 단순한 자문 역할뿐만 아니라 사안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통해 도정 정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 있어 위원회의 개방성 강화는 필수적임
- 개방성 강화를 통해 민간참여를 독려하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를 민간에게 공개하고 위원 선정에 따른 공모와 공고를 통해 도민들의 참여를 통해 도민들과의 소통채널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선행연구들 중 실태조사를 통해 위원회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은 현행 전라북도 위원회에 대한 위원들과 주민들의 인식정도 등을 조사하여 현행 전라북도 위원회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들을 파악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이러한 문제점들을 분석하는 데 다른 자치단체의 실제 사례를 대입하여 비교분석한다면 위원회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선행연구들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현행 전라북도 위원회 제도에 대한 법적·제도적 해결방안을 통해 위원 구성이나 위원회 운영 및 지원체계에 대한 조항들을 신설하여 이를 의무화시켜 위원회 제도의 협치 역할을 제고하는 데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위원회에 관여하는 의회 및 의원 관련 논의는 거의 존재하지 않음

- 전북도의 경우 서울시에서 채택한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방식의 협치 강화가 그대로 적용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 점에서 우선적으로 집행기관과 의회의 협치를 가능하게 하는 공론장으로서의 위원회를 구상할 수가 있음

제3장 사례연구

제1절 서울시 협치 사례39
제2절 경기도 협치 사례44
제3절 충청도 협치 사례46
제4절 협치 성과 평가47

제1절 서울시 협치 사례

1. 시민참여예산⁵⁾

1) 정책도입의 배경과 목적

가. 추진과정

-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 실시 의무화.
서울시는 2012년 5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를 제정하여 시행
- 2017년 서울시는 주민참여예산과 협치예산을 통합하는 개선안을 마련하여 ‘시민참여예산제’ 로 명칭 변경 시행

나. 목적

-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 증대
- 주민자치의 이념을 재정분야에서 구현하는 지역 협치의 한 형태로서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

2) 운영체계

- 총회
- 민관예산협의회
 - 시정 주요분야 10개 협의회를 설치하고 협의회장과 공무원 간사 (
 - 분야별 시민제안사업 심사, 우선순위 결정, 지역참여형사업 적격심사 등 기능을 수행
- 기능 분과: 예산, 홍보
- 예산학교 운영

5) 시민사회현장연구자모임(2019). 「협치 정책과제 도출을 위한 사례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서울특별시

2. 청년자율예산⁶⁾

1) 정책도입의 배경과 목적

가. 기존 청년정책과 협치의 한계 검토

- 2012년 이후 청년일자리 기본조례, 청년기본조례의 제정과 서울청년의회 설치 등 서울시 청년정책과 협치는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
- 청년협치를 통해 제안된 청년들의 요구에 대한 행정 수용 제한적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정 영역 전반에 걸친 청년정책의 주류화 전략 제기

나. 민선7기 청년자치정부 출범과 청년자율예산제 도입

- 2019년 서울시는 청년자치정부 출범을 알리며 시장 직속 행정조직 청년청과 상설 협치 서울청년시민회의를 통한 청년자치 기반을 조성
- 청년 참여를 확대하여 청년정책 의제 발굴과 예산편성 권한 부여를 통해 청년자치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함

2) 운영체계

- 서울청년시민회의
- 운영위원회
- 확대운영위원회
- 분과: 의제분과, 기획분과
- 지역회의

6) 시민사회현장연구자모임(2019). 「협치 정책과제 도출을 위한 사례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서울특별시

3. 지역사회혁신계획⁷⁾

1) 정책도입 배경과 목적

가. 서울시 운영 중심 기조로 협치와 혁신을 제안하여 협치 패러다임 정착과 확산은 특정 사업의 성공이 아니라 시정 일반에 제도·문화적 기반이 축적되어야 가능하다고 보고 진행

- 협치의 중요성은 광역에 비해 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지역의 경우 분권을 동반한 협치로의 전환을 가조
- 서울시의 선도적 실험이 지역사회 확산되어 지역사회 현장의 경험과 성공이 광역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인식

나. 문제인식과 의제 발굴, 사업 실행까지 모든 과정을 지역사회에서 주관해 진행함으로써 지역사회 주체적 역량 개발과 협치 기반 축적 유도

2) 지역사회 혁신 계획 기본 원칙

- 다양한 분야
- 주체와의 협업으로 계획 수립
- 시민 참여 권한 보장
- 정보 소통과 정보 공개
- 협치 수준 진단과 개선 노력

7) 시민사회현장연구자모임(2019). 「협치 정책과제 도출을 위한 사례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서울특별시

4. 서울특별시 시의회/시/시교육청 3개 기관간 소통과 협치⁸⁾

1) 소통과 협치 도입의 목적

- 가.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교육청 간 소통과 협치의 관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지방자치 발전과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의 지속적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
- 나. 여기서의 “협치“란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교육청 간 의정활동과 일반행정, 교육행정 부문에서 상호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공동의 활동을 의미함

2) 기본 원칙

- 가. 서울특별시의회 의장과 단체장이 시의회와 집행기관 간 공동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소통과 협치를 촉진하기 위해 상시적이고 효율적인 소통과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상호 노력하고, 지방자치의 구현과 지방분권의 확대를 위해 지방행정 및 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높이는데 상호 협력함
- 나.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회의와 협의체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장과 단체장은 위의 원칙에 따라 회의와 협의체에서 논의한 결과를 의정활동과 일반행정, 교육행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함

8)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교육청간 소통과 협치를 위한 조례 [시행 2017. 3. 23.] [서울특별시조례 제6439호, 2017. 3. 23., 제정]

5. 시사점

1) 시민참여예산/청년예산/지역혁신계획

- 서울특별시라는 시민단체 참여가 많은 상황에서 적합한 구조임
- 참여예산학교, 청년자율예산제 등은 전북도의 상황에서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적용에는 한계가 있음: 운영 지원 조직 필요, 청년층 교육, 청년층의 진로 개척 등과 연계할 필요가 있음
- 지역혁신계획은 자치구 자율과 계획 수립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인데 이는 협치회의와 공론장 운영을 통해 강조할 수 있는 것인데 일반적인 구청장협의체나 구의회의장협의체나 존재하는 여건에서 제도화된 협치기구와의 연계 등은 고려되고 있지 않음
- 의사결정기구로 협치회의, 숙의를 위한 다양한 공론장 운영, 협치조정관 내지는 협치지원관 체제 구축으로 지방정부 수준의 행정기구 정비나 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다른 지역에서 답습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2) 서울특별시 시의회/시/시교육청 3개 기관간 소통과 협치

- 서울특별시의회의장과 단체장이 시의회와 집행기관 간 공동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소통과 협치를 강조했다는 점, 조례를 제정했다는 점까지는 발전적이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성과로 연결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축적된 결과가 없는 상태임
- 현실적으로 의회의원들이 집행기관 관계자와 평소에 행정의 집행을 낮은 수준에서 검토하고 협의할 수 있는 구조와 그러한 구조의 활용 방안까지는 검토하지 못한 상태였음
- 집행기관 위원회 등에 참여하는 의원들의 협치 역량 강화가 필요함

제2절 경기도 협치 사례

1. 고양시 시정주민참여위원회⁹⁾

- 시정주민참여위원회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야권연합에 함께한 합의에 따라 시정공동운영기구로 만든 시정운영위원회의 제도화된 후신으로, 시정운영위의 기능 중 주민참여 협치의 기획 조직과 합의한 개혁정책의 이행 점검 역할
- 추후 자문기구화 역할

2. 수원시 좋은 시정위원회와 수원 시민의 정부¹⁰⁾

- 수원시 좋은 시정위원회는 시정 정책형성 과정에 다양한 전문가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시정 주요정책 및 현안사항, 공약이행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및 자문을 통해 거버넌스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설치된 민관협력 협치 기구로, 민선 6기에 본격적인 활동 시작과 더불어 정책개발기능 강화 및 시민약속사업의 이행, 메타위원회로서의 기능 확대
- 수원 시민의 정부는 지역 협치 운동이 민선5기부터 정보공개와 같은 전통적 제도의 개선 확대와 마을르네상스(2010) 좋은시정위원회(2011), 주민참여예산제(2011), 도시정책시민계획단(2012) 등 혁신적인 제도들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협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협치 총괄 부서 등의 부재로 인하여 지속가능한 성과관리가 부재한 상태이며, 실정법이나 조례 등에 근거한 참여 등이 부재하여 협치의 발전에는 한계가 있었음

9) 오수길, 이춘열. (2018). 주민자치와 로컬 거버넌스 사례 연구: 고양시 자치도시 실험을 중심으로. , 13(2), 125-158. 참고

10) 수원시, 2017, 「수원 시민의 정부 기본계획」 - 이제 듣고 말하고 함께할 때입니다. 내용 재구성

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협의회

- 2020년 8월 21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상생발전을 위한 소통·협치 기구인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협의회’가 실무 검토기구 신설 등 실질적인 협치 강화 목표를 두고 새로 출범함; 정책협의회는 의회와 집행부의 상생발전을 위한 소통·협치 기구로, 2019년 1월 3일 공식 출범한 데 이어 제10대 후반기 의회 들어 재구성됨에 따라 기관 간 주요정책 추진 기제로 작동 기대¹¹⁾
- 경기도 정책협의회는 지방의회와 지방정부 간 협치와 소통의 창구였지만, 실무위원회가 없어 세밀한 정책협의를 어려웠음¹²⁾; 그런데 2020년 8월에 출범한 협의회는 정책협의회 산하에 실무협의기구인 정책조정회의와 K-경기뉴딜추진위원회를 두어 협의 사항에 대한 이행 점검 계획
- 정책협의회는 도정관련 주요정책, 주요 조례안 및 예산안, 사회적 주요 이슈사항, 경기도의회 정책·전략사업, K-경기뉴딜 추진 등을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공동 협약함¹³⁾
- 경기도 정책협의회 이전에 경기도는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경기도민의 민생과 경기도의 미래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여 지방자치와 분권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경기도민의 행복을 극대화하기로 함
- 경기도 민생연합정치란 경기도의 연정정당과 집행기관이 연합하여 대결과 갈등이 아닌 상생과 협력을 이루는 지방자치의 정치혁신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야말로 집행기관, 의회, 정당 등이 참여할 수 있는 협치 공간임¹⁴⁾

11) 경기도의회 보도자료 2020년 8월 21일자

12) 경기도는 2015년에 경기도 연정 실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다가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 조례 제정으로 연정 조례는 폐지됨

13) 경기도의회 보도자료 2020년 8월 21일자

14)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

제3절 충남도 협치 사례

1. 기초단체 수준

-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협치 사례는 부여군의 사회적경제창업지원센터, 서산시의 시장이 공약하고 시민이 결정하는 공약 확정 시민배심원제, 홍성군의 홍성형 마을학교 등을 들 수 있음
- 부여군의 사회적경제창업지원센터는 소통 방식은 민관 수평적 동반자 역할에 기반하여 사업 협력을 하되 공유자산인 부여시장을 창업에 활용하는 자원 공유 체계, 예산 지원, 역할 분담을 통한 책임 분담 등의 특성을 보유함¹⁵⁾
- 서산시의 시민배심원제는 다른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성별, 연령별, 인구비례에 따른 무작위 추첨을 통한 시민배심원을 충원하기가 쉽지 않아 민주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현실이 있었고, 직전 회의 불참에 따른 후속 회의 참여 불가 원칙으로 배심원단 축소 경향이 나타났으며, 청년층의 참여가 어려운 점이 이상적인 협치에 한계로 나타남¹⁶⁾
- 홍성군의 홍성형 마을학교는 마을주민과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데 마을과 학교가 협약하여 마을 안에서 마을주민이 교사로 참여하고 마을의 역사, 문화, 예술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진로체험 등 교육 프로그램을 우뉘하는데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학교운영위원회, 마을학교 관리자, 마을교사, 학부모, 교육청, 군청이 함께하는 협치 형태로 진행하여 정보 공유와 함께 주민과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성과¹⁷⁾

15) 충청남도, 2019민관협치 우수사례집

16) 충청남도, 2019민관협치 우수사례집

17) 충청남도, 2019민관협치 우수사례집

제4절 협치 성과 평가

1. 서울특별시의 협치 성과 평가 제안

- 서울시의 경우 ‘협치시정’의 관점에서 이해당사자가 평가과정에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평가결과의 신뢰성과 결과의 활용도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시민의 정책관심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인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문제를 제기함
- 협치 관련 지표 설정이 사실상 현행 성과주의 평가체계 내에 적용하기가 어렵고, 협치 관련 지표를 통하여 협치 성과를 확인하기에는 극히 제한적이며, 이를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 평가자료 또한 부족하다고 보았음; 이 점에서 협치와 관련된 신규 사업의 평가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보았음¹⁸⁾
- 정책(사업) 추진을 둘러싼 절차와 관계 등을 포괄하는 통합적인 성과관리가 필요함. 특히 협치시정에 부합하고 이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협치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협치친화적 평가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여 협치친화형 시정 평가제도는 ‘BSC 성과평가와 ‘협치역량평가로 구분되는 통합적인 성과관리체계로 구성하자고 제안함

2. 협치 역량 평가 체계 구성과 주요 특징

- 협치 역량 평가 지표는 가장 기본 요소인 객관성 확보와 간략화 및 간소화를 통해 피평가자의 수용성을 높이고, 협치인식 확산과 근본적인 협치기반 조성을 위한 지표 개발에 역점을 둠 또한, 지역사회 이해당사자 및 주민들의 정책참여 유도과 정보 공유를 통한 함께하는 협치친화적 참여형 평가프로세스가 되도록 노력함
- 협치역량평가의 지표체계는 계획·실행·결과로 이뤄진 3개의 평가항

18) 정병순, 이성호, 김경철, 박예안, 조현혜. (2017). 서울시 협치친화형 평가체계 구축방안. 서울연구원 정책과제연구보고서, 요약 내용 재구성

목에 9개의 세부항목과 14개의 평가지표, 1개의 가점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총 20점 배점의 평가항목 [계획]의 평가시기는 당년 8~9월이며, 세부 항목으로 [계획의 타당성], [목표의 적정성], [계획 수립과정의 적합성]이 있으며, 각 평가지표는 [협치 이행계획 충실도], [성과목표 부합도], [협치 이행 노력도]임.

<표> 서울시 협치역량 평가의 평가 지표 및 배점(안)¹⁹⁾

평가시기	평가항목	세부 항목	평가 지표	지표성격	배점
당해연도 8~9월	계획 (20점)	계획의 타당성	협치 이행계획 충실도	정량	7점
		목표의 적정성	성과목표 부합도	정량	10점
		계획 수립과정의 적합성	협치 이행 노력도	정량	3점
다음연도 1~2월	실행 (50점)	제도적 기반 조성 (20점)	위원회 활력도	정량	8점
			시정의 공개성·투명성	정량	5점
			장치분권 지향성	정량	7점
		문화적 기반조성 (10점)	협치 리더십 구현	정량	7점
			협치 문화 활력도	정량·정성	3점
			협치사업 실행 (20점)	공론절차 이행도	정량
	시민참여 활력도	정량		5점	
	부서간 협업 노력도	정량		5점	
	결과 (30점)	기반 조성	기반 조성 목표달성도	정량	10점
		협치 사업 성과	협치사업 성과 목표달성도	정량·정성	10점
		시민만족도	협치시정 만족도	정량	10점
	가점 항목		핵심 협치정책과 연계	정량	5점

19) 협치역량평가 지표개발 사례집, 서울특별시, P.73 재구성

3. 협치 사례 시사점

- 협치역량평가의 지표체계는 서울시의 시민참여예산이나 청년자율예산은 기존 전북도 등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을 확대 적용한 것으로 그대로 수용할만한 대상은 아니지만 협치 형태를 공고히하는 과정 등에 대해서는 검토할만한 가치가 있음
- 서울시의 시의회, 시, 시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3개 기관간 소통과 협치는 바람직한 형태지만 이러한 조례 등을 통해 높은 수준의 협치는 대체로 상징적인 수준에 불과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경기도의 연합정치나 정책협의회는 좀 더 구체화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의 협치라는 점에서 전북도 수준에서 수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할 수 있는 여건 등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면 도의원의 공약이나 도지사의 공약을 검토하여 공통점이 있는 공약 등을 중심으로 관련 공약들이 집행기관 사업 등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협의 전략 등은 의원 혹은 의회 차원에서나 집행기관 모두에게서 유용할 것임
- 협치역량 평가와 관련해서는 구상은 적절함; 다만 집행기관의 평가체계나 성과를 관리해가는 입장에서 보면 평가를 위한 평가가 될 수도 있음을 감안하여 성과지표에서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임
- 예를 들면 현행 집행기관의 성과지표 중에 협력 지표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활용하여 협치 성격을 가미할 수 있을 것이지만 대상이 확대되고, 실제로 예산이 공유되지 않는 여건에서 협치의 성과를 그대로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제4장 자치단체위원회 현황

제1절 자치단체위원회 현황53
제2절 지방의회와 위원회 관계59
제3절 지방자치단체 별 위원회 특성82

제1절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5개년 현황

1. 2015년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현황

구분	위원회수	연간평균회의 개최횟수	운영경비 (천원)	선치근거				
				법령		조례	규칙	기타
				강행	임의			
총계	21,729	3.7	48,147,966	11,721	1,800	6,878	457	873
서울	2,462	3.8	7,863,030	1,259	198	859	48	98
부산	1,366	3.9	1,629,116	852	108	273	25	108
대구	779	4.1	1,978,870	486	51	168	14	60
인천	1,033	3.1	2,051,734	612	123	226	32	40
광주	561	3.6	1,193,042	336	46	149	13	17
대전	523	3.1	1,055,986	346	47	110	1	19
울산	495	3.0	1,217,750	245	40	175	13	22
세종	134	3.1	355,340	67	18	49		0
경기	3,124	4.2	10,563,246	1,776	280	934	38	96
강원	1,747	3.8	3,419,299	959	136	518	27	107
충북	1,105	4.0	1,729,037	629	72	325	30	49
충남	1,350	3.3	3,131,148	483	157	680	18	12
전북	1,127	4.0	1,664,650	450	98	507	29	43
전남	1,910	3.2	2,760,282	914	160	692	44	100
경북	2,057	3.3	3,181,163	1,101	151	597	75	133
경남	1,775	3.4	3,356,240	968	104	531	50	122
제주	181	5.2	998,033	83	11	85	0	2

2. 2016년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현황

구분	위원회수	연간평균회의 개최횟수	운영경비 (천원)	선치근거				
				법령		조례	규칙	기타
				강행	임의			
총계	22,891	4	51,138,591	12,551	1,758	7,050	509	1,023
서울	2,586	6	7,724,744	1,252	175	1,000	65	94
부산	1,410	4	1,294,297	809	104	382	20	95
대구	798	4	1,966,887	512	44	178	17	47
인천	1,048	3	2,186,061	598	106	279	33	32
광주	583	3	1,472,095	285	76	188	15	19
대전	553	3	864,721	392	31	95	4	31
울산	552	3	6,536,323	312	48	167	6	19
세종	141	5	353,989	114	13	14	-	-
경기	3,389	4	9,483,260	1,929	349	939	65	107
강원	1,769	4	2,341,935	940	142	516	41	130
충북	1,138	4	1,394,483	670	58	330	38	42
충남	1,391	4	2,556,704	729	78	485	30	69
전북	1,353	3	1,888,267	627	102	536	35	53
전남	2,033	3	2,798,762	1,036	159	692	59	87
경북	2,091	3	3,344,713	1,288	134	511	42	116
경남	1,839	3	3,912,480	962	128	630	39	80
제주	217	5	1,018,870	96	11	108	-	2

3. 2017년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현황

구분	위원회수	연간평균회의 개최횟수	운영경비 (천원)	선치근거				
				법령		조례	규칙	기타
				강행	임의			
총계	23,500	4	51,943,939	13,936	2,066	6,267	232	999
서울	2,642	4	7,663,245	1,408	219	879	43	93
부산	1,447	4	1,581,382	906	149	285	9	98
대구	784	4	1,452,668	493	58	182	7	44
인천	1,092	3	1,935,108	648	136	256	18	34
광주	609	3	1,238,122	341	38	207	4	19
대전	573	3	832,488	378	46	1,288	3	18
울산	575	3	1,393,957	362	59	122	5	27
세종	158	5	404,328	92	17	44	-	5
경기	3,534	4	10,350,311	2,023	358	1,018	29	106
강원	1,804	4	2,872,524	1,069	167	448	20	100
충북	1,190	4	1,621,172	716	94	309	17	54
충남	1,456	4	9,029,100	869	117	396	14	60
전북	1,346	3	1,654,783	768	94	418	19	47
전남	2,043	3	2,278,278	1,194	176	572	20	81
경북	2,126	3	2,915,702	1,405	160	450	7	104
경남	1,884	4	3,444,789	1,142	162	455	17	108
제주	237	6	1,275,982	122	16	98	-	1

4. 2018년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현황

구분	위원회수	연간평균회의 개최횟수	운영경비 (천원)	선치근거					
				법령		조례	규칙	기타	
				강행	임의				
총계	24,874	3.8	53,619,821	14,508	2,262	6,773	601	730	
서울	2,766	4.1	7,644,467	1,399	252	959	79	77	
부산	1,530	3.8	1,306,422	1,007	113	309	42	59	
대구	819	4.3	780,468	508	60	195	26	30	
인천	1,137	3.6	2,128,814	690	128	265	25	29	
광주	656	2.7	1,093,411	347	68	214	10	17	
대전	618	3.0	1,369,051	385	57	157	4	15	
울산	596	3.0	1,983,798	340	95	122	15	24	
세종	166	4.1	382,004	98	17	45	4	2	
경기	3,734	4.2	14,210,721	2,181	336	1,046	74	97	
강원	1,916	3.9	2,795,556	1,135	210	458	28	85	
충북	1,244	4.2	2,699,772	662	153	360	41	28	
충남	1,586	3.7	3,493,286	924	140	431	38	53	
전북	1,488	3.5	2,174,763	818	95	500	50	25	
전남	2,173	3.6	2,628,928	1,281	168	621	46	57	
경북	2,213	3.6	3,839,457	1,426	172	501	63	51	
경남	1,977	3.7	3,911,149	1,200	180	463	56	78	
제주	255	5.6	1,177,754	107	18	127	-	3	

5. 2019년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현황

구분	위원회수	연간평균회의 개최횟수	운영경비 (천원)	선치근거				
				법령		조례	규칙	기타
				강행	임의			
총계	26,395	3.91	50,540,066	14,730	2,437	7,900	473	855
서울	2,900	4.53	7,564,672	1,459	211	1,088	60	82
부산	1,620	3.85	1,608,201	972	115	402	37	94
대구	857	4.01	2,645,112	499	78	225	15	40
인천	1,223	3.60	2,215,262	747	130	299	22	25
광주	701	3.00	1,238,955	375	64	239	12	11
대전	675	3.26	957,162	435	59	163	4	14
울산	628	3.14	1,174,571	376	65	162	9	16
세종	174	4.96	527,027	92	17	58	-	7
경기	4,104	4.33	1,508,037	2,174	417	1,359	60	94
강원	1,966	4.23	2,540,263	1,155	210	496	35	70
충북	1,320	4.37	1,744,506	634	172	429	38	47
충남	1,682	3.88	3,576,415	956	129	503	34	60
전북	1,570	3.16	2,568,754	778	160	518	30	84
전남	2,309	3.63	2,656,621	1,292	224	698	36	59
경북	2,340	3.29	2,873,059	1,456	198	572	40	74
경남	2,060	3.96	3,370,293	1,192	166	583	41	78
제주	26	5.02	1,771,157	138	22	106	-	-
전북도청	144	3.55	809,200	70	10	58	1	2

제2절 지방의회와 위원회 관계

1.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보는 의회와 집행기관 위원회

- 전국 자치단체들이 대부분 공통적으로 제정하여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조례는 제도적으로 지방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분리를 전제로 하여 지방정부의 기관 구성이 전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협치 성격을 감안하여 민간 뿐만 아니라 의회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고 있음
- 집행기관이 운영하는 위원회이기에 집행기관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지만 위원회 운영 취지가 집행기관 위주로 결정하고 집행하지 않도록 하자는 데 있기 때문임
- 위원회 구성에 참여하는 관계자는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민간단체, 공무원, 의원 등으로 되어 있는데 선행 연구 등에서 제시한 서울, 경기, 충남이나 제주 등의 사례를 보면 각종 위원회 관련 조례에서 위촉/임명 대상으로 해당 시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이나 해당 시도의회 의원을 포함하고 있음

<p>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p>	<p>위원회 구성/대상: 의회 추천 인사 혹은 의원</p>
<p>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p>	<p>제6조(위원의 위촉) ① 위원회는 위촉직 및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도지사가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하여야 한다.</p> <p>1. 전라북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p> <p>2.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 기관 및 비영리 민간단체가 추천한 사람</p> <p>3.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p> <p>4. 도지사가 위원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p> <p>②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법상 주소지가 특정 시·군인 위촉직 위원이 10분의 4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의 위임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제외한다. <개정 2019. 4. 5></p> <p>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로 한다.</p> <p>④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p>

	<p>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회의 성격상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2.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p>⑤ 도지사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미리 인원·자격·선정기준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도보 등에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따른 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이 없거나 위촉대상 위원의 정수에 미달한 경우 2. 위원회의 성격상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3. 긴급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위원회가 해당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p>⑥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3 이하로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4></p> <p>⑦ 위촉직 위원은 위촉기준에 해당분야의 활동경력 또는 전문 경력을 최근 3년 이상 증빙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4></p> <p>⑧ 제7조제1항에 따라 해촉된 의원은 해촉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2호, 제3호, 제6호는 제외한다. <신설 2017. 4. 14></p>
<p>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p>	<p>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0.4.13., 2020.11.1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추천을 받은 도의회의원 3. 관계기관 및 소속 공무원 4. 그 밖에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 <p>②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1.13.></p> <p>③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13.></p> <p>④ 담당부서의 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을 위촉 할 때에는 총괄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동일인이 4개 이상의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4.13., 2020.11.1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 2. 제10조의2에 따른 비상설 위원회인 경우 <p>⑤ 도지사는 제1항제4호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미리 인원, 자격, 선정기준 등을 제주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공개모집 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4.13., 2020.11.1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사람이 없거나 응모자 중 자격기준에 합당 한 사람이 없는 경우 2. 위원회의 특성상 참여 위원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3. 긴급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제10조의2에 따른 비상설 위원회의 경우 4. 그 밖에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p>⑥ 도지사는 위원을 위촉할 때 제8조 각 호의 해촉 사유와 제11조의 청렴서약서 제출에 대하여 위촉 위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p>

<p>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p>	<p>2020.11.13.>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 인원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 임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조례 등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위원회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을 위촉 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같은 직위의 위원장이 속한 위원회의 경우에는 2개)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위촉 해제 후 비위촉기간이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위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6. 7. 14., 2018. 1. 4.> 1. 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④ 시장 등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9. 21.>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 7. 14., 2017. 9. 21.>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 7. 14., 2017. 9. 21.> ⑦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7. 14., 2017. 9. 21.></p>
<p>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p>	<p>제7조(위원의 위촉) ① 위원회는 위촉직 및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있는 부서의 장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1.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개정 2013. 12. 2.> 2.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회 의원 <개정 2017. 12. 29.> 3. 그 밖에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 <개정 2013. 12. 2.>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3. 12. 2.> ③ 담당부서의 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 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3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 12. 2.> 1.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 2.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④ 도지사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미리 인원수, 자격, 선정 기준 등을 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공모 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사람이 없거나 응모자 중 자격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없는 경우 <개정 2013. 12. 2.> 2. 위원회의 특성상 참여 위원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3. 긴급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위원회가 해당안건을 처리 한 후 해산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⑤ 도지사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를 직접</p>

	<p>운영하는 실·과는 여성가족 업무담당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0. 13.]</p>
<p>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p>	<p>제7조(위원의 위촉) ① 위원회는 위촉직 및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 있는 부서의 장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충청남도의회 추천을 받은 도의회 의원 <개정 2015. 10. 30.> 3. 그 밖에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 <p>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로 한다.</p> <p>③ 도지사는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미리 인원수, 자격, 선정기준 등을 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공모 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사람이 없거나 응모자 중 자격기준에 합당 한 사람이 없는 경우 2. 위원회의 특성상 참여 위원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3. 긴급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위원회가 해당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p>④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⑤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3 이내로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2. 집행기관 위원회 구성/대상: 의원 추천 인사 혹은 의원 사례

1) 서울특별시 집행기관 위원회 의회 협치 사례

- 서울특별시의 많은 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시의원을 위원 대상으로 하거나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위원회는 의회 의원 혹은 의회가 추천하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임명하여 의회 운영에서의 의회와의 협치를 시행하고 있음
- 집행기관의 위원회 협치 성격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의원이 감사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²⁰⁾

서울특별시 집행기관 위원회 사례	위원회 구성/대상: 의회 추천 인사 혹은 의원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은 개방형 직위로 임명한다. 다만, 위원 2명은 서울특별시의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제9조(위원의 겸직 등의 금지)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이거나 지방의회의원의 직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구성)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구성) ①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2. 4명의 위원은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위원인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2명과 서울특별시 감사위원장을 포함하여 소속 공무원 2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되, 서울특별시 감사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구성)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3.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0) 일본 지방정부의 감사위원으로는 해당 지방정부 의원이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음; 양지숙(2015). 「일본의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제도 분석과 시사점」, 감사연구원.

서울특별시 집행기관 위원회 사례	위원회 구성/대상: 의회 추천 인사 혹은 의원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구성) ③ 위원은 서울특별시 3급 이상 공무원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과 시정의 각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위원회 구성)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서울특별시 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제3조(구성)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나.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위원 중 의장이 추천하는 2명 이내의 시의원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5조(구성)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안전·환경·수자원분야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로서 의장의 추천을 받은 의원
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구성) ② 위원은 법조계, 학계, 언론계, 종교계, 노동계, 경제계, 여성계, 그 밖의 민원사항에 관련된 분야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또는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받은 자로 한다.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 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조례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3.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을 포함한 의원 4명

2) 경기도 집행기관 위원회 의회 협치 사례

- 경기도 위원회는 의회 의원 혹은 의회가 추천하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임명하고 있음여 의원회 운영에서의 의회와의 협치를 시행하고 있음
- 경기도의 일부 위원회도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도의원을 위원 대상으로 하거나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 대상으로 하여 위원회 운영에서의 의회와의 협치를 시행하고 있음

경기도 집행기관 위원회 사례	위원회 구성/대상: 의회 추천 인사 혹은 의원
경기도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제3조(구성)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2. 도의회 의원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구성) 2. 4명의 위원은 도의회의원 2명과 경기도 소속공무원 2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구성 등)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경기도의회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하는 경기도의회 의원 2명
경기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도의원
경기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구성)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경기도의회 의원 2명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 조례	제2조(구성)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교통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한다. 2. 경기도의회 교통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 3명
경기도 수자원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조(구성) ③ 위원은 하천관련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경기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2명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제3조(구성) ② 위원장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경기도 집행기관 위원회 사례	위원회 구성/대상: 의회 추천 인사 혹은 의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1. 경기도의회 의원 2인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 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구성)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으로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 촉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 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구성)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지명 한다. 1. 경기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5명

3) 충청남도 집행기관 위원회 의회 협치 사례

- 충청남도 위원회는 의회 의원 혹은 의회가 추천하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임명하고 있음여 의원회 운영에서의 의회와의 협치를 시행하고 있음
- 충청남도의 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도의원을 위원 대상으로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례는 많지 않지만 의장이 추천하는 인사를 위원 대상으로 하여 위원회 운영에서의 의회와의 협치를 시행하고 있음
- 충청남도의회기본조례는 제23조2에 집행기관 위위원회 등의 위원 추천과 관련하여 의회가 의원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집행기관 위원회 등의 위원 등으로 추천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추천하고, 추천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어 의회의 집행기관 위원회 참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음(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2018년 신설 조항)
- 집행기관의 위원회 협치 성격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감사위원회도 서울 특별시감사위원회처럼 기본적으로 의원이 감사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²¹⁾

충청남도 집행기관 위원회 사례	위원회 구성/대상: 의회 추천 인사 혹은 의원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위원의 위촉) ① 위원회는 위촉직 및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 있는 부서의 장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2. 충청남도의회가 추천을 받은 도의회 의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은 위원 중 비상임 위원에게도 적용한다.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겸직 등의 금지) ① 위원회 위원 중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職)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원
충청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제2조 (구성) ① 충청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21) 일본 지방정부의 감사위원으로는 해당 지방정부 의원이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음; 양지숙(2015). 「일본의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제도 분석과 시사점」, 감사연구원.

충청남도 집행기관 위원회 사례	위원회 구성/대상: 의회 추천 인사 혹은 의원
구성·운영 조례	호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2. 4인의 위원은 충청남도의회의원 2명과 소속공무원 2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충청남도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충청남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구성) ③ 위원회의 위원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지명한 자가 된다. 2. 충청남도의회 의원
충청남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제17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로 한다. 1. 도의회 의원
충청남도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할 수 있다.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충청남도의회 예산정책자 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 례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 의원
충청남도 장애인복지위원 회 조례	제3조(구성) ③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4.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위원회 설치)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위촉직 위원 :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으로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3명이 내를 포함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충청남도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제3조 (구성)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5. 충청남도의회 의원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12조(위원회 구성)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되, 2분의 1 이상은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충청남도의회 의원

4) 제주특별자치도 집행기관 위원회 의회 협치 사례

- 제주특별자치도 위원회는 의회 의원 혹은 의회가 추천하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임명하고 있어 위원회 운영에서의 의회와의 협치를 시행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도의원을 위원 대상으로 규정한 사례는 찾기 어려움
- 집행기관의 위원회 협치 성격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도 기본적으로 의원이 감사위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²²⁾

제주특별자치도 집행기관 위원회 사례	위원회 구성/대상: 의회 추천 인사 혹은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겸직 등의 금지)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의 직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2. 4명의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의원 2명으로 위촉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소속공무원 2명으로 임명한다.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조례	제2조(구성)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학계, 언론계, 법조계, 경제계, 노동계 및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주자치도의회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③ 당연직 위원은 COP28 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

22)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규정에 의거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어서 서울특별시, 충청남도의 감사위원회와는 제도적 기반이 다름

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p>촉한다.</p> <p>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산업계·학계·언론계 및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p>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p>제3조(구성)</p> <p>③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 사람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및 세입 업무 담당 실·국·본부장이 된다.</p> <p>2.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원 또는 지방재정 관련 전문가 3명</p>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p>제6조(구성 등)</p> <p>③ 위원 중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p> <p>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장이 추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및 교육위원</p>
제주특별자치도해양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자문위원회 조례	<p>제3조 (구성)</p> <p>③ 당연직위원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관광국장, 환경보전국장, 도시건설국장, 해양수산국장, 제주시 및 서귀포시의 해양생태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해당 기관·단체의 추천 또는 공모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위촉한다.</p> <p>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p>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p>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p> <p>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4명</p>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 총량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p>제3조(위원회의 구성)</p> <p>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p> <p>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p> <p>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p>

3. 직무와 관련 위원회 활동의 제한: 대통령령

1) 직무 관련 위원회 활동을 제한하는 이유

- 제도적으로 지방정부가 의회와 집행기관이 분리되어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경우 지방의원이 집행기관의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음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지방의원의 집행기관 위원회 참여에 대해 참여 자체는 제한하지 않지만 심의·의결할 때에는 회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규정은 의원이 지방자치단체 등의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본인 및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방지하자는 것으로 되어 있음(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업무 편람, 2017)
- 나아가 위원회의 특정 안전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나 이익집단의 의원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제공 등 부패 발생 소지를 차단하자는 것으로 되어 있음(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업무 편람, 2017)

대통령령/조례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조문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시행 2020. 5. 27.] [대통령령 제30608호, 2020. 4. 7., 일부개정]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검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등(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시행 2011. 2. 3.]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검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등(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등에서 다음 각

대통령령/조례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조문
[대통령령 제22471호, 2010. 11. 2., 제정]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소관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직무 관련 심의·의결 회피의 강제성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와 관련하여, 심의·의결의 ‘회피’가 강행 규정인지, 그리고 회피 의무를 위반하여 심의·의결에 참여한 경우 당해 심의·의결의 법적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 답변으로 심의·의결의 회피를 의무화(강행 규정)하고 있다는 점과 회피 의무를 위반하여 심의·의결에 참여한 경우 안건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회의 회의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고 함(국민권익위원회, 2017, 23)

3) 심의·의결 회피 여부를 판단·결정하는 주체

- 지방의회 의원 행동 강령의 준수 주체는 지방의회 의원이므로 제7조에 따른 위원회 등에서의 심의·의결 회피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는 지방의회 의원임²³⁾

4)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 소관 집행기관 위원회 활동시 교체 여부

- 예를 들어 농수산위원회(상임위원회) 소속 A의원이 집행기관의 농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행동강령에 따라 A의원의 위원 위촉을 취소하고 다른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교체해야 하는지에 대해

²³⁾직무와 관련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할 사항임(국민권익위원회, 2017, 25)

서는 의원의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으로의 위촉 가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교체할 필요는 없지만 안전에 따라 규정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심의·의결을 회피하라는 것임(국민권익위원회, 2017, 24)

- 지방의회 의원을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당시에는 제7조가 정한 소관 상임위 소속이 아니었으나, 당해 의원이 재선되면서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이 된 경우, 잔여 위촉 기간에도 불구하고 당해 의원을 해촉하고 다시 위촉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원의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으로의 위촉 가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안전에 따라 규정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심의·의결을 회피하라는 것임(국민권익위원회, 2017, 25)

4. 직무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에 따른 협치 제약

1)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약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는 협치 강조

-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7조는 의원이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자문·고문·검토 등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으며, 심의·의결인지 자문·검토 등인지 여부는 위원회의 명칭이 아니라 의원이 해당 위원회 내에서 실제로 수행하는 활동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국민권익위원회, 2017, 23)
-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은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권한관계와 유기적 업무 관계 형성을 통한 협치 측면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
 - 첫째,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의 구체적 실행계획의 수립과 사업 평가 등에 있어 상임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으로 참여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갈등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 강령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
 - 둘째,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집행기관 산하 위원회의 참여가 금지될 경우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이 참여해야 하는 바, 이는 의회 운영의 근간인 상임위원회 중심주의 원리를 훼손하고, 상임위원회 위원 간의 업무 중복 및 불필요한 의견 갈등과 대립 등을 초래할 수 있음²⁴⁾
 - 셋째, 의원이 집행기관 산하 각종 위원회를 통해 정책결정과 집행, 평가 과정에 참여하여 주민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정책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원활한 정책 집행을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을 간과함(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 강령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

24) 「지방자치법」(제35조제6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에 따라, 의원의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를 회피하여 다른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관련 의원이 직업과 연관 있는 집행부내 해당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는 바, '직무 관련성'만을 기준으로 위원회 활동을 제약하는 규정은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됨(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 강령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

- 넷째, 집행기관 소관 위원회 구성에 참여하는 의원은 위원회 구성 위원 중 상대적으로 소수에 불과한 바, 위원회 의결이나 결정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위치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의정 활동에 대한 과잉 제한임(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 강령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
- 서울특별시의회의 경우 제9대 후반기 원 구성 직후 출범한 의회 역량 강화 T/F에서는 제7조 제1호(상임위 등 위원회 직무관련 회피)는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을 제시함; 상임위원회를 통한 의원 의견수렴 결과 100명의 응답자 중 73명이 제7조 제1호를 삭제하자는 의견을 제시함(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 강령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²⁵⁾
- . - 다른 광역자치단체가 대체로 행동강령 표준 조례안을 그대로 수용한 데 비해서 서울특별시의회는 당초의 표준 조례안에 제시된 7조를 수정하였음
- . - 2016년 12월 19일에 제안된 서울특별시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 이유로 안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와 관련된 사항 중 일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함이라고 밝힘
- 이렇게 하여 최종적으로 성안된 안 제7조 다음과 같았음: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검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서울특별시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 단체의 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등(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25)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수렴 결과(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 강령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

상임 위원수	응답결과			미응답	
	계	제7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7조1호를 원안과 같이 존치한다		기타
105	100	73	20	7	5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 등에서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서울특별시의회는 집행기관 위원회 활동에서 사적인 이해 관계는 당연히 회피 대상으로 설정함 그렇지만 표준안에서 제시했던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은 삭제하여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정책 공감대 형성 등 의회와 집행기관이 협치를 할 수 있는 상황에 비중을 두어 직무 관련이라는 모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음

○ 서울특별시의회를 제외한 16개 시도의회는 모두가 표준안을 수용하여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한 상태임

광역시도 조례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조문
서울특별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검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서울특별시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등(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 등에서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회의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검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시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등(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대구광역시회의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검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시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등(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

광역시도 조례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조문
	(「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인천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p>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검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인천광역시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등(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광주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p>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검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광주광역시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등(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p>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검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대전광역시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등(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울산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 례	<p>제12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검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등(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11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검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시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등(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 등에서 다음 각 호의

광역시도 조례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조문
	<p>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p>경기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p>	<p>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검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경기도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등(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의원 자신, 배우자, 자신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p>강원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p>	<p>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검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강원도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등(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p>충청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p>	<p>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검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충청북도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등(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p>충청남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p>	<p>제11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검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충청남도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등(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원이 소속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광역시도 조례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조문
	사항
전라북도의회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p>제12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검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및「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등(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전라남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p>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검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전라남도 및「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등(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경상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p>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검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경상북도 및「공직자윤리법」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등(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경상남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p>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검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도 및「공직자윤리법」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등(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p>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도의회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검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제주자치도 및「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등(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등에서 다음</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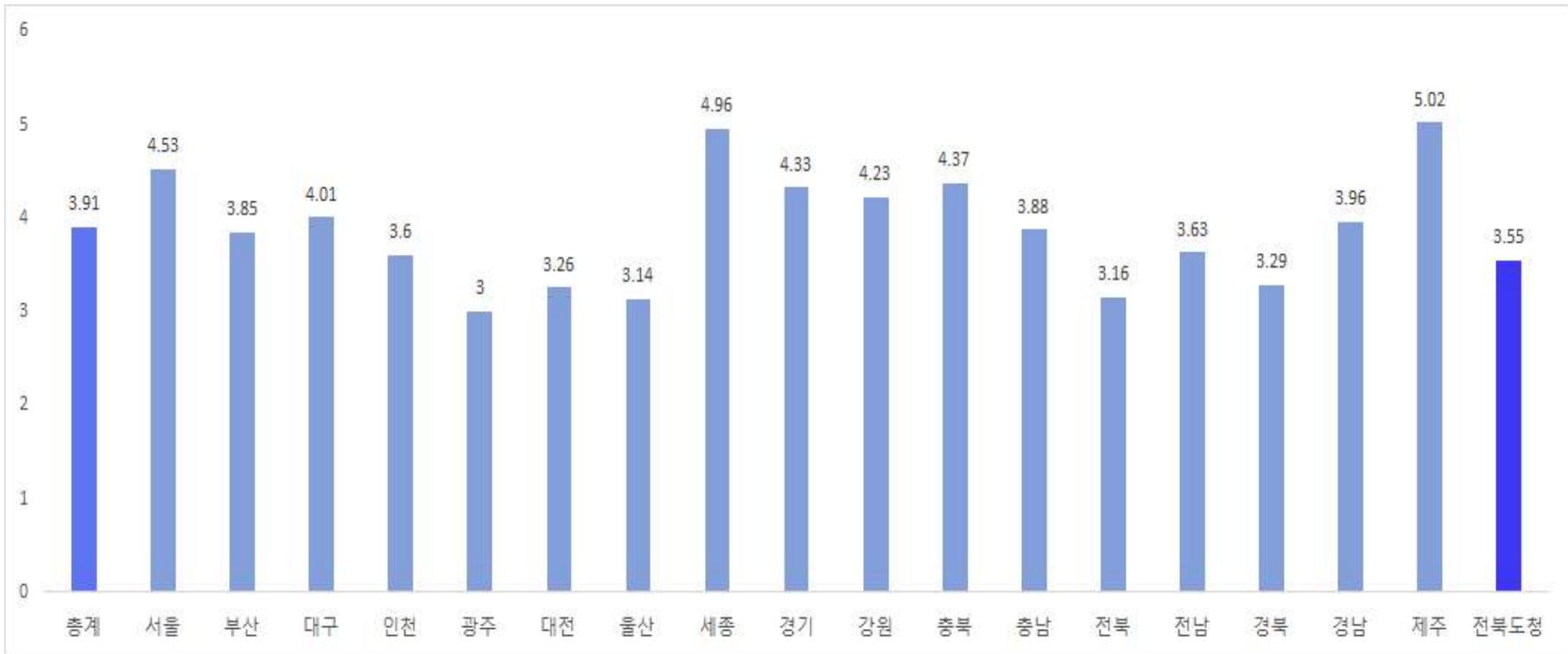
광역시도 조례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조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1. 도의회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5. 의원의 집행기관 위원회 활동 사례의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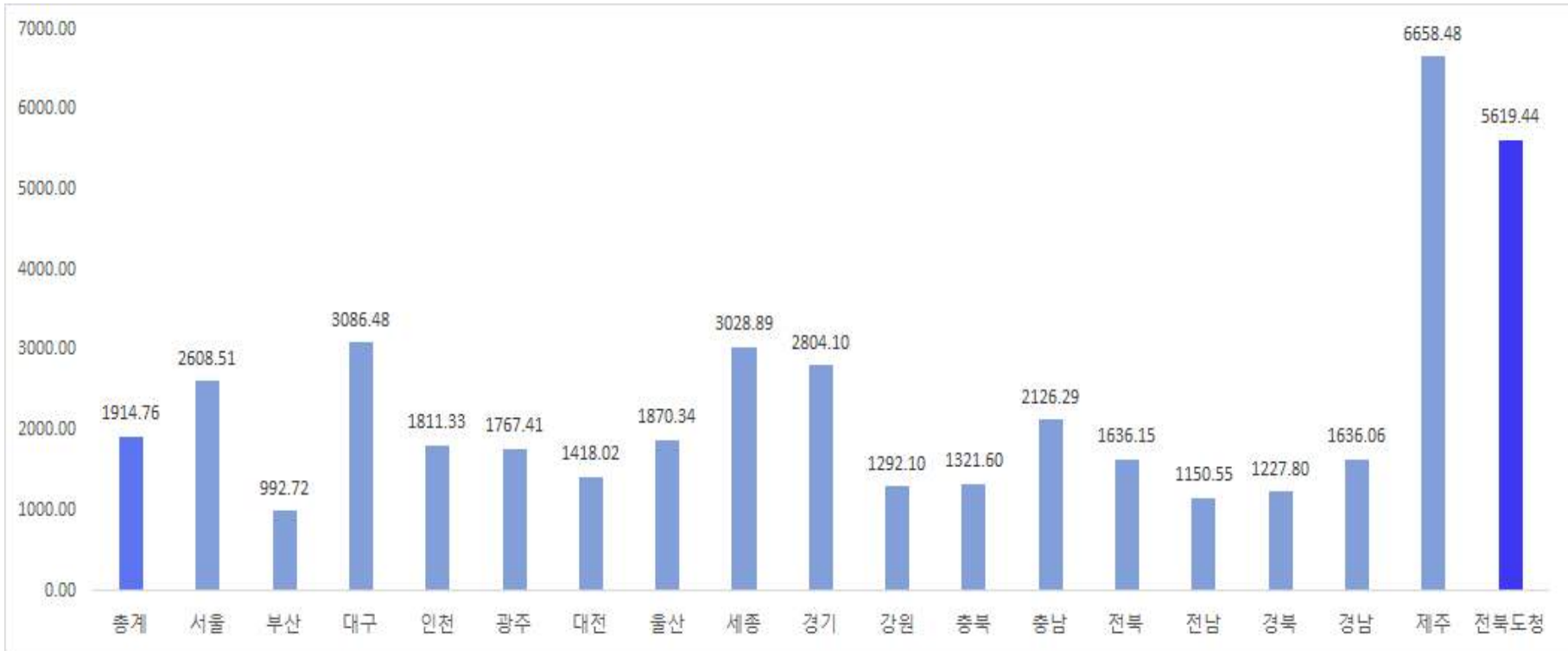
- 전국 자치단체들의 각종 위원회는 민간과의 협치 뿐만 아니라 기관대립형적 지방정부 운영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여 의회와의 협치도 가능하게 하고 있음. 이러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사례로 살펴 본 모든 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련 조례에 포함되어 있음
- 서울특별시, 경기도,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등의 위원회 관련 조례를 각각 10개씩 점검한 결과 많은 위원회에서 해당 의회가 추천한 인사나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임명하도록 하여 의회의 참여를 통한 협치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은 집행기관 위원회 소관 의회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임명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협치 성격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음
- 집행기관 위원회에서의 의회와의 협치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배제하여 감사 관련 협치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아 의원 참여를 가능하게 하고 있는 일본 감사위원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음

제3절 지방자치단체 별 위원회 특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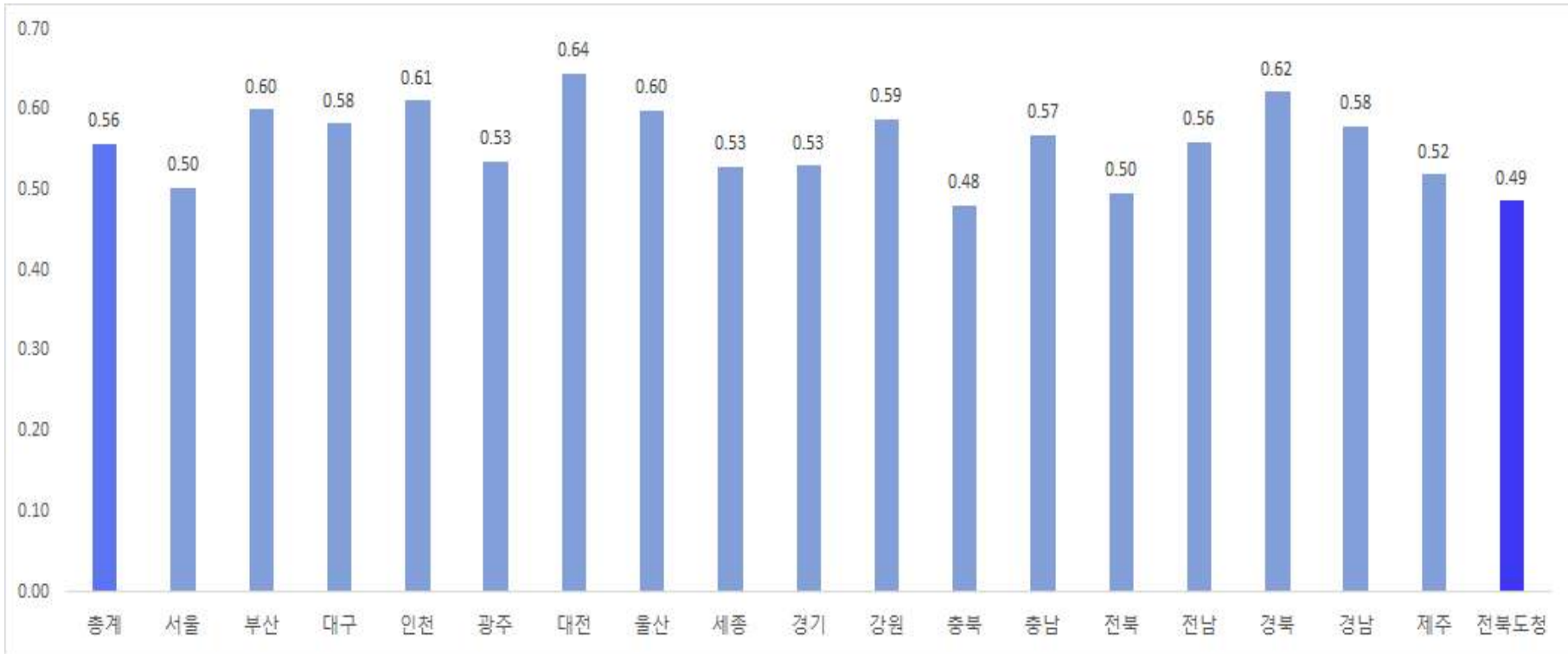
1. 지방자치단체별 위원회 수 대비 개최횟수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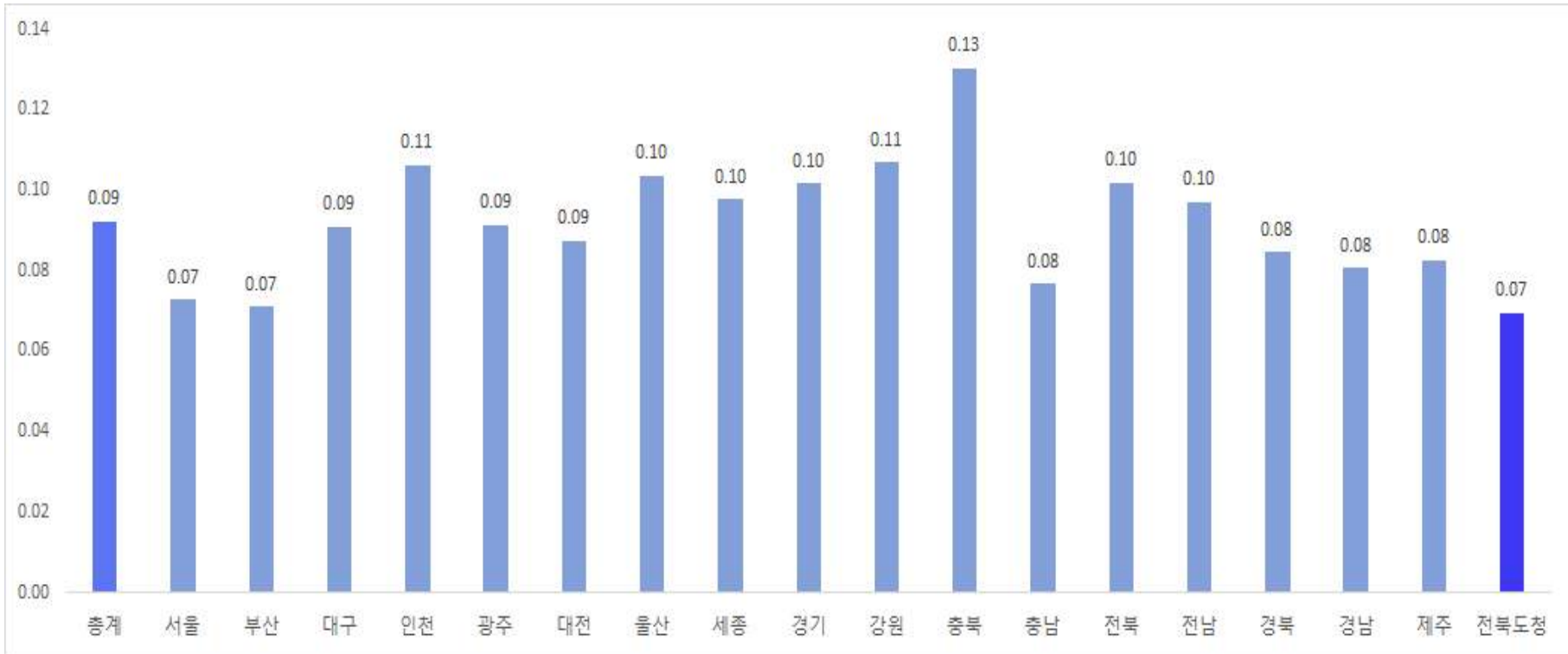
2. 지방자치단체별 위원회 수 대비 운영경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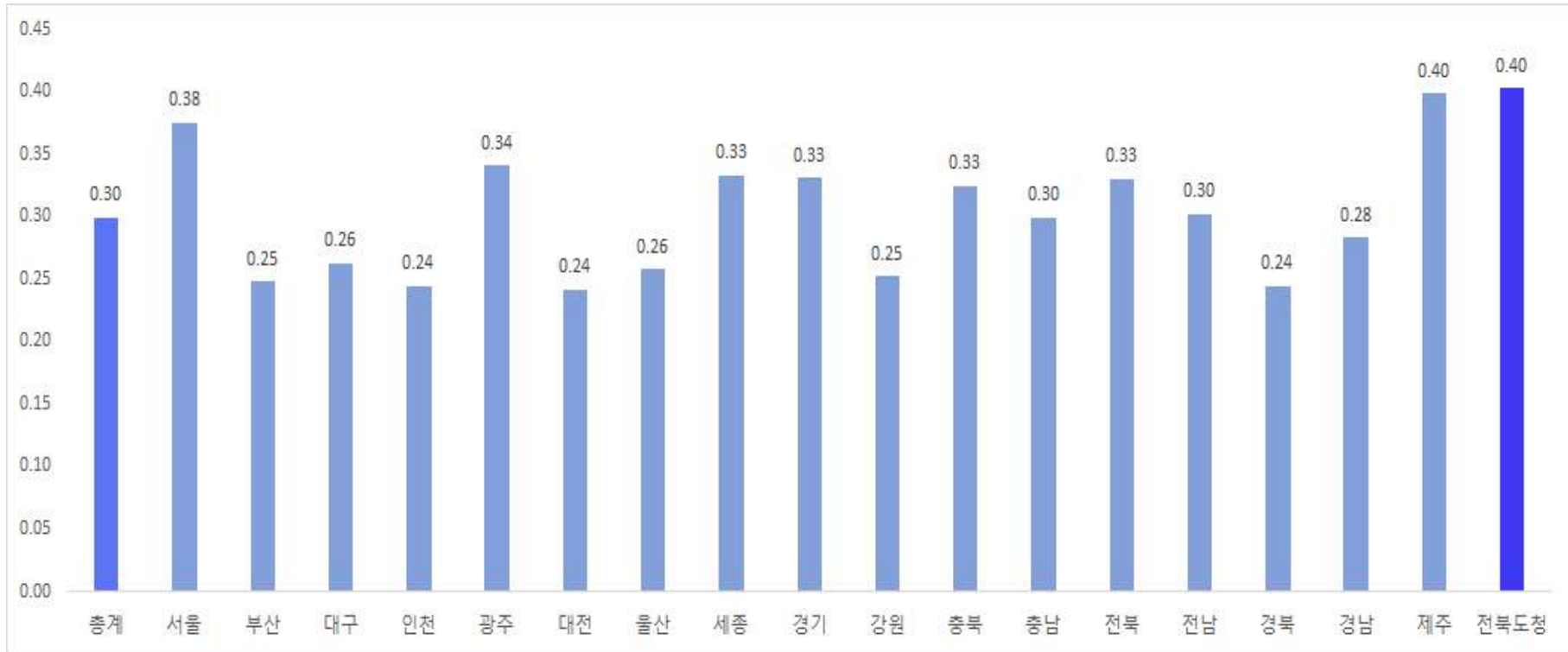
3. 지방자치단체별 위원회 수 대비 설치근거 강행규범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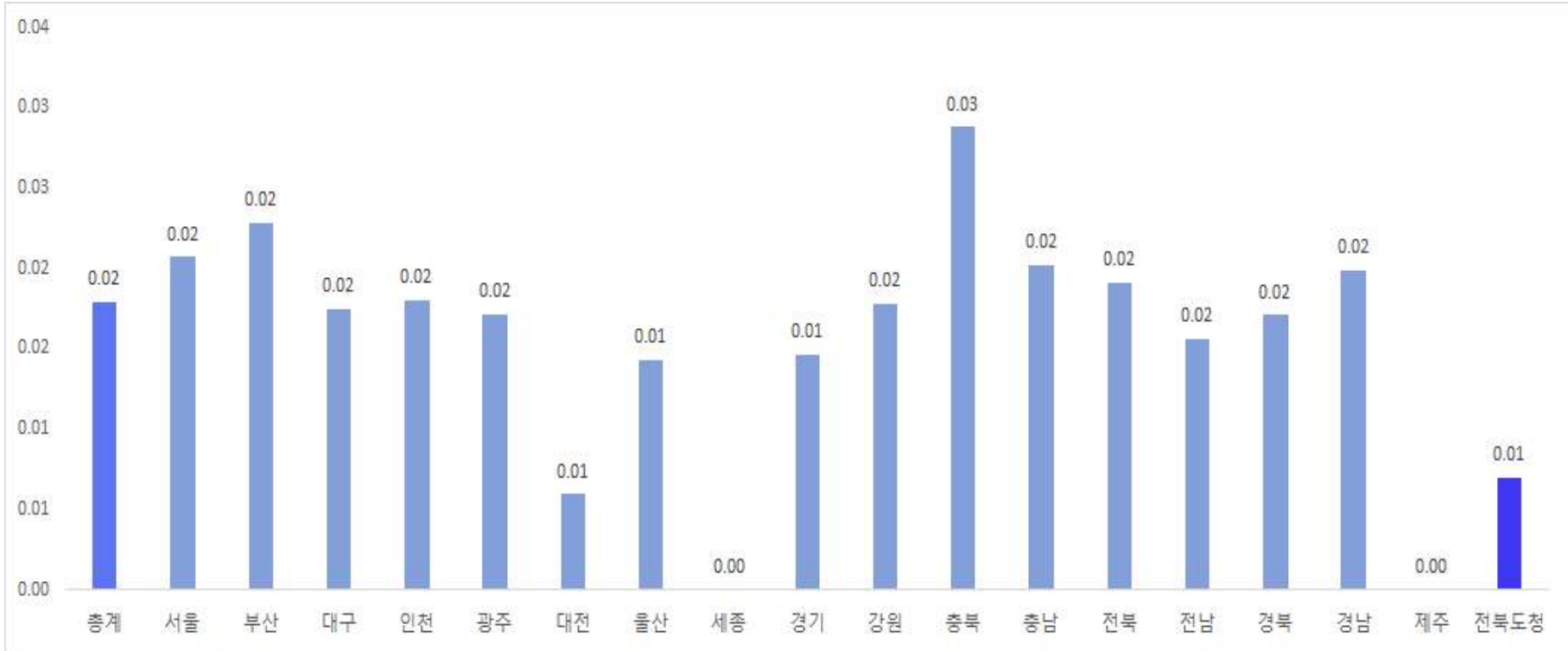
4. 지방자치단체별 위원회 수 대비 설치근거 임의규범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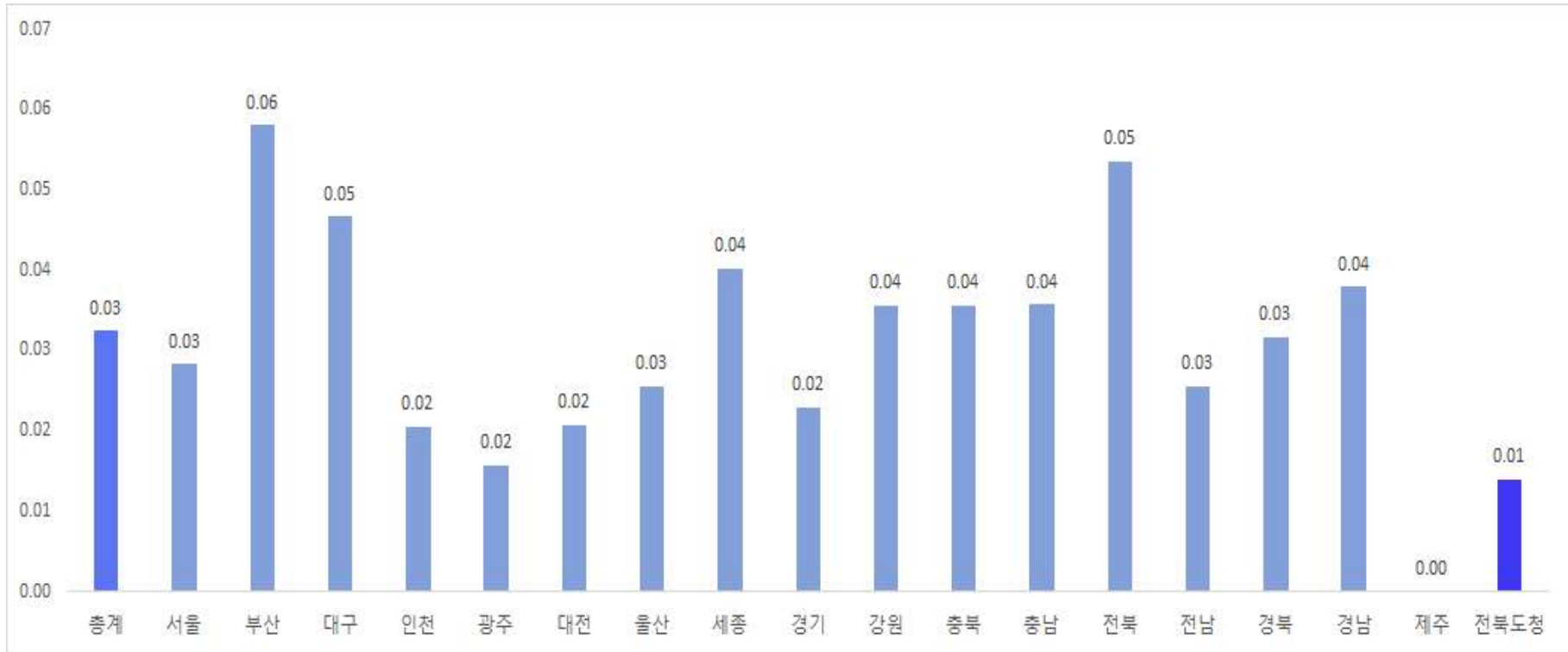
5. 지방자치단체별 위원회 수 대비 설치근거 조례 평균



6. 지방자치단체별 위원회 수 대비 설치근거 규칙 평균



7. 지방자치단체별 위원회 수 대비 설치근거 기타 평균



제5장 전라북도 위원회

제1절 2019년도 전라북도 위원회 운영평가91
제2절 전라북도 위원회 협치관련 FGI118
제3절 전라북도 의회의 위원회 협치 관련 보완 사항129

제1절 2019년도 전라북도 위원회 운영평가

1. 추진 근거 : 각종 위원회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2. 위원회 현황(2019년 말 기준)²⁶⁾

- 위원회 개수(2019년 말) : 141개
- 위원 수(2019년 말) : 2572명
- 평균 회의 개최 횟수(2019년 말) : 3.55회
- 예산집행(2019년 말) : 809,200천원

3. 위원회 운영 현황

□ 기능별구분

총계	심의의결	자문	합의제
141	113	27	1
	80%	19%	1%

□ 설치근거

총계	법령	조례	규칙	기타
141	80	58	1	2
	57%	41%	1%	1%

□ 위촉분야(2019년 기준)²⁷⁾

총계	구분	공공 기관	공무원	의회	학교	기업	단체	전문가	기타
2,572	명	315	523	84	803	114	460	200	73
	%	12.2%	20.3%	3.3%	31.2%	4.4%	17.9%	7.8%	2.8%

26)위원회 현황 등에 대해서는 분류 등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2019년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분석함; 실국연계 및 도의원 참여 연계를 위한 구분은 2020년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분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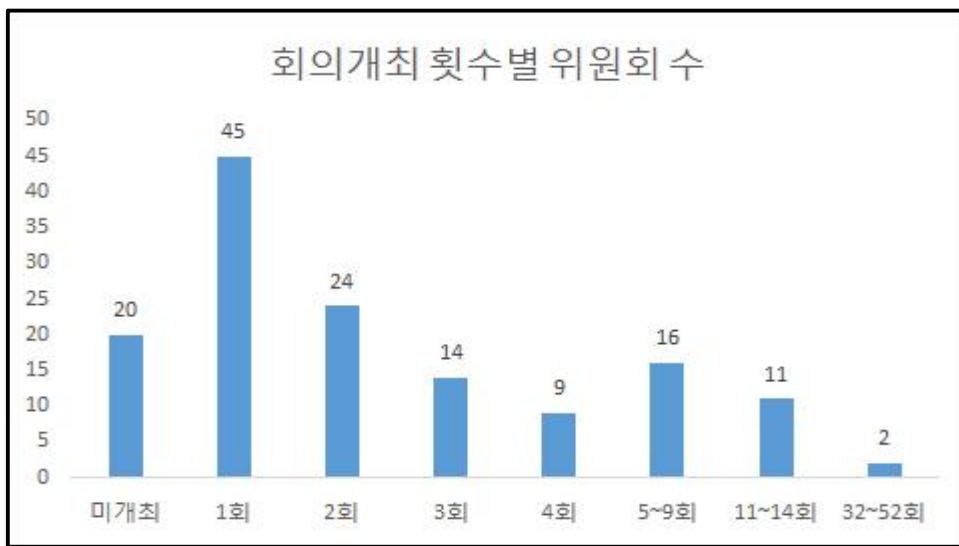
27)학교의 경우 대부분이 대학에 국한되어 있고, 초중고교관계자는 극소수에 불과함; 일부이기는 하지만 대학 관계자의 경우에 중복 위촉되는 경우가 많아 특정 전문직종에 너무 많이 의존하는 한계를 보임; 학교로 구분된 803명 중에 초등학교 1, 중학교 2, 고등학교 2로 초중고교는 총5명에 불과함

□ 소수계층 참여현황

총 위촉위원수	여성 위촉위원	장애인 위촉위원 ²⁸⁾
1,964	755	-

□ 회의

총 회의개최 횟수	서면회의	대면회의	평균 개최 횟수
500	125	375	3.55



□ 회의개최 횟수별 위원회 수

	미개최	1회	2회	3회	4회	5~9회	11~14회	32~52회
141	20	45	24	14	9	16	11	2
	12.06%	32%	17%	10%	6%	11%	8%	1%

4. 운영실태 분석

- 전라북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에 따라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구하거나, 다양한 이해관계

28) 여성 위촉위원에 대한 자료는 확인 가능하나 장애인 및 기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내용은 확인이 불가하였음; 추후 위원회 구성 자료에는 이와 같은 내용을 보강할 필요가 있음

의 조정 등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음. 2019년 말 기준,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는 141개로 전년대비 증가율은 102%였음

□ 연도별 현황²⁹⁾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위원회수	101	131	131	138	141	146
증감	-	+30	-	+7	+3	+5

○ 2020년도 신설 위원회 : 5개

○ 20년도 한 해 동안 증가한 위원회는 5개, 2015년도부터 2020년에 이르기까지 위원회 수의 지속적인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위원

○ 위원회 참여 인사의 다양화로 2019년 여성 위촉위원은 38.44%(755명)로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 법정기준에는 미달하였음(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

□ 회의

○ 2019년 전라북도 141개 위원회가 한 해 동안 개최한 회의 수는 총 500회로, 위원회당 평균 개최 수는 3.55회로 나타남. 전라북도 위원회의 53.90%(76개)는 연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연 11회 이상부터 최대 52회까지 회의를 개최하는 위원회도 9.22%(13개)에 달함.

○ 연 1회 개최한 위원회는 45개(31.91%)로 가장 많았으며, 미개최 위원회 20개(14.18%) 중 법령상 위원회 11개, 조례상 위원회가 8개, 규칙상 위원회가 1개였음;

29) 전라북도청 홈페이지-정보공개-위원회 위원 명단 자료를 토대로 위원회 수를 집계함

- 연도별 개최 현황으로 구분하면 최근 3년간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부조리신고보상심의위원회」, 「재해복구사업사전심의위원회」, 「저수지 댐 안전관리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등 7개였으며, 2년 연속 미개최한 위원회는 2017~2018년의 경우 8개, 2018~2019년의 경우 10개였음.

□ 미개최 위원회: 20개(법령상 11, 조례상 8, 규칙상 1)_2019년 기준

설치업무	위원회명	설치목적	소관부서
법령	재해복구사업사전심의위원회	재해복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지도·점검·관리	자연재난과
	저수지 댐 안전관리위원회	저수지 및 댐 안전관리	자연재난과
	안전관리 민관협력 위원회	재난안전 민관협력 주요정책 및 활동에 관한 협의·조정	안전정책관
	도립공원위원회	자연공원의 지정·해제 및 구역 변경, 공원기본계획 수립, 공원계획의 결정 및 변경	자연생태과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산업단지에 관한 사항 심의	지역정책과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지역정책과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집합건물과 관련된 분쟁을 심의·조정	주택건축과
	도로명주소위원회	도로명주소 사용 촉진	토지정보과
	지방지적위원회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지적측량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을 심의	토지정보과
	물류단지계획심위원회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절차	공항하천과
	혁신도시발전위원회	신도시의 효율적 관리, 지역발전과 혁신여건 조성 지원	혁신성장정책과
조례	부조리신고보상심의위원회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 대한 신변보호, 보상금 지급에 대한 사항을 의결	감사관
	갈등조정자문위원회	공공정책 수립, 추진에 발생하는 갈등예방과 갈등조정, 해결에 관한 역할·책무, 절차 규정	폐지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	마을만들기 관련 정책·사업 심의	폐지
	도립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	미술관의 효율적 운영·관리	도립미술관
	문학관운영위원회	문학관의 효율적인 운영	문화예술과
	공공구매기관 협의회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	기업지원과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심의위원회	로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단지의 분양과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	신재생에너지과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을 통해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에 기여	폐지
규칙	민원조정위원회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 민원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조정 혹은 종결처리	자치행정과

□ 도의회/도의원 참여를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 조례 현황

[인권위원회]

제15조(위원회의 구성)

1. 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제16조(평가결과 제출) 도지사는 매년 상반기 중 전년도에 시행한 용역사업 추진상황 및 최근 2년간의 용역사업 사후관리 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위원회에 보고 후 전라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동부권발전위원회]

제9조(구성)

1. 동부권 6개 시군을 지역구로 하는 도의원

[정보화위원회]

제6조(정보화위원회)

1. 전라북도의회 의원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제12조(민간위탁 심의위원회)

- ③ 심의위원회는 전라북도 공무원, 도의회에서 추천한 자 및 당해 분야

의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이 경우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5. 8. 7., 개정 2020. 5. 29.>

[자치분권추진협의회]

제9조(협의회의 구성·운영)

2. 전라북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전라북도의회 의원

[갈등조정자문위원회]

제9조(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2. 전라북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원 <신설 2015. 7. 3>

[인사위원회]

제7조(인사위원회의 설치)

-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개정 2012. 3. 21.>

1.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3. 지방의회의원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

제6조(전라북도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구성 등)

3. 그 밖에 도의회가 추천한 사람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위원회]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2. 전라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농산물유통혁신위원회]

제4조(위원회의 구성)

3. 전라북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1명

[마을만들기운영위원회]

제15조(위원회의 구성 등) 2. 위촉직 위원 : 도의회 의원, 학계, 시민단체,

마을만들기 관련 공무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토종농작물 운영 민관정책협의회]

제4조(위원회의 구성)

3. 전라북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1명

[마을공동체미디어위원회]

제8조(위원회 구성 등)

2. 위촉직 : 도의회 의원, 관련 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또는 유관기관 관계자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도립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

제19조(구성)

2. 전라북도의회 관련 소관위원회 위원 중 1명 <개정 2011. 11. 11>

[도립미술관작품수집심의위원회]

제19조(구성)

2. 전라북도의회 관련 소관위원회 위원 중 1명 <개정 2011. 11. 11>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제4조(구성)

② 위원장은 도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며, 위원은 문화체육관광국장·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장과 전라북도의회의원 1명을 포함하여 문화예술에 조예가 깊은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단,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9>

[세계유산위원회]

제7조(위원회 구성)

4. 전라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어린이예술단운영위원회]

제5조(운영위원회)

③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도의회의원, 행정전문가, 대학

교수, 전문 연주인, 해당 분야 전문가 등으로 관련 분야에 식견과 조예를 갖춘 덕망있는 권위자 중에서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11. 11. 11>

[전라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
제8조(위원회의 구성)

2. 전라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관광사업투자촉진위원회]

제21조(관광위원회 구성 등)

1. 전라북도의회 의원

[문화콘텐츠산업발전위원회]

제9조(구성)

1. 전라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향토음식심의회]

제4조(심의회 구성)

1. 도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심의위원회]

제5조(구성)

5.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3명 이내)

[성평등위원회]

제8조(구성)

2. 전라북도의회 도의원

[지역아동센터위원회]

제8조(위원회의 구성)

4. 전라북도의회 의원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제7조(위원회의 구성)

다. 전라북도의회 의원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제12조(구성)

2.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 ④ 위원은 전라북도의회 의원 한 사람을 포함한 중소기업지원과 관련이 있는 기관·경제단체의 장 또는 임직원 및 대학교수 등 관계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7. 9. 22>

[전라북도지사인증상품 선정관리위원회]

제4조(구성)

3. 전라북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수출 및 투자유공업체 선정심사위원회]

제6조(심사위원회)

- ③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도의원 1인과 관계국·과장을 포함한 무역관련 유관기관장 등으로 하며, 관련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관련 공무원 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01. 9. 21, 2007. 2. 2, 2010. 7. 30, 2014. 10. 22>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제7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 설치 등)

1. 전라북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원

[중소기업수출지원협의회]

제7조(수출지원협의회 구성)

1. 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도의원

[공공구매기관협의회]

제7조(위원회 구성)

2. 전라북도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경제민주화위원회]

제7조(위원회 구성)

2. 전라북도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청년정책위원회]

1. 전라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금융산업발전위원회]

제9조(위원회 구성)

1. 전라북도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심의위원회]

제7조(구성 등)

4. 전라북도의회 의원

[뿌리산업발전위원회]

제8조(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2. 전라북도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탄소산업발전위원회]

제8조(탄소산업발전위원회 구성)

2. 전라북도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제10조(구성 등)

3. 전라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제8조(협의회 설치 및 운영)

1. 전라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표1> 실국별 도의회 연계 위원회의 위원 구성 1 30)

국	실과사업소	위원회	도의회 추천자	도의원
인권담당관	인권담당관	인권위원회	도의회 추천을 받은 사람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동부권발전위원회		동부권 6개 시군을 지역구로 하는 도의원
		민간위탁심의위원회	도의회에서 추천한 자	
		자치분권추진협의회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전라북도의회 의원
	정보화총괄과	정보화위원회		전라북도의회 의원
	대도약기획단	인구정책민관위원회		전라북도의회 의원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	도의회가 추천한 사람	
농축수산식품국	농산유통과	농산물유통혁신위원회		전라북도의회 에서 추천한 도의원 1명
		토종농작물 운영 민관정책협의회		전라북도의회 에서 추천한 도의원 1명
	농촌활력과	마을공동체미디어위원회		도의회 의원
문화체육관광국	도립미술관	도립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		전라북도의회 관련 소관위원회 위원 중 1명
		도립미술관작품수집심의위원회		전라북도의회 관련 소관위원회 위원 중 1명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전라북도의회 의원 1명
	문화유산과	세계유산위원회	전라북도의회 에서 추천하는 자	
	문화예술과	어린이예술단운영위원회		도의회의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	전라북도의회 에서 추천하는 사람	
		문화콘텐츠산업발전위원회		전라북도의회 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관광총괄과	관광사업투자촉진위원회		전라북도의회 의원
복지여성보건국	건강안전과	향토음식심의회		도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사회복지과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심의위원회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3명 이내)	
	여성청소년과	성평등위원회		전라북도의회 도의원
		지역아동센터위원회		전라북도의회 의원

국	실과사업소	위원회	도의회 추천자	도의원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자리경제본부	기업지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전라북도의회 의원 한 사람
		전라북도지사인증상품 선정관리위원회		전라북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수출 및 투자유공업체 선정심사위원회		도의원 1인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전라북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원
		중소기업수출지원협의회		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도의원
		공공구매기관협의회		전라북도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일자리경제정책관	경제민주화위원회		전라북도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청년정책위원회	전라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투자금융과	금융산업발전위원회		전라북도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혁신성장산업국	신재생에너지과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심의위원회		전라북도의회 의원
	주력산업과	뿌리산업발전위원회		전라북도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탄소융복합과	탄소산업발전위원회		전라북도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대외협력국	국제협력과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전라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전라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환경녹지국	물환경관리과	지하수관리위원회	전라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건설교통국	주택건축과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전라북도의회 의원 3인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전라북도의회 의원
	지역정책과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30)실국별 해당 과단위 부서에 설치된 위원회 근거 조례에서 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촉 대상에 도의회의 추천을 명시하였거나 도의원을 명시한 사례를 토대로 작성

<표2> 실국별 도의회 연계 위원회의 위원 구성 2 31)

국	실과사업소	위원회	도의회 추천자	도의원
인권담당관	인권담당관	인권위원회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동부권발전위원회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	
		자치분권추진협의회		○
	정보화총괄과	정보화위원회		○
대도약기획단	인구정책민관위원회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	○	
농축수산식품국	농산유통과	농산물유통혁신위원회		○
		토종농작물 운영 민관정책협의회		○
	농촌활력과	마을공동체미디어위원회		○
문화체육관광국	도립미술관	도립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		●
		도립미술관작품수집심의위원회		●
		문화예술진흥위원회		○
	문화유산과	세계유산위원회	○	
	문화예술과	어린이예술단운영위원회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	○	
		문화콘텐츠산업발전위원회		○
관광총괄과	관광사업투자촉진위원회		○	
복지여성보건국	건강안전과	향토음식심의회		○
	사회복지과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심의위원회	○○○	
	여성청소년과	성평등위원회		○
		지역아동센터위원회		○
		아동학대예방위원회		○
일자리경제본부	기업지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
		전라북도지사인증상품 선정관리위원회		○
		수출 및 투자유공업체 선정심사위원회		○
		생활임금심의위원회		○
		중소기업수출지원협의회		●
		공공구매기관협의회		○
	일자리경제정책관	경제민주화위원회		○
		청년정책위원회	○	
투자금융과	금융산업발전위원회		○	
혁신성장산업국	신재생에너지과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심의위원회		○
	주력산업과	뿌리산업발전위원회		○
	탄소융복합과	탄소산업발전위원회		○
대외협력국	국제협력과	남북교류협력위원회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
환경녹지국	물환경관리과	지하수관리위원회	○	
건설교통국	주택건축과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
	지역정책과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

31) ●표시는 해당 지역구 의원 지정; ●표시는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의원) 지정

<표3> 실국별 도의회 연계 위원회의 위원 구성 3

국	실국별 의회 연계 위원회	실국별 위원회	의회연계 위원회수 ÷ 위원회수	실과사업소	위원회	
인권담당관	1	1	100.00%	인권담당관	인권위원회	
기획조정실	5	16	31.25%	정책기획관	동부권발전위원회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자치분권추진협의회	
				정보화총괄과	정보화위원회	
				대도약기획단	인구정책민관위원회	
자치행정국	1	11	9.09%	자치행정과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	
농축수산식품국	3	10	30.00%	농산유통과	농산물유통혁신위원회	
				농촌활력과	토종농작물 운영 민관정책협의회	
					마을공동체미디어위원회	
문화체육관광국	8	16	50.00%	도립미술관	도립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	
					도립미술관작품수집심의위원회	
					문화예술진흥위원회	
				문화유산과	세계유산위원회	
				문화예술과	어린이예술단운영위원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	
관광총괄과	문화콘텐츠산업발전위원회					
				관광총괄과	관광사업투자촉진위원회	
복지여성보건국	5	22	22.73%	건강안전과	향토음식심의회	
				사회복지과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심의위원회	
				여성청소년과	성평등위원회	
					지역아동센터위원회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일자리경제본부	9	17	52.94%	기업지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전라북도지사인증상품 선정관리위원회	
					수출 및 투자유공업체 선정심사위원회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중소기업수출지원협의회	
					공공구매기관협의회	
				일자리경제정책관	경제민주화위원회	
					청년정책위원회	
투자금융과	금융산업발전위원회					
	혁신성장산업국	3	7	42.86%	신재생에너지과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심의위원회
	주력산업과	뿌리산업발전위원회				
				탄소융복합과	탄소산업발전위원회	
대외협력국	2	2	100.00%	국제협력과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환경녹지국	1	7	14.29%	물환경관리과	지하수관리위원회	
건설교통국	3	23	13.04%	주택건축과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지역정책과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총위원회수는 141개임(실국연계만계산)	

<표4> 실국별 도의회 연계 위원회의 도의원 참여 현황

국	의원참여 현황	실과사업소	의원참여 현황	위원회
인권담당관	1	인권담당관	1	인권위원회
기획조정실	6	정책기획관	4	동부권발전위원회
			0	민간위탁심의위원회
			1	자치분권추진협의회
		정보화총괄과	0	정보화위원회
대도약기획단	1	인구정책민관위원회		
자치행정국	1	자치행정과	1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
농축수산식품국	1	농산유통과	0	농산물유통혁신위원회
			1	토종농작물 운영 민관정책협의회
		농촌활력과	0	마을공동체미디어위원회
문화체육관광국	6	도립미술관	1	도립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
			0	도립미술관작품수집심의위원회
			1	문화예술진흥위원회
		문화유산과	1	세계유산위원회
		문화예술과	0	어린이예술단운영위원회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
		관광총괄과	1	문화콘텐츠산업발전위원회
복지여성보건국	4	건강안전과	1	향토음식심의회
			1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심의위원회
		여성청소년과	1	성평등위원회
			1	지역아동센터위원회
			0	아동학대예방위원회
			1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일자리경제본부	6	기업지원과	0	전라북도지사인증상품 선정관리위원회
			1	수출 및 투자유공업체 선정심사위원회
			1	생활임금심의위원회
			1	중소기업수출지원협의회
			0	공공구매기관협의회
			1	경제민주화위원회
		일자리경제정책관	0	청년정책위원회
		투자금융과	1	금융산업발전위원회
		혁신성장산업국	4	신재생에너지과
주력산업과	1			뿌리산업발전위원회
탄소융복합과	1			탄소산업발전위원회
대외협력국	3	국제협력과	2	남북교류협력위원회
			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환경녹지국	1	물환경관리과	1	지하수관리위원회
건설교통국	1	주택건축과	0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0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지역정책과	1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34		34	의회연계41개중29개위원회에만의원참여

<표5> 실국별 위원회의 도의원 참여 현황³²⁾

실국	도의원 수	부서	도의원 수	위원회명(76)
감사관	4	감사관	2	공직자윤리위원회
		감사관	1	주민감사청구심의회
		감사관	1	전라북도인권위원회
인권담당관	1	인권담당관	1	전라북도인권위원회
기획조정실	9	정책기획관	4	전라북도동부권발전위원회
		정책기획관	1	지역혁신협의회
		예산과	1	전라북도용역과제심의위원회
		대도약기획단	1	전라북도 인구정책 민관위원회
		정책기획관	1	전라북도 조직관리위원회
		정책기획관	1	전라북도 자치분권추진협의회
도민안전실	2	안전정책관	1	안전관리위원회
		자연재난과	1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
자치행정국	3	자치행정과	1	전라북도평생교육협의회
		자치행정과	1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세정과	1	기부심사위원회
농축수산식품국	6	농업정책과	1	삼락농정위원회
		농식품산업과	2	전라북도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농식품산업과	1	식생활교육위원회
		농산유통과	1	토종농작물 운영 민관정책협의회
		동물방역과	1	전라북도가축방역심의회
문화체육관광국	11	문화예술과	1	문화예술진흥위원회
		문화예술과	1	문학관운영위원회
		문화예술과	1	전북박물관및미술관진흥위원회
		문화예술과	1	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회
		문화예술과	1	문화콘텐츠산업발전위원회
		관광총괄과	1	지역축제육성위원회
		관광총괄과	1	관광사업투자촉진위원회
		체육정책과	1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체육정책과	1	태권도공원민자유치위원회
		문화유산과	1	세계유산위원회
도립미술관	1	도립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		
복지여성보건국	14	사회복지과	1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복지과	1	사회복지시설 심의위원회
		여성청소년과	1	성평등위원회
		여성청소년과	1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여성청소년과	1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위원회
		여성청소년과	1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위원회
		여성청소년과	1	지역아동센터 위원회
		여성청소년과	1	전라북도성별영향평가위원회
노인복지과	1	노인복지정책위원회		

실국	도의원 수	부서	도의원 수	위원회명(76)
		장애인복지과	1	장애인복지위원회
		보건의료과	1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건강안전과	1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건강안전과	1	전라북도향토음식심의회
		건강안전과	1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건설교통국	10	지역정책과	1	전라북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지역정책과	1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지역정책과	1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
		도로교통과	1	전라북도버는지원심의위원회
		공항하천과	1	물류정책위원회
		공항하천과	1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주택건축과	1	건축경관통합위원회
		주택건축과	1	도시재생위원회
		토지정보과	1	전라북도지방지적위원회
토지정보과	1	지명위원회		
일자리경제본부	10	일자리정책관	1	전라북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일자리정책관	1	전라북도 경제민주화위원회
		투자금융과	1	전라북도 금융산업발전 위원회
		투자금융과	1	투자심의위원회
		기업지원과	1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
		기업지원과	1	전라북도수출및투자유공업체
			1	포상 선정심사위원회
		기업지원과	1	전라북도 중소기업 수출지원협의회
		기업지원과	1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업지원과	1	노사민정협의회
기업지원과	1	전라북도생활임금심의위원회		
혁신성장산업국	8	혁신성장정책과	2	혁신도시발전위원회
		혁신성장정책과	1	혁신도시성과공유지역균형발전기금
			1	운영심의위원회
		주력산업과	2	전북뿌리산업 발전위원회
		탄소융복합과	1	전라북도탄소산업발전위원회
		신재생에너지과	2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심의위원회
신재생에너지과	1	전라북도 에너지위원회		
대외협력국	3	국제협력과	1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국제협력과	1	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전북인재개발원	1	인재양성과	1	교육훈련심의위원회
환경녹지국	1	물환경관리과		지하수관리위원회
폐지	1	-		전라북도 자원봉사발전위원회
	84		84	

32) 2019년 기준 위원회 참여 도의원 수와 2020년 실국별 소관 위원회를 연계한 표

<표6> 실국별 의회 연계 위원회의 도의원 참여 현황

실국	도의원 수	실국별 의회 연계 위원회	실국별 위원회	의회연계 위원회수 / 위원회수	부서	도의원 수	위원회명(76)
감사관	4	0	0	0	감사관	2	공직자윤리위원회
					감사관	1	주민감사청구심의회
					감사관	1	전라북도인권위원회
인권담당관	1	1	1	100.00%	인권담당관	1	전라북도인권위원회
기획조정실	9	5	16	31.25%	정책기획관	4	전라북도동부권발전위원회
					정책기획관	1	지역혁신협의회
					예산과	1	전라북도용역과제심의위원회
					대도약기획단	1	전라북도 인구정책 민관위원회
					정책기획관	1	전라북도 조직관리위원회
					정책기획관	1	전라북도 자치분권추진협의회
도민안전실	2	0	0	0	안전정책관	1	안전관리위원회
					자연재난과	1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
자치행정국	3	1	11	9.09%	자치행정과	1	전라북도평생교육협의회
					자치행정과	1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세정과	1	기부심사위원회
농축수산식품국	6	3	10	30.00%	농업정책과	1	삼락농정위원회
					농식품산업과	2	전라북도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농식품산업과	1	식생활교육위원회
					농산유통과	1	전북 토종농작물 운영 민관정책협의회
					동물방역과	1	전라북도가축방역심의위원회
문화체육관광국	11	8	16	50.00%	문화예술과	1	문화예술진흥위원회
					문화예술과	1	문학관운영위원회
					문화예술과	1	전북 박물관및미술관진흥위원회
					문화예술과	1	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회
					문화예술과	1	문화콘텐츠산업발전위원회
					관광총괄과	1	지역축제육성위원회
					관광총괄과	1	관광사업투자촉진위원회
					체육정책과	1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실국	도의원 수	실국별 의연계 위원회	실국별 위원회	의회연계 위원회수 ÷ 위원회수	부서	도의원 수	위원회명(76)
					체육정책과	1	태권도공원민자유치위 원회
					문화유산과	1	세계유산위원회
					도립미술관	1	도립미술관운영자문위 원회
복지여성보 건국	14	5	22	22.73%	사회복지과	1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복지과	1	사회복지시설 기능보 강사업 심의위원회
					여성청소년과	1	성평등위원회
					여성청소년과	1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여성청소년과	1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위원회
					여성청소년과	1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위원회
					여성청소년과	1	지역아동센터 위원회
					여성청소년과	1	전라북도 성별영향평가 위원회
					노인복지과	1	노인복지정책위원회
					장애인복지과	1	장애인복지위원회
					보건의료과	1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 회
					건강안전과	1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 회
					건강안전과	1	전라북도향토음식심의 회
건강안전과	1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건설교통국	10	3	23	13.04%	지역정책과	1	전라북도건설기술심의 위원회
					지역정책과	1	전라북도 도시계획위 원회
					지역정책과	1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
					도로교통과	1	전라북도버스지원심의 위원회
					공항하천과	1	물류정책위원회
					공항하천과	1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주택건축과	1	건축경관통합위원회
					주택건축과	1	도시재생위원회
					토지정보과	1	전라북도지방지적위원 회
토지정보과	1	지명위원회					
일자리경제 본부	10	9	17	52.94%	일자리경제정 책관	1	전라북도 소비자정책 위원회
					일자리경제정 책관	1	전라북도 경제민주화 위원회

실국	도의원 수	실국별 의회연계 위원회	실국별 위원회	의회연계 위원회수 ÷ 위원회수	부서	도의원 수	위원회명(76)
					투자금융과	1	전라북도 금융산업발전 위원회
					투자금융과	1	투자심의위원회
					기업지원과	1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
					기업지원과	1	전라북도 수출및투자유공업체
						1	포상 선정심사위원회
					기업지원과	1	전라북도 중소기업수출지원협의회
					기업지원과	1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업지원과	1	노사민정협의회
기업지원과	1	전라북도생활임금심의위원회					
혁신성장산업국	8	3	7	42.86%	혁신성장정책과	2	혁신도시발전위원회
					혁신성장정책과	1	혁신도시성과공유지역균형발전기금
						1	운용심의위원회
					주력산업과	2	전북뿌리산업 발전위원회
					탄소융복합과	1	전라북도 탄소산업발전위원회
					신재생에너지과	2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심의위원회
신재생에너지과	1	전라북도 에너지위원회					
대외협력국	3	2	2	100.00%	국제협력과	1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국제협력과	1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전라북도 인재개발원	1	0	0	0	인재양성과	1	교육훈련심의위원회
환경녹지국	1	1	7	14.29%	물환경관리과	1	지하수관리위원회
폐지	1	-	-	-		1	전라북도 자원봉사발전위원회
		84³³⁾	41	132		31.06%	84³⁴⁾

33)1개 이상의 위원회 중복 참여

34)1개 이상의 위원회 중복 참여

〈표7〉□ 실국 부서별 도의원 소속 위원회 현황
(도의원 소속 위원회의 경우 2019년 기준, 담당부서의 경우 2020년 기준)

위원회명(76) ³⁵⁾	실국	부서	도의원 수
공직자윤리위원회	감사관	감사관	2
주민감사청구심의회	감사관	감사관	1
전라북도인권위원회	감사관	감사관	1
전라북도인권위원회	인권담당관	인권담당관	1
전라북도동부권발전위원회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4
지역혁신협의회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1
전라북도용역과제심의위원회	기획조정실	예산과	1
안전관리위원회	도민안전실	안전정책관	1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	도민안전실	자연재난과	1
전라북도평생교육협의회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1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1
기부심사위원회	자치행정국	세정과	1
삼락농정위원회	농축수산식품국	농업정책과	1
전라북도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농축수산식품국	농식품산업과	2
식생활교육위원회	농축수산식품국	농식품산업과	1
전북 토종농작물 운영 민관정책협의회	농축수산식품국	농산유통과	1
전라북도가축방역심의회	농축수산식품국	동물방역과	1
문화예술진흥위원회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	1
문학관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	1
전북박물관및미술관진흥위원회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	1
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회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	1
문화콘텐츠산업발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	1
지역축제육성위원회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총괄과	1
관광사업투자촉진위원회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총괄과	1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정책과	1
태권도공원민자유치위원회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정책과	1
세계유산위원회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1
도립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	문화체육관광국	도립미술관	1
사회보장위원회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1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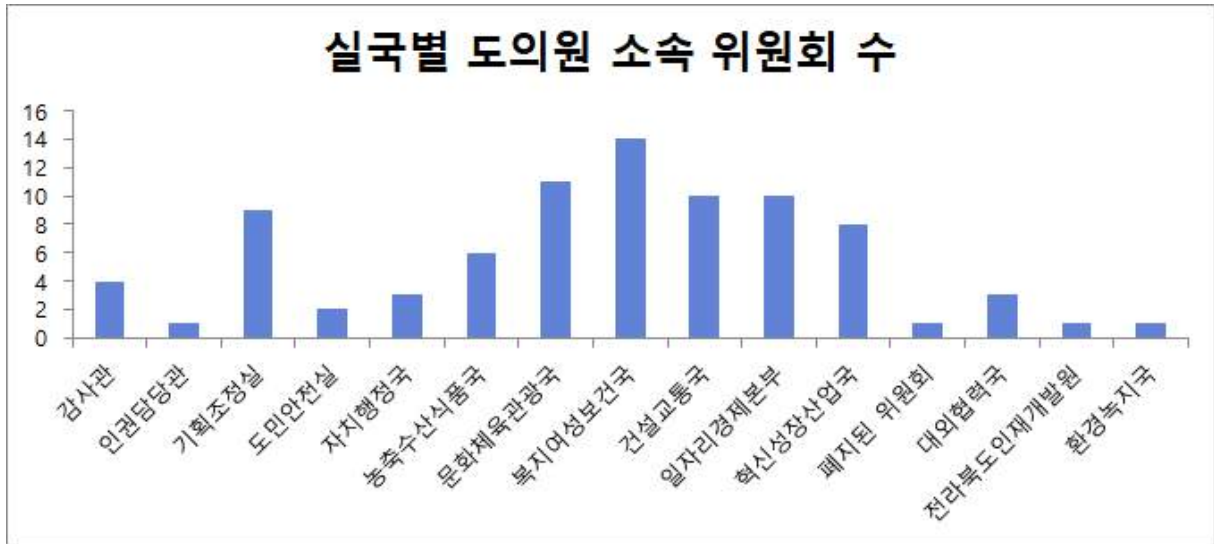
위원회명(76) ³⁵⁾	실국	부서	도의원 수
심의위원회			
성평등위원회	복지여성보건국	여성청소년과	1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복지여성보건국	여성청소년과	1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위원회	복지여성보건국	여성청소년과	1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위원회	복지여성보건국	여성청소년과	1
지역아동센터 위원회	복지여성보건국	여성청소년과	1
전라북도 성별영향평가위원회	복지여성보건국	여성청소년과	1
노인복지정책위원회	복지여성보건국	노인복지과	1
장애인복지위원회	복지여성보건국	장애인복지과	1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복지여성보건국	보건의료과	1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복지여성보건국	건강안전과	1
전라북도향토음식심의회	복지여성보건국	건강안전과	1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복지여성보건국	건강안전과	1
전라북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	건설교통국	지역정책과	1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건설교통국	지역정책과	1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	건설교통국	지역정책과	1
전라북도버스지원심의위원회	건설교통국	도로교통과	1
물류정책위원회	건설교통국	공항하천과	1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건설교통국	공항하천과	1
건축경관통합위원회	건설교통국	주택건축과	1
도시재생위원회	건설교통국	주택건축과	1
전라북도지방지적위원회	건설교통국	토지정보과	1
지명위원회	건설교통국	토지정보과	1
전라북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일자리경제본부	일자리경제정책관	1
전라북도 경제민주화위원회	일자리경제본부	일자리경제정책관	1
전라북도 금융산업발전 위원회	일자리경제본부	투자금융과	1
투자심의위원회	일자리경제본부	투자금융과	1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	일자리경제본부	기업지원과	1
전라북도 수출 및 투자유공업체 포상 선정심사위원회	일자리경제본부	기업지원과	1
전라북도 중소기업 수출지원협의회	일자리경제본부	기업지원과	1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일자리경제본부	기업지원과	1

위원회명(76) ³⁵⁾	실국	부서	도의원 수
노사민정협의회	일자리경제본부	기업지원과	1
전라북도생활임금심의위원회	일자리경제본부	기업지원과	1
혁신도시발전위원회	혁신성장산업국	혁신성장정책과	1
혁신도시성과공유지역균형발전기금 운영심의위원회	혁신성장산업국	혁신성장정책과	2
전북뿌리산업 발전위원회	혁신성장산업국	주력산업과	1
전라북도탄소산업발전위원회	혁신성장산업국	탄소융복합과	1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심의위원회	혁신성장산업국	신재생에너지과	2
전라북도 에너지위원회	혁신성장산업국	신재생에너지과	1
전라북도 자원봉사발전위원회	폐지	-	1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대외협력국	국제협력과	2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대외협력국	국제협력과	1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전라북도인재개발 원	인재양성과	1
전라북도 조직관리위원회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1
전라북도 인구정책 민관위원회	기획조정실	대도약기획단	1
지하수관리위원회	환경녹지국	물환경관리과	1
전라북도 자치분권추진협의회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1
합계			84³⁶⁾

35)76개 위원회는 조례 등에 도의회 추천 혹은 도의원 참여 규정이 있는 위원회 41개와 규정이 없는 35개를 포함한 결과임

36)여기서의 84명은 조례 등에 도의회 추천 혹은 도의원 참여 규정이 있는 위원회 41개 중 29개에 참여하고 있는 도의원 34명과 규정이 없는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도의원을 모두 포함하였으며, 일부 도의원은 2개 이상의 위원회 참여로 중복하여 계산한 수치임

□ 실국별 도의원 소속 위원회 수(2020년 기준)



〈표8〉 □ 실국/부서별 위원장 소속(2020년 기준)

실국별 위원회 수		부서별 위원회 수		위원장 소속			
실국명	개	부서명	개	내부 ³⁷⁾	외부	내부 비율	외부 비율
감사관	3	감사관	3	2	1	67%	33%
인권담당관	1	인권담당관	1	0	1	0%	100%
기획조정실	16	정책기획관	5	2	3	40%	60%
		예산과	6	4	2	67%	33%
		정보화총괄과	1	1	0	100%	0%
		법무행정과	3	2	1	67%	33%
		대도약기획단	1	1	0	100%	0%
도민안전실	8	안전정책관	2	1	1	50%	50%
		사회재난과	1	0	1	0%	100%
		자연재난과	5	0	5	0%	100%
자치행정국	11	총무과	3	0	3	0%	100%
		자치행정과	4	3	1	75%	25%
		세정과	2	1	1	50%	50%
		회계과	2	1	1	50%	50%
농축수산물 식품국	10	농업정책과	2	1	1	50%	50%
		농촌활력과	2	1	1	50%	50%
		농산유통과	3	3	0	100%	0%
		농식품산업과	2	1	1	50%	50%
		동물방역과	1	1	0	100%	0%
문화체육 관광국	16	문화예술과	8	4	4	50%	50%
		관광총괄과	2	2	0	100%	0%
		체육정책과	2	2	0	100%	0%
		문화유산과	2	0	2	0%	100%
		도립미술관	2	0	2	0%	100%
환경녹지국	7	환경보전과	2	2	0	100%	0%
		자연생태과	3	2	1	67%	33%
		물환경관리과	1	0	1	0%	100%
		산림녹지과	1	1	0	100%	0%

복지여성 보건국	22	사회복지과	3	1	2	33%	67%
		여성청소년과	10	10	0	100%	0%
		노인복지과	1	1	0	100%	0%
		장애인복지과	1	1	0	100%	0%
		보건의료과	3	3	0	100%	0%
		건강안전과	4	2	2	50%	50%
건설교통국	23	지역정책과	8	6	2	75%	25%
		도로교통과	3	0	3	0%	100%
		공항하천과	3	3	0	100%	0%
		주택건축과	5	3	2	60%	40%
		토지정보과	4	4	0	100%	0%
소방본부	1	구조구급과	1	1	0	100%	0%
일자리 경제본부	17	일자리경제정책 관	5	3	2	60%	40%
		투자금융과	3	3	0	100%	0%
		기업지원과	8	7	1	88%	13%
		사회적경제과	1	1	0	100%	0%
혁신성장 산업국	7	혁신성장정책과	3	3	0	100%	0%
		주력산업과	1	1	0	100%	0%
		탄소융복합과	1	1	0	100%	0%
		신재생에너지과	2	2	0	100%	0%
대외협력국	2	국제협력과	2	2	0	100%	0%
농업기술원	1	작물식품과	1	1	0	100%	0%
전라북도인 재개발원	1	인재양성과	1	1	0	100%	0%
평균	9.13	평균	2.86	1.92	0.94	69%	31%
최대	23	최대	10.00	10.00	5.00	100%	100%
최소	1	최소	1.00	0.00	0.00	0%	0%

37) 도지사, 행정부지사 및 실국장 등의 부서장을 포함하는 공무원을 의미함

〈표9〉 □ 실국별 위원장 내/외부 비율(2020년 기준)

실국명	실국별 위원회수			위원장 소속	
	위원회수	내부 비율	외부 비율	내부	외부
감사관	3	67%	33%	2	1
인권담당관	1	0%	100%	0	1
기획조정실	16	63%	37%	10	6
도민안전실	8	13%	87%	1	7
자치행정국	11	45%	55%	5	6
농축수산식품국	10	70%	30%	7	3
문화체육관광국	16	50%	50%	8	8
환경녹지국	7	71%	29%	5	2
복지여성보건국	22	82%	18%	18	4
건설교통국	23	70%	30%	16	7
소방본부	1	100%	0%	1	0
일자리경제본부	17	82%	18%	14	3
혁신성장산업국	7	100%	0%	7	0
대외협력국	2	100%	0%	2	0
농업기술원	1	100%	0%	1	0
전라북도인재개발원	1	100%	0%	1	0
평균	9.13	70%	30%	5.25	3.00
최대	23	0%	0%	18	8
최소	1	100%	100%	0	0

제2절 전라북도 위원회 협치 관련 FGI

1. 조사 개요

전문가집단 대상

구분	조사 설계
조사대상	전라북도 언론인/시민단체/대학교수 집단
표본설계	- 언론인 1명 - 전문가(대학교수) 2명 - 시민단체 1명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FGI(Focus Group Interview: 표적/초점집단면접)
표본추출방법	- 임의 표본 추출
조사기간	2020년 11월 20일 ~ 2018년 11월 24일
조사기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지방자치연구소)

○ 소수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전라북도 위원회 협치를 주제로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정보를 획득하고자 함

○ 집단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집단적인 면접을 통해 타인의 의견 발표에 대한 자극으로 진취적인 의견을 도출시켜 조사결과의 질을 높이고자 함

□ 응답자 선정 기준

○ 전라북도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 중 초임 위원이 아니며, 여러 위원회에 소속된 경험을 가진 위원들로 선정

○ 4명의 응답자를 선정, 각 시민단체, 언론인, 교수로 구성하였으며, 이들 중 한명은 여성위원으로 선정하여 여성위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2. 조사내용

- 현행 전라북도 위원회 운영 성과의 긍정적인 변화
 - 위원회의 양적 변화
 - 새로운 패러다임과 시대적 추세에 적합한 위원회
 - 위원회 위촉 위원의 다양성 방안
 - 위원회의 실질적인 토론 운영을 통한 내실화 노력

- 전라북도 위원회 운영 방향
 -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위원회 운영에 대한 간섭 정도
 - 기존 위원회의 기능의 전환, 영역의 확장 등 정비 방안
 - 주민참여 활성화 등 위원구성 다양성 확대 방안
 - 민간위원이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시스템 구축 방안
 - 위원회 위원들의 협치에 관한 공감 및 교육 필요성
 -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과 결과에 대한 환류

3. 조사결과

1) 전라북도 위원회 운영 성과에 관한 논의

(1) 전라북도 위원회 운영 성과 중 양적 확대에 관한 질의

□ 언론인 의견

- 위원회의 단순한 양적 증대보다도 현재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에 대한 축소와 정비가 이루어져야함. 언론에 노출되는 위원회에 대한 부정의견에 대해 확인하여 해당 위원회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 일부 법적·제도적 기능을 행하는 위원회의 경우, 사안이 발생하면 개최하는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 사안이 없을 경우에는 개최를 아예 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함.

□ 전문가 의견

- 앞서 언급한 대로 단순한 양적 확대보다는 위원회 운영에 효율성 증대와 내실화가 요구됨. 효율성과 내실화 증대를 위한 위원회 성과평가와 같은 사후 평가관리가 필요함.
- 처음 위원에 선정된 위원의 경우, 전반적인 교육이 필요함. 도정 운영과 위원회 운영의 체계에 관한 교육 등 실재적인 교육이 요구됨. 또한, 위원회 운영의 경과에 대한 전달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원 구성에 있어 전체적인 교체보다는 순차적으로 교체하여 위원회 운영 성과에 대한 지속성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음.
- 위원회 의결이 얼마나 도정에 반영되었는지 정도를 측정하거나 의결의 반영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기록 및 점검을 통해 위원회 운영의 본질을 파악하는데 이바지 할 것임.

□ 시민단체 의견

- 위원회에 소속된 공무원의 경우,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업무의 연계성이 저하되며, 전문성이 미비해질 우려가 있음. 이를 보완할 대책이 필요함.

(2) 전라북도 위원회 운영 성과 중 새로운 패러다임과 시대적 추세에 적합한 위원회에 관한 질의

□ 언론인 의견

- 사업 선정에 관여하는 위원회(계약 및 개발관련 위원회 등이 이에 해당함)의 경우, 의원이 개입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다. 이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

□ 전문가 의견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시대적 사안에 걸맞은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이처럼 시대적 변화 추세에 맞추어 당시 사안에 맞추어 대응해야 함.

□ 시민단체 의견

- 전라북도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뉴딜관련 위원회[전북형 뉴딜 추진 위원회]처럼 미래발전상을 위한 위원회 운영이 적극 활용될 필요가 있음.
- 행정안전부에서 의원 해외 연수 담당 위원회에 한정되는 위원회의 위원장의 경우, 외부인사로 위촉할 것을 지침하였음. 이러한 상급기관에서의 지침보다는 전라북도 자체적인 규정을 두고 이행할 필요가 있음.

(3) 전라북도 위원회 운영 성과 중 위원회 위촉 위원의 다양성에 관한 질의

□ 언론인 의견

- 전직공무원이 위원장에 위촉되는 경우, 연고에 따른 의사결정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선되어야 함.

□ 전문가 의견

- 전직공무원이 위원장에 위촉되는 경우에 대해 진행 면에 있어 긍정적이라는 의견, 위원장의 권한행사보다 의결과정에서의 원활한 진행이 이루어진다.
- 다양성 확보에 따른 연임조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지만, 거버넌스 차원에 있어 공모 자체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위원의 구성에 전문가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사업의 성격을 갖는 위원회에만 치중되어 운영되는 면이 있음.
- 일반적인 시민들의 관심도가 낮아 시민대표를 구성하는 데 있어 획일적으로 같은 시민대표들만 구성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관심도 증대가 요구됨.
- 위원 선정에 추천을 통한 선정에 대해 추천이 이루어지더라도 후보자에 대한 확실한 검증절차를 통해 보완이 가능할 것임.

□ 시민단체 의견

- 위원 선정에 따른 공모 및 공고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대부분의 위원회가 추천을 통한 위원 위촉이 이루어지며 내부인사들이 접근성이 좋은 위원들로 구성함. 이에 따라 00위원회 구성에 00분야 0명, △△분야 0명 등 명확한 기준에 따른 위원 구성이 필요하며, 이러한 기준은 조례에 명시하여 법제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위원회 내 구성된 (도·시·군)공무원들이 서로 품앗이하는 경우가 있음. 예를 들어 선전, 심사를 진행하는 위원회에 자신이 아는 해당분야와 관련된 부서 공무원을 배치하여 원하는 쪽으로 심의 및 의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문제가 있음.

(4)전라북도 위원회 운영 성과 중 실질적인 토론 운영을 통한 내실화에 관한 질의

□ 언론인 의견

- 토론과정에 외부의 간섭이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위원회 심의 및 의결 과정에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가능함.

2) 전라북도 위원회 운영 방향에 관한 논의

(1)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위원회 운영에 대한 간섭 정도

전체 의견

- 개입은 하지 않으며, 도청에서 현황만 파악하여 보고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음.

(2) 주민참여 활성화 등 위원구성 다양성 확대 방안

□ 언론인 의견

- 현재, 업체 선정과 관련된 위원회에 대해 업체들이 위원명단을 알고 있어 위원들에 접근하여 선정 및 의결과정에 개입할 우려가 존재함. 이에 대한 엄격한 인력관리가 필요함.
- 이에 외부에 위원 명단을 공개하여 공개적인 운영을 통한 의사결정의 외부개입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임. 또한, 회의 진행 중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부분에 대해 회의록 내용을 일부 비공개로 할 필요가 있음.
- 주민들의 참여를 증대시키기 위해 위원 구성에 따른 공모 및 공고를 늘려야 함. 이 과정에서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사안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의 의견을 제고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함.

□ 전문가 의견

- 업체 선정과 위원회는 1회성에 그치며, 이러한 위원회의 경우에 위원 수를 증대하거나 위원 후보를 2배수 이상 증대하여 폭넓은 계층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위원구성의 다양성을 위한 공정한 위원 선정 절차가 필요하며, 외부감사가 가능한 장치(제도) 마련이 필요함.

□ 시민단체 의견

- 앞서 언급된 위원구성의 공모와 명단, 회의록 공개를 통해 지역주민들과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독려하도록 해야 함. 이러한 공개는 당연한 사항으로 처음 위원 선정 시 이를 위한 비밀서약에 사인을 하는 사람만을 위원으로 위촉해야 함.
- 다만, 사업 선정 등 의결에 따라 이해관계가 충돌될 우려가 존재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이해관계자들의 개입을 배제하도록 해야 함. 특히 가족관계 중 직접적인 이익을 취하는 경우에 위원 구성에 있어 명확한 판단과 재정비가 요구됨.

(3) 민간위원이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시스템 구축 방안

□ 언론인 의견

- 민간위원의 민간위원장 선정이 필요함. 민간위원장의 의사결정 주도를 통해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함.

□ 전문가 의견

- 평가를 진행하는 위원회의 경우에 민간이 주도해야하며, 의사결정을 진행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기능이 사안처리의 단계에 불과하여 민간이 주도하기 어렵다.
- 사전에 의견 수렴과 후보 선정 과정에 있어 현재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안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민간위원 선정에 이바지해야 함. 물론 이 과정에서 제공되는 정보에는 민감 정보는 배제하며 위촉된 위원들에게 비밀서약서를 통한 안건에 관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져야 함.

(4) 위원회 의원들의 협치에 대한 공감과 교육

□ 언론인 의견

- 도정방향성 및 정보공유를 위한 교육이 필요함. 특히 초임 위원들에게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절차와 목적성 등 교육이 필요함.

□ 전문가 의견

- 각 위원회별 우수사례 발굴을 통해 도정시스템 개선과 효율성 및 형평성 증대에 이바지하며 가치를 증대시키고 협치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임.

□ 시민단체 의견

- 이해관계가 발생하는 위원회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미나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위원회 활성화를 추구하도록 해야 함.

(5)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과 결과에 대한 환류

□ 언론인 의견

- 특정 위원회의 경우에는 관련 예산이 전무하여 재정적 지원이 필요함. 해당 소관업무로 인한 출장비, 경비, 회의비 등이 지원하지 않는 위원회가 존재함.

□ 전문가 의견

- 건수와 같이 계량화하여 측정이 가능한 사안을 심의하는 위원회와 다르게 계량화하여 측정이 어려운 위원회가 많아 비용을 지급받기 어려운 경우 많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

□ 시민단체 의견

-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제3절 전라북도 의회의 위원회 협치 관련 보완 사항

□ 보완 의견 1

- 도의원이 집행기관 위원으로 위촉되는 경우 선택이 아닌 집행기관의 추천을 통해 위원에 선정되는 경우가 있음; 이러한 경우 도의원이 자신의 분야에 적합한 위원회를 선택하여 들어갈 수 있는 방법 필요
- 도의원이 단순히 소속된 상임위원회를 입장만이 아닌 의원의 전문분야에 적합한 위원회로의 배치 필요
-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규정되어 제한되는 문제가 있는데 의원들에 대해 당해 위원회 참여나 위원회 관련 조사 등에 대한 예산지원이 이뤄질 수 없는 제약 요인을 극복하고자 의회 내부에서 의정활동비 형태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보완 의견 2

- 집행기관 위원회에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을 관례적으로 추천하는 경우 전문성이 결여될 수 있음
- 도의회에서 집행기관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 소속 상임위원회 뿐만 아니라 전체 도의회 입장에서 전문성 등을 감안한 도의장(실질적으로는 도의회) 추천이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음
- 기타 도의회와는 무관하게 집행기관에서 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협치라 하더라도 자칫 사적인 이해관계에 연루될 수 있는 인사의 위촉 배제, 해당 부서 퇴직 공무원 인사의 연속적인 위원 위촉, 1인이 수개의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함

제6장 결론

제1절 요약	...133
제2절 전북도 위원회의 의회와의 협치 현황135
제3절 전라북도 위원회 협치의 성과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137

제1절 요약

1. 협치에 대한 인식

- 협치 구축은 위원회 제도의 운영에 있어 현안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사 결정을 용이하게 하고, 다각적인 시각에서 문제점을 파악하며 해결 방안을 도출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음
- 서울시의 협치 전략은 기존 위원회 중심이 아닌 별도의 기구화를 통한 협치 행정을 추구하였다는 점, 혁신과 협치 전략이 시민단체 출신의 자치단체장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전북도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집행기관과 의회의 협치를 가능하게 하는 공론장으로서의 협치를 고려한다면 전북도의 경우에는 위원회를 통한 의회와 집행기관의 협치를 구상할 수가 있음
- 협치와 관련하여 큰 틀에서는 현행 경기도 및 서울시 등에서 나타난 정책협의나 협치의 제도화 형태를 검토할 수 있지만 낮은 수준에서는 위원회 등의 의원 참여 등의 제도화를 통한 의회와 집행기관 협치 성과 가시화가 가능할 것임
- 선행연구들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현행 전라북도 위원회 제도에 대한 법적·제도적 해결 방안을 통해 위원 구성이나 위원회 운영 및 지원체계에 대한 조항들을 신설하여 이를 의무화시켜 위원회 제도의 협치 역할을 제고하는 데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임

2. 협치 사례에 대한 평가

- 협치역량평가의 지표체계는 서울시의 시민참여예산이나 청년자율예산은 기존 전북도 등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을 확대 적용하는 수준이어서

그대로 수용할만한 대상은 아니지만 협치 형태를 공고히하는 과정 등에 대해서는 검토할만한 가치가 있음

- 경기도의 연합정치나 정책협의회는 좀 더 구체화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의 협치라는 점에서 전북도 수준에서 수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할 수 있는 여건 등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전북도의 경우 도의원의 공약이나 도지사의 공약을 검토하여 공통점이 있는 공약 등을 중심으로 관련 공약들이 집행기관 사업 등에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 위원회 사업 등과 어떻게 연계되는지에 대해 검토하는 수준의 의회·집행기관 협치를 구상하고 협치의 성과를 평가할 수가 있을 것임

3. 협치 역량에 대한 평가

- 협치역량 평가와 관련해서는 구상은 적절하지만 집행기관 전체의 틀에서 보면 집행기관의 평가체계나 성과를 관리에서의 비중은 크지 않음; 실제로 위원회 사업비 등에서도 그러한 형태를 파악할 수가 있음
- 협치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서울시의 사례는 전북도의 경우에 위원회 별로 단순하게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위원회의 구성 시기, 교체 시기, 위원의 도정 인지 수준, 회의 개최 횟수, 우수 사례의 발굴, 협력 수준 등을 검토하자면 개인정보 등을 활용한 만족도 점검, 우수사례 박람회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서울시처럼 협치만을 전담하는 부서를 통한 협치 점검이나 일률적인 협치 성과 제고 정책과는 무관하게 위원회를 운영하는 형태에서는 낮은 수준에서 전북도정에 연계되는 협치로 성과를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함
- 이를 위해 도의회와의 연계 수준을 측정하고 관련 도의회 협업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에 대해 협치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집행기관의 성과지표 중에 협력 지표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활용하여 협치 성격을 가미할 수 있을 것이지만 대상이 확대되고, 실제로 예산이 공유되지 않는 여건에서는 협치의 성과를 그대로 평가하는 대신 의회와의 협력을 토대로 예산의 성과를 제고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유용할 수가 있음
- 전북도 성과관리에서 위원회만을 대상으로 하는 성과관리 지표는 존재하지 않지만 일반적인 직무성과와 예산성과에서 부서별 협력 수준을 검토하는 단계라는 점에서 외부와의 협치 성과를 측정하는 것은 대신 지속가능한 협치 성과관리가 가능하도록 의회와의 협치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제2절 전북도 위원회의 의회와의 협치 현황

1. 집행기관 위원회에 대한 의원 참여의 협치 성격

- 전국 자치단체들의 각종 위원회는 민간과의 협치 뿐만 아니라 기관대립형적 지방정부 운영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여 의회와의 협치도 가능하게 하고 있음. 이러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사례로 살펴 본 모든 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련 조례에 포함되어 있음
- 서울특별시, 경기도,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등의 위원회 관련 조례를 각각 10개씩 점검한 결과 많은 위원회에서 해당 의회가 추천한 인사나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임명하도록 하여 의회의 참여를 통한 협치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은 집행기관 위원회 소관 의회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임명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협치 성격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음

- 집행기관 위원회에서의 의회와의 협치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배제하여 감사 관련 협치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아 의원 참여를 가능하게 하고 있는 일본 감사위원회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음

2. 집행기관 위원회에 대한 의원 참여의 협치 성격

- 전라북도의 위원회 운영 수준은 전국적인 수준과 유사함; 위원회 참여 인사의 다양화로 2019년 여성 위촉위원은 38.44%(755명)로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 법정기준에는 미달하였으며, 위원의 분포로 보면 학교, 특히 대학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전문성 측면에서는 불가피하기는 해도 가능하면 민주성 등을 고려한 위원 위촉 등의 다양화는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임
- 금번 연구 대상에 포함된 141개 전라북도 위원회 중 실국 연계 132개 위원회에서 41개의 위원회가 조례의 규정에 의해 도의회 추천 인사 혹은 도의원을 위원으로 위촉 혹은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의회와의 연계는 31.06% 수준을 보임:
 - 141개 위원회 조례에 의한 위원회의 의회 협치 반영 31.06%
- 전라북도 141개 위원회에서 실국 연계를 토대로 한 132개 위원회 중 29개의 위원회에만 도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그 중에 의원이 참여하는 위원회 수는 21.97% 수준을 보임
 - 실국 연계 132개 위원회의 의원 참여 현황 21.97%

- 전라북도 141개 위원회 중 실국과 연계된 132개 위원회 중 조례의 규정
에 의해 도의회 추천 인사 혹은 도의원을 위원으로 위촉 혹은 임명할
수 있도록 한 41개 중 29개의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도의원은 총 34
명으로 나타남; 일부 위원회에는 4명까지 참여하고 있음
- 전라북도 141개 위원회에서 조례 등에 도의회 추천 혹은 도의원 참여
규정 유무에 관계없이 총76개 위원회에 84명의 도의원이 참여하고 있어
도의원 참여 비율은 53.52% 수준을 보임
 - 전체 141개 위원회 중 76개에 의원 참여로 위원회 전체의 53.52%가 의
회 협치 반영
 - 의원 1인당 평균 1.95개의 위원회 참여 비율

제3절 전라북도 위원회 협치의 성과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1. 위원회 참여 의원에 대한 자문 의뢰 제도화

- 의회와 집행기관 관계자의 업무 협의를 토대로 위원회 관련 사업도 검
토할 수 있을 것임; 의회 직무와 연계된 사항을 집행기관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에 대해 집행기관 위원회에 참여하는 의원에게 기
피하라고 하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나 조례 등의 규정을 준수하게
되어 있음
- 그러나 현행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7조는 의원이 집행기관 위원
회 위원 자격으로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뿐 자문·고문·검토 등
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으며, 심의·의결인지 자문·검토 등인지 여부는 위
원회의 명칭이 아니라 의원이 해당 위원회 내에서 실제로 수행하는 활
동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위원회 운영을 협치
를 확장하는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집행기관 위원회에 참여하는 의원들이 사전 협의나 자문, 검토 등을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형태는 심의·의결이 아니라는 점에서 역으로 언제든지 협치 형태의 위원회 운영을 모색할 수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외적인 규제와 집행기관과 의회의 내부 협의 필요성 등을 절충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하여 위원회 협치의 성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제13조의 3(의회 협의) 주관 부서의 장은 도의회 직무와 관계가 있는 안건을 심의·의결해야 하는 경우 회의 이전에 위원회에 참여하는 의원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도록 제안함; 이에 따른 규정 신설의 취지는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음
 - ① 이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검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등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것임
 - ② 또한 전라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제12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검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등(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 하여야 한다” 는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것임
 - ③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업무편람」에서 행동강령 제7

조는 의원이 위원회 위원의 자격으로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자문·고문·검토 등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으며, 심의·의결인지 또는 자문·검토 등인지 여부는 위원회의 명칭이 아니라 의원이 해당 위원회 내에서 실제로 수행하는 활동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회의 이전에 이러한 자문을 확보하는 절차는 제도적으로 타당함

2. 의회의 위원회 참여 의원 추천 제도화

-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위촉은 도의회를 경유하여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위원 위촉 의뢰를 공식화하고 위촉 등의 의뢰시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절차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집행기관 위원회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의원 등 추천을 위한 다양한 변수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도의회 의원들이 고르게 참여하여 의회와 집행기관의 협치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함
- 현행 「**전라북도의회 기본조례**」를 개정하여 충청남도의회처럼 다음과 같이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제25조의 2(집행기관 위원회 등의 위원 추천) 의회가 의원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집행기관 위원회 등의 위원 등으로 추천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추천하고, 추천 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고 규정할 수 있도록 제안함; 이에 따른 규정 신설의 취지는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음
 - ① 이는 의회와 집행기관의 기관대립형적 지방정부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면서 협치의 정신을 살리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② 의회 운영의 투명성 증대와 함께 형평성을 기할 수 있음

3. 의회와 집행기관의 위원회 협치 성과 제고

- 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방분권 강화와 함께 기관의 다양성도 강조하는 분위기에서 의회와 집행기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협치가 낮은 수준에서 집행기관별 위원회에서 가능하다는 점에 착안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전북도의 직무성과나 예산성과에서 위원회 등의 협치 성과가 전북도(도지사)의 주요 사업과 도의회(의원)의 의정 활동이 전북도정에 기여하는 쪽으로 전개해갈 필요가 있음

부록

제1절 2019년도 전라북도 위원회 현황표143
제2절 47개 협치 조례152

제1절 2019년도 전라북도 위원회 현황표

연번	위원회명	설치근거	성격	실제설치시기	설치·운영근거법령	설치목적	담당부서	
							실국 본부등	부서명
1	공직자윤리위원회	법령	심의의결		공직자윤리법 제9조			
2	부조리신고보상심의위원회	조례	심의의결		전라북도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3	주민감사청구심의회	법령	심의의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6조			
4	인권위원회	조례	심의의결		전라북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4조			
5	규제개혁위원회	기타	심의의결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			
6	지방소청심사위원회	법령	심의의결		지방공무원법 제13조			
7	행정심판위원회	법령	심의의결		행정심판법 제6조			
8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조례	심의의결		전라북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9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법령	심의의결		지방재정법 제39조			
10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법령	심의의결		지방재정법 제37조의 2			
11	통합기금운용위원회	조례	심의의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1항			
12	동부권발전위원회	조례	심의의결		전라북도동부권발전지원에관한 조례 제8조			
13	정보화위원회	조례	자문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 9조			
14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법령	심의의결		지방재정법 제32조의3			
15	출자출연기관운영심	조례	심의의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16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조례	심의의결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2조			
17	지역혁신협의회	법령	자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18	자치분권추진협의회	조례	심의의결		전라북도지방분권촉진에 관한조례 제7조			
19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법령	자문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항			
20	재난관리기금심의위 원회	법령	심의의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75조			
21	재해복구사업사전심 의위원회	법령	심의의결		자연재해대책법 제55조			
22	안전관리위원회	법령	심의의결		재난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23	안전관리자문단	법령	자문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			
24	소하천관리위원회	법령	심의의결		소하천정비법 제26조			
25	저수지 댐 안전관리위원회	법령	심의의결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			
26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법령	자문		재난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2조의2			
27	계약심의위원회	조례	심의의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8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법령	심의의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29	기부심사위원회	법령	심의의결		지방세기본법 제147조			
30	지방세심의위원회	법령	심의의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31	기록물평가심의회	법령	심의의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32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법령	심의의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33	갈등조정자문위원회	조례	자문		전라북도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해결에 관한 조례			
34	민원조정위원회	규칙	심의의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87조			
35	인사위원회	법령	심의의결		지방공무원법 제7조			
36	평생교육협의회	법령	심의의결		평생교육법 제12조			
37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	조례	심의의결		전라북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38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위원회	조례	심의의결		전라북도공무원후생복지조례			
39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기타	심의의결		전라북도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40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법령	심의의결		학교급식법 제5조			
41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법령	심의의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			
42	농림수산물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조례	심의의결		전북 농림수산물발전기금운용조례			
43	농산물유통혁신위원회	조례	심의의결		전라북도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조례			
44	가축방역심의회	법령	심의의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조			
45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	조례	심의의결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제15조			
46	삼락농정위원회	조례	자문		전라북도삼락농정위원회설치및 운영조례 제3조			
47	식생활 교육 위원회	법령	심의의결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0조			
48	농촌융복합산업 정책협의회	조례	자문		전라북도 농촌융복합산업육성 및 지원조례 제5조			

49	토종농작물 운영 민관정책협의회	조례	심의의결		전라북도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조례			
50	마을공동체미디어위 원회	조례	심의의결		전라북도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지원조례 제7조			
51	지역축제육성위원회	법령	심의의결		관광진흥법			
52	도립미술관운영자문 위원회	조례	자문		전라북도립미술관 운영 관리조례			
53	도립미술관작품수집 심의위원회	조례	심의의결		전라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제17조			
54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조례	심의의결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55	문화재위원회	조례	심의의결		문화재보호법 제 71조			
56	세계유산위원회	조례	자문		전라북도 세계유산 보존관리및 지원에 관한 조례			
57	어린이예술단운영위 원회	조례	자문		전라북도어린이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58	문학관운영위원회	조례	심의의결		전라북도문학관설치 및 운영조례			
59	체육진흥기금운용심 의위원회	법령	심의의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60	태권도공원민자 유치위원회	법령	심의의결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6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	조례	심의의결		전라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62	관광사업투자촉진위 원회	조례	심의의결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20조			
63	건축물미술작품심의 위원회	법령	심의의결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64	문화콘텐츠산업발전 위원회	법령	자문		문화산업기본법			

65	국어진흥위원회	조례	자문		전라북도 국어문화 진흥 조례			
66	지방산지관리위원회	법령	심의의결		산지관리법률 제22조			
67	도립공원위원회	법령	심의의결		자연공원법 제9조			
68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법령	심의의결		환경분쟁 조정법			
69	환경정책위원회	법령	심의의결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			
70	지질공원육성지원위원회	법령	심의의결		자연공원법 제36조의3			
71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법령	심의의결		지방기금법 제13조			
72	향토음식심의회	조례	심의의결		전라북도 향토음식 발굴 육성 및 지원 조례 제3조			
73	노인복지정책위원회	조례	심의의결		전라북도노인복지증진을위한조례 제17조,제18조			
74	장애인복지위원회	법령	심의의결		장애인복지법 제13조			
75	응급의료위원회	법령	심의의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76	정신건강심의위원회	법령	심의의결		정신건강복지법 제53조, 제54조			
77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법령	심의의결		지역보건법 제6조			
78	사회보장위원회	법령	심의의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79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심의의결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80	보육정책위원회	법령	심의의결		영유아보육법 제6조			
81	청소년육성위원회	법령	자문		청소년기본법 제11조			
82	성평등위원회	조례	심의의결		전라북도성평등기본조례 제7조			
83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법령	심의의결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9조			
84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법령	심의의결		아동복지법 제12조제1항			

85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위원회	법령	합의제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 한법률 제3조,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 한법률 제3조			
86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위원회	조례	심의의결		전라북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지원 조례			
87	지역아동센터 위원회	조례	자문		전라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88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심사위원회	법령	심의의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류 제40조			
89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조례	자문		전라북도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90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법령	자문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91	성별영향분석평가위 원회	법령	심의의결		성별영향평가법 제13조			
92	지방건설기술심의회 위원회	법령	심의의결		건설기술진흥법 제5조			
93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법령	심의의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 보상에관한법률제53조			
94	지역개발조정위원회	법령	심의의결		지역개발지원법 제42조			
95	지방산업단지계획심 의위원회	법령	심의의결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6조			
96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위원회	조례	자문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10조			
97	하도급계약심사위원 회	법령	심의의결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98	건축경관통합위원회	법령	심의의결		건축법 제4조			
99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법령	자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52조의3			
100	도시재생위원회	법령	심의의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특별법 제8조			
101	도시계획위원회	법령	심의의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113조			
102	도로명주소위원회	법령	심의의결		도로명주소법 제22조의2			
103	지방지적위원회	법령	심의의결		공간정보의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104	지적재조사위원회	법령	심의의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105	지명위원회	법령	심의의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106	물류정책위원회	법령	심의의결		물류정책기본법 제20조			
107	지역수자원관리위원 회	법령	심의의결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108	택시감차위원회	법령	심의의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법률 제11조			
109	버스지원심의위원회	법령	심의의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110	교통영향평가심의위 원회	법령	심의의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111	물류단지계획심의위 원회	법령	심의의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2			
112	구조구급정책협의회	법령	심의의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7조			

113	중소기업육성기금운 용심의위원회	조례	심의의결		전라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제15조			
114	중소기업지원기관협 의회	법령	심의의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5	물가대책실무위원회	조례	자문		전라북도소비자기본조례제14조			
116	사회적기업육성위원 회	조례	심의의결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 제3조			
117	소비자정책위원회	법령	심의의결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20조			
118	외국인투자유치자문 위원회	조례	자문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119	투자심의위원회	조례	심의의결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120	전라북도지사인증상 품 선정관리위원회	조례	심의의결		전라북도인증상품 선정 및 운영 관리 조례			
121	수출 및 투자유공업체 선정심사위원회	조례	심의의결		전라북도 수출 및 투자유공업체 포상 조례			
122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조례	심의의결		전라북도생활임금조례			
123	중소기업수출지원협 의회	조례	심의의결		전라북도중소기업 수출진흥조례			
124	공공구매기관 협의회	조례	심의의결		전라북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125	경제민주화위원회	조례	자문		전라북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126	청년정책위원회	조례	심의의결		전라북도 청년기본조례			
127	노사민정협의회	법령	심의의결		노사관계발전지원에 관한 법률			
128	금융산업 발전위원회	조례	심의의결		전라북도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129	부안신재생에너지단 지심의위원회	조례	심의의결		전라북도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분양 및 운영 조례 제5조			

130	과학기술위원회	조례	심의의결		전라북도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조례 제4조			
131	뿌리산업발전위원회	조례	자문		전북뿌리산업육성조례			
132	에너지위원회	법령	자문		에너지법			
133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법령	심의의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134	탄소산업발전위원회	조례	심의의결		전라북도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135	혁신도시발전위원회	법령	심의의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136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조례	심의의결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관한 조례 제8조			
137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조례	자문		전라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5조			
138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조례	자문		전라북도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 족지원지원조례 제8조			
139	농업산학협동심의위 원회	법령	심의의결		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정			
140	교육훈련심의위원회	법령	심의의결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9조			
141	조직관리위원회	법령	자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			

제2절 47개 협치 조례

순번	법령명	지역명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부서
1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경기도	일부개정	조례	제6012호	2019. 1. 7.	2019. 1. 7.	
2	광명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광명시	제정	조례	제2424호	2018. 12. 21.	2018. 12. 21.	자치분권과
3	광명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	광명시	제정	규칙	제1199호	2019. 2. 26.	2019. 2. 26.	자치분권과
4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협치 활성화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제정	조례	제5164호	2019. 3. 1.	2019. 3. 1.	시민참여담당관
5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 조례	광주광역시	전부개정	조례	제5545호	2020. 9. 28.	2020. 9. 28.	
6	군포시 협치 활성화를 위한 100인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군포시	제정	조례	제1709호	2019. 7. 9.	2019. 7. 9.	정책감사실
7	군포시 협치 활성화를 위한 100인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군포시	제정	규칙	제898호	2020. 4. 13.	2020. 4. 13.	정책감사실
8	부산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	부산광역시	제정	조례	제5931호	2019. 7. 10.	2019. 7. 10.	
9	서울특별시 강동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강동구	일부개정	조례	제1484호	2020. 4. 1.	2020. 4. 1.	자치안전과
10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강북구	일부개정	조례	제1415호	2020. 5. 15.	2020. 5. 15.	마을협치과
11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강서구	제정	조례	제1116호	2017. 6. 7.	2017. 6. 7.	협치분권과
12	서울특별시 관악구 더불어옴관악 혁신·협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관악구	제정	조례	제1169호	2018. 10. 25.	2018. 10. 25.	기획예산과
13	서울특별시 관악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관악구	제정	조례	제1173호	2018. 10. 25.	2018. 10. 25.	민관협치과
14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광진구	제정	조례	제1037호	2019. 4. 1.	2019. 4. 1.	기획예산과 민관협치팀
15	서울특별시 구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구로구	제정	조례	제1401호	2019. 5. 2.	2019. 5. 2.	기획예산과
16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금천구	일부개정	조례	제1108호	2020. 7. 17.	2020. 7. 17.	마을자치과
17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노원구	일부개정	조례	제1461호	2020. 9. 24.	2020. 9. 24.	마을공동체과
18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도봉구	일부개정	조례	제1392호	2020. 1. 23.	2020. 1. 23.	지속가능발전과
1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동대문구	제정	조례	제1159호	2017. 4. 27.	2017. 4. 27.	자치행정과
20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동작구	제정	조례	제1374호	2018. 3. 2.	2018. 3. 2.	기획조정과
21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관협치 기본 조례	마포구	제정	조례	제1228호	2019. 7. 11.	2019. 7. 11.	마포1번가연구 단

2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서대문구	일부개정	조례	제1352호	2020. 4. 16.	2020. 5. 1.	민관협치과
23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성동구	일부개정	조례	제1318호	2019. 5. 9.	2019. 5. 9.	기획예산과
24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성북구	일부개정	조례	제1242호	2019. 4. 11.	2019. 4. 11.	자치행정과
25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송파구	제정	조례	제1503호	2019. 11. 14.	2019. 11. 14.	자치행정과
26	서울특별시 양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양천구	제정	조례	제1360호	2018. 10. 1.	2018. 10. 1.	주민협치과
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영등포구	일부개정	조례	제1348호	2019. 10. 31.	2019. 10. 31.	자치행정과
28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용산구	제정	조례	제1298호	2019. 7. 26.	2019. 7. 26.	자치행정과
29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은평구	제정	조례	제1156호	2017. 3. 16.	2017. 3. 16.	협치담당관 협치공동체팀
30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교육청간 소통과 협치를 위한 조례	서울특별시	제정	조례	제6439호	2017. 3. 23.	2017. 3. 23.	기획담당관
31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	종로구	제정	조례	제1274호	2018. 10. 5.	2018. 10. 5.	구정비전팀
32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중랑구	제정	조례	제1261호	2019. 2. 14.	2019. 2. 14.	마을협치과
33	수원시 협치 조례	수원시	제정	조례	제3853호	2019. 1. 10.	2019. 1. 10.	정책팀
34	수원시 협치 조례 시행규칙	수원시	제정	규칙	제2094호	2019. 4. 4.	2019. 4. 4.	정책팀
35	안산시 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안산시	제정	조례	제2235호	2018. 12. 27.	2018. 12. 27.	시민소통관
36	안산시 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시행규칙	안산시	제정	규칙	제제1220호 호	2019. 2. 27.	2019. 2. 27.	시민소통관
37	양구군 민관협치 활성화 지원조례	양구군	일부개정	조례	제2380호	2020. 6. 5.	2020. 6. 5.	자치행정과
38	양평군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양평군	제정	조례	제2652호	2019. 4. 17.	2019. 4. 17.	소통협력담당관
39	양평군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	양평군	제정	규칙	제1474호	2019. 7. 10.	2019. 7. 10.	소통협력담당관
40	용인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용인시	일부개정	조례	제2030호	2020. 7. 2.	2020. 7. 2.	시민소통관
41	의정부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	의정부시	제정	조례	제3004호	2020. 7. 15.	2020. 7. 15.	자치행정과
42	인천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	인천광역시	제정	조례	제6206호	2019. 7. 17.	2019. 7. 17.	
43	충청남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충청남도	일부개정	조례	제4762호	2020. 7. 10.	2020. 7. 10.	공동체정책과
44	충청북도교육청 미래교육협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제정	조례	제4398호	2020. 5. 15.	2020. 5. 15.	정책기획과
45	파주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	파주시	제정	조례	제1567호	2020. 2. 14.	2020. 2. 14.	자치행정과
46	평택시 협치 기본 조례	평택시	전부개정	조례	제1663호	2019. 6. 28.	2019. 6. 28.	미래전략관
47	평택시 협치 기본 조례 시행규칙	평택시	제정	규칙	제729호	2020. 1. 14.	2020. 1. 14.	미래전략관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교육청간 소통과 협치를 위한

[시행 2017. 3. 23.] [서울특별시조례 제6439호, 2017. 3. 23., 제정]

[서울특별시(기획담당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교육청 간 소통과 협치의 관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지방자치 발전과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의 지속적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치"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와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교육청 간 의정활동과 일반행정, 교육행정 부문에서 상호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
2. "집행기관"이란 시의회의 의결 또는 의사 결정을 집행하는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을 말한다.
3. "단체장"이란 집행기관의 대표로서 집행기관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는 서울특별시장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과 단체장은 시의회와 집행기관 간 공동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소통과 협치를 촉진하기 위해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발전방안을 도모한다.

- ② 의장과 단체장은 상시적이고 효율적인 소통과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상호 노력한다.
- ③ 의장과 단체장은 지방자치의 구현과 지방분권의 확대를 위해 지방행정 및 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높이는데 상호 협력한다.
- ④ 의장과 단체장은 시의회와 집행기관 간 상호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과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회의와 협의체 등을 운영할 수 있다.
- ⑤ 의장과 단체장은 제4항의 회의와 협의체에서 논의한 결과를 의정활동과 일반행정, 교육행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제4조(의장·단체장 회의) ① 의장과 단체장은 시의회와 집행기관 간 소통을 강화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의장·단체장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한다.

1. 지방분권의 확대 및 지방자치 발전
2. 주요 정책 및 현안 사업
3. 주요 행사
4. 지역간 균형발전
5. 그 밖에 상호간 협력이 필요한 사항

③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의회 :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위원장(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을 포함한다), 교섭단체 대표의원 등과 시의회 사무처 소속 관계 공무원

2. 집행기관 : 단체장, 부단체장 및 안건 관련 부서의 장 등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④ 회의는 시의회 정례회 또는 임시회 개최 전에 기관 간 상호 협의를 거쳐 개최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제3항의 참석자들에게 안건과 자료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필요로 하거나 긴급한 사안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의장과 단체장은 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씩을 둔다.

⑥ 그 밖에 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지역별 협의체) ① 의장과 단체장은 지역별 주요 현안 및 예산사업 등에 대하여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지역별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별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한다.

1. 지역별 주요 정책 및 현안사업
2. 지역별 주요 행사
3. 그 밖에 지역 발전을 위해 협력이 필요한 사항

③ 지역별 협의체에는 해당 지역별 시의원과 단체장, 안건 관련 집행기관 부서의 장 및 관계 공무원이 참석할 수 있

다.

④ 그 밖에 지역별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행정 및 재정 지원) 단체장은 시의회와의 소통과 협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6439호,2017. 3.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4. 5.] [전라북도조례 제4633호, 2019. 4. 5., 일부개정]

전라북도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에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의 명칭을 불문하고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위하여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모든 위원회를 말한다.
2. "중앙정부 등"이란 정부 각 부처와 그 소속된 각 청 및 처를 말한다.
3.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 조례 등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위원회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총괄부서"란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에 의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2. 중앙정부 등의 지침이나 훈령에 의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3.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에 의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4. TF(Task Force)팀 등 임시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다만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TF(Task Force)팀은 제외한다. <신설 2017. 4. 14>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개정 2017. 4. 14>
- ②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 ③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요건)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기존 업무와 중복되지 않고 독자성이 있을 것
4. 업무가 연속성·상시성이 있을 것

제5조(설치절차) ① 도지사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해당 위원회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 설치계획과 조례안을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안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
4. 회의의 소집 및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5.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사항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구성 근거, 타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여부, 위원회 존속기한 등을 검토하여 협의한다.

④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현황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위원회 구성 일시 및 기능
2. 위원회 회의개최 등 운영계획
3. 위원 명단 및 연간 예산

제6조(위원의 위촉) ① 위원회는 위촉직 및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도지사가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하여야 한다.

1. 전라북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 기관 및 비영리 민간단체가 추천한 사람
3.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
4. 도지사가 위원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②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민등록 법상 주소지가 특정 시·군인 위촉직 위원이 10분의 4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의 위임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제외한다. <개정 2019. 4. 5>
-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로 한다.
- ④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위원회의 성격상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2.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 ⑤ 도지사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미리 인원수·자격·선정기준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도보 등에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따른 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이 없거나 위촉대상 위원의 정수에 미달한 경우
 2. 위원회의 성격상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3. 긴급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위원회가 해당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⑥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3 이하로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4>
- ⑦ 위촉직 위원은 위촉기준에 해당분야의 활동경력 또는 전문 경력을 최근 3년 이상 증빙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4>
- ⑧ 제7조제1항에 따라 해촉된 의원은 해촉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2호, 제3호, 제6호는 제외한다. <신설 2017. 4. 14>

제7조(위원의 해촉) ①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4>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
7. 1년 단위의 출석률이 50% 미만인 경우 <신설 2017. 4. 14>
8.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개정 2017. 4. 14>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해당위원에게 해촉 일자, 사유 등을 알려야 한다.

제8조(청렴서약서 제출) 위촉되거나 임명된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 명단의 공개) 도지사는 안건 심의의 공정성을 매우 중대하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의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도보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의 고지) 위원회의 장은 위원들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자료는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공개이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담당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의 2(회의자료의견청취) ① 담당부서의 장은 회의자료를 공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② 복수의 상충되는 의견이 존재하는 안전인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회의자료에 부서의견을 기재해서는 아니되며, 위원회의 장은 회의에서 복수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4. 14]

제11조(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된 경우 또는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2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위원회의 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위원명 포함),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4>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장은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의 주요 내용과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그 사유를 회의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4>

제13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회의 장은 안전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부서에 자료의 제출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무원 등에게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의 2(의회 보고) 주관부서의 장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하는 경우의 비공개 사유와 제12조제3항의 당연직 위원의 회의 불참 사유를 전라북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분기 단위로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4. 14]

제14조(관리 및 정비) 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의 자문, 심의·의결 등 결정사항 주요 내역
3.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역
4. 위원회의 구성·운영의 변경사항 등

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위원회 활동내역서를 점검하여 위원회 운영의 시정·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에게 정비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의 장은 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을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관련 위원회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전라북도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전라북도 소속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의 종류 및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의 회의(사이버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출석 수당을, 위원회의 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안전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을 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가. 소청심사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나. 그 밖에 각종 위원회 위원 :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5. 5. 1 조례3982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 (1) 전라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2) 전라북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3) 전라북도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4) 전라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5)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6) 전라북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7) 전라북도 자녀 학자금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전라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8) 전라북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9) 전라북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10) 전라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11) 전라북도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12) 전라북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13)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14)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15) 전라북도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16)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17)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18) 전라북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19) 전라북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20) 전라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21)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22) 전라북도 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8항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23) 전라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전라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24) 전라북도 로컬푸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전라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25) 전라북도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

- 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26) 전라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27) 전라북도 친환경농어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9항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28) 전라북도 식생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29) 전라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30) 전라북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31) 전라북도 영상산업 육성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32)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5항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33) 전라북도 어린이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34) 전라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35)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36) 전라북도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37) 전라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38) 전라북도 태권도공원 민자유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39)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40)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41) 전라북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42) 전라북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43) 전라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전라북도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44) 전라북도지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45)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46)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47) 전라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48) 전라북도 환경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전라북도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49) 전라북도립공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50) 전라북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51) 전라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52)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53) 전라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54) 전라북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55) 전라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56) 전라북도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57) 전라북도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58) 전라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59) 전라북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60) 전라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전라북도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61) 전라북도 영유아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62) 전라북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63) 전라북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전라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64) 전라북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65) 전라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66) 전라북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67) 전라북도 광역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68) 전라북도 정신질환자의 사회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69) 전라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70) 전라북도 지역경제협의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71) 전라북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72) 전라북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73) 전라북도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74) 전라북도 구도심 상가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75) 전라북도 협동조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76) 전라북도 산업시설용지 분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77) 전라북도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78) 전라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79) 전라북도 수출 및 투자유공업체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80) 전라북도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분양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81) 전라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82) 전라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83)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84) 전라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85) 전라북도 대중교통경영·서비스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86) 전라북도 물류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87) 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88) 전라북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89) 전라북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90) 전라북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91) 전라북도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92)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93) 전라북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94) 전라북도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95) 전라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조례·규칙·훈령에서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7. 4. 14 조례44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4. 5 조례46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참고문헌 】

1. 연구보고서 및 단행본

- 강인재 · 신기현 · 이철우 · 최진혁(2005). 「자립적 지역발전모델」, 서울: 대영문화사.
- 강재규 외 (2011). 「2010 김해시 연구과제 최종결과 보고서」, 인제대학교 김해발전전략연구원
- 경기연구원(2019). 「경기도 민관협치 체계 구축 및 활성화 방안」, 경기도
- 국민권익위원회(2017).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 행동강령
- 김용현(2017). 「충남 각종 위원회 운영 실태조사 및 개선과제」, 충남연구원 현안과제연구
- 박상필(2018). 「로컬 거버넌스의 성공모델」, 대영문화사
- 박원순(2019). 「협치역량평가 지표개발 사례집」,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2017). 「자치구 위원회제 어디까지 왔나」. 제9회 협치서울 정책토론회 자료
- 서울특별시의회(2016).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 강령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
- 서울혁신기획관(2019).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서울특별시
- 시민사회현장연구자모임(2019). 「협치 정책과제 도출을 위한 사례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서울특별시
- 신혜란(2018). 「도시재생 민관 파트너십과 협치」, 국토연구원
- 송하진(2017). 「협치를 위한 혁신, 혁신을 위한 협치: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세 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희망이슈 29호
- 안현찬(2018).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성과평가와 개선과제」, 서울특별시
- 양지숙(2015). 「일본의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제도 분석과 시사점」, 감사연구원.

- 오수길, 이춘열, 권명애, 조충철, 이은주, 이용환 (2017). 「주민자치와 로컬 거버넌스 사례 연구: 고양시 자치도시 실험을 중심으로」, 경기연구원
- 장병구(2003). 「일본의 지방분권과 주민자치」, 북피디닷컴
- 장수찬(2015). 「충청남도 민관협치 활성화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용역 보고서」, 충청남도
- 정병순·김다경·김영은·이홍택(2015). 「서울형 협치모델 구축방안」, 서울연구원
- 정병순·이성호·김경철·박예완·조현혜(2017). 「서울시 협치친화형 평가체계 구축방안」, 서울연구원
- 정병순(2018). 「협치시정의 견인차, 서울시 위원회제 혁신전략」, 서울연구원
- 정병순·이성호·김성아(2019). 「서울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 서울연구원
- 조성호·김홍식·문영훈(2017). 「연정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방안」, 경기연구원
- 조성호·신원득·조응래·이현우·최성환·오재호·문영훈(2018). 「新정부의 지방분권 추진방향과 대응전략」, 정책연구
- 조성호(2018). 「민선7기 의회와 집행부의 협치 시스템 구축 방안」, GRI 정책 Brief
- 조성호(2018). 「경기도 내 민관협치기구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경기연구원
- 조세현(2014). 「정부위원회 체계 개편 및 운영 내실화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 주재복·조석주·김필두·박해육·하동현(2011).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적 거버넌스 재설계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충청남도청, “2019년 충청남도 민관협치 우수사례집”
- 충청남도청, “2018년 충청남도 민관협치 우수사례집”
- 최병대 외(2014). 「경기도의회 위원회 등 구성·운영 개선방안 연구」, 경기도의회
- 최준규(2014).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협력 체계 구축 방안」, 경기개발

연구원

최준규(2018). 「경기도 민관협치 체계 구축 방안」, 경기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7). 「부산시협치제도의 실태와 지속가능한 협치행정 방안 연구」, 부산광역시

정명운(2009). 「거버넌스제도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엄태석(2005). 「기초지방의회의 이해」, 한국학술정보

2. 국내 논문

강재규(2006). “지방외교의 법·이론적 근거”, 지방자치법연구 Vol.6 No.1

강재규(2010). “지방자치법제상 주민참여제도의 한일비교”,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제 10 권 제4호

강재규(2011). “지방자치단체 거버넌스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연구 - 김해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통권 제29호 제 11권 1호

김충묵·한경봉(2009). “지방의회 위원회제도에 관한 연구”, 지역발전연구, 제8권 제2호

서혁준(2010). “지역개발 및 기피시설 사례로 본 로컬거버넌스 구축: 지방정치 발전과 연계하여”, 정부학연구 Vol.16 No.2

신기현(2006). “새만금사업과 지역사회 거버넌스”, 한국정치정보학회 정치정보연구 Vol.9 No.2

신기현(2016). “정보문화 거버넌스 구축 방안 - 지방정부의 소셜미디어 활용을 중심으로”, 한국비교정부학보 제20권 제4호

이명석(2002). “거버넌스의 개념화 ; 사회적조정으로서의 거버넌스”, 한국행정학보 Vol.36 No.4

이명석(2006). “거버넌스 이론의 모색 : 민주행정이론의 재조명”, 국정관리연구 Vol.1 No.1

조성호(2019). “경기도 위원회 제도의 평가와 개편방향”, 경기연구원 정책브리프

정세욱(2010). “지방선거와 지방행정; 지방선거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지방행정 Vol.59 No.679

최창현·최삼수(2003). “협치 (Governance) 개념의 조작화와 국가간 비교 분석”,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3. 국외 단행본

Leonardi, R., Nanetti, R. Y., & Putnam, R. D. (2001).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Pierre, J. (Ed.). (2000). *Debating governance: Authority, steering, and democracy*. OUP Oxford.

John, P. (2001). *Local governance in western Europe*. Sage.

UN ESCAP(2009). *What is Good Governance?*

Rhodes, R. A. (1997). *Understanding governance: Policy networks, governance, reflexivity and accountability* (Public Policy & Management). Open University

4. 국외 논문

Putnam, R. (1993). “The prosperous community: Social capital and public life” . *The american prospect*, 13(Spring), Vol. 4. Available online: <http://www.prospect.org/print/vol/13> (accessed 7 April 2003).

Rhodes, R. A. (1996). “The new governance: governing without government” . *Political studies*, 44(4)

Gerry Stoker, Robert Pyper(1997). “*Understanding Governance*. Public Policy and Administration Volume” , 12 issue: 2